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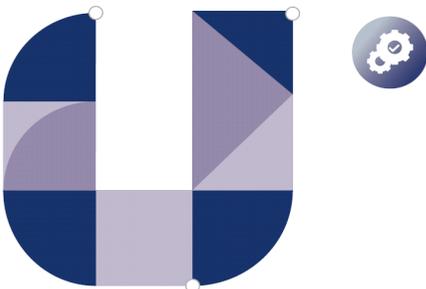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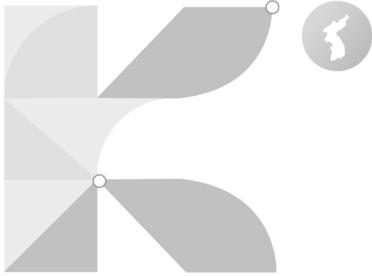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우태 | 나용우 | 권재범 | 엄현숙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연구책임자

이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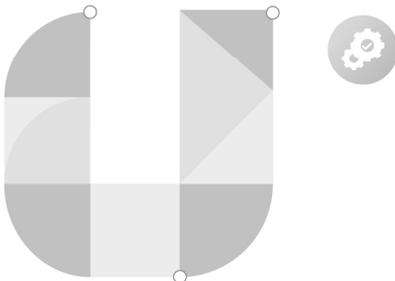
권재범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연구지원

최종학 (통일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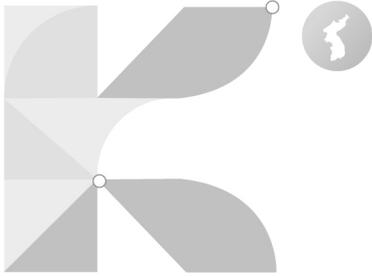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KINU 연구총서 2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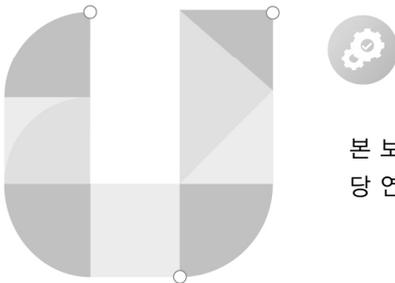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저자	이우태, 나용우, 권재범, 엄현숙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인도협력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I S B N	979-11-6589-055-1 93340
가격	11,000원

© 통일연구원, 202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요약	11
I.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 및 구성	24
II. 북한의 민족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27
1. 북한의 민족유산 현황	29
2. 북한 민족유산정책의 변화	38
3. 북한의 민족유산 관리체계	58
III. 유네스코 유산 등재 과정과 의의	65
1. 유네스코 유산의 종류	67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	72
3.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의의 및 문제점	85
4. 공동등재의 현황 및 의의	106
5. 유네스코 공동등재 사례연구	114

IV. 유네스코 등재 관련 남북 협력 사례	131
1. 북한 ‘고구려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례	133
2. 북한 ‘개성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례	146
3. 남북한 ‘씨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사례	157
V. 유네스코 공동등재 제도를 활용한 남북 협력 방안 ...	171
1. 법제도적 개선 방안	174
2. 사업별 추진 방안	185
3. 단계별 추진 방안	211
VI. 결론	217
참고문헌	226
부록	239
최근 발간자료 안내	251

표 차례

〈표 II-1〉 북한의 민족유산(문화재) 유형	30
〈표 II-2〉 북한 민족유산의 유형과 평가	31
〈표 II-3〉 2020년 한국 지정문화재의 규모	32
〈표 II-4〉 북한 문화재 관련 교시 및 법제 변천	40
〈표 II-5〉 북한의 민족유산 관련 법제의 변화	51
〈표 II-6〉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	53
〈표 II-7〉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 남북 무형문화유산 범주 비교	54
〈표 III-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	73
〈표 III-2〉 무형문화유산 등재 절차	74
〈표 III-3〉 외부자문기관 권고사항과 위원회 최종결정 간의 합치 비율	83
〈표 III-4〉 소프트파워 상위 30개 국가의 유네스코 보유 현황	87
〈표 III-5〉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경제적 이익 효과	97
〈표 III-6〉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목록	108
〈표 III-7〉 ‘매사냥’ 공동등재 과정	115
〈표 III-8〉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공동등재 과정	120
〈표 III-9〉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공동등재 신청단체	122
〈표 III-10〉 공동등재 성패요인	126
〈표 V-1〉 남북한 문화유산 보호법 비교	175
〈표 V-2〉 남북한 법률상 문화유산 개념 대조표	177
〈표 V-3〉 남북한 문화유산 보호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179

〈표 V-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의 범주 비교	181
〈표 V-5〉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 현황	186
〈표 V-6〉 남북한 문화교류협력 현황: 분야시기별	188
〈표 V-7〉 남북한 문화교류협력 현황: 사업 주체별(1948~2019)	189
〈표 V-8〉 남북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현황	192
〈표 V-9〉 세계유산 잠정목록 절차와 양식	193
〈표 V-10〉 남북한 세계유산 잠정목록	194
〈표 V-11〉 남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북한 무형문화유산	202
〈표 V-12〉 1단계 협력 내용	212
〈표 V-13〉 2단계 협력 내용	213
〈표 V-14〉 3단계 협력 내용	214
〈표 V-1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 협력 방안	215

그림 차례

〈그림 II-1〉 북한의 문화재 관련 주요 법제의 시대별 변화	42
〈그림 II-2〉 남북의 유네스코 협약 가입 비교	55
〈그림 II-3〉 북한의 민족유산 관리기구	61
〈그림 II-4〉 북한의 민족유산 심의평가 및 등록 체계	62
〈그림 III-1〉 유네스코 유산 종류	72
〈그림 III-2〉 불가르 역사고고유적군	82
〈그림 III-3〉 몽골족 후미	91
〈그림 III-4〉 내로이 피오로드 전경	96
〈그림 III-5〉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전경	98
〈그림 III-6〉 갈라파고스 전경	100
〈그림 III-7〉 매사냥	111
〈그림 IV-1〉 유네스코 등재 북한 고구려 고분군 지역도	134
〈그림 IV-2〉 동명왕릉 전경 & 안악3호 벽화	135
〈그림 IV-3〉 강서대묘 현무도 & 덕흥리 고분벽화	136
〈그림 IV-4〉 개성역사유적지구 지도	147
〈그림 IV-5〉 개성 만월대	147
〈그림 IV-6〉 개성 남대문 & 고려 성균관	148
〈그림 IV-8〉 선죽교	149
〈그림 IV-9〉 각저총 벽화	158
〈그림 IV-10〉 김홍도의 씨름도와 유숙의 대궐도 중 씨름 장면	159

〈그림 IV-11〉 남한과 북한의 씨름 경기 모습	161
〈그림 IV-12〉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주요 연혁	164
〈그림 IV-13〉 북한 로동신문 ‘씨름’ 세계유산 등재 보도	166
〈그림 V-1〉 월경유산: 금강산 국립공원과 설악산 국립공원	195
〈그림 V-2〉 로동신문의 DMZ 보도	199
〈그림 V-3〉 남북 문화유산 공동 관리위원회 기능	207
〈그림 V-4〉 각궁 & 옷칠장	209

한 국가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은 해당 국가 및 민족의 문화적 우수성과 국력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의 공동등재의 경우, 지역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기도 하다.

2018년 씨름의 유네스코 유산 남북 공동등재는 남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의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북 공동등재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최근 김치나 한복 등과 관련해 중국과의 문화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울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문화재 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 가능한 교류협력 분야가 유네스코 제도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 협력 사업이다.

이에 본 과제는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유네스코 유산 등재 과정과 의미, 남북 유네스코 유산 등재 관련 협력 사례, 그리고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협력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첫째, 북한은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문화유산’ 혹은 ‘민족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족유산을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그리고 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문화유산이 역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질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유물’과 ‘유적’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보호 및 관리해왔으며, ‘고구려 중심주의’, ‘평양 중심주의’, 그리고 ‘계급적 관점’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체계는 김정은 집권 이후 본격화 되는데,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의 채택을 통해 보호 대상을 기존 ‘물질유산’에서 ‘비물질유산’까지 확대하였고 2015년에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유산 등록 관련 조항이 명기되었다.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체계는 문화성 산하 ‘민족유산보존위원회’에서 문화유산 관리 및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문화유산의 수집, 평가, 등록, 관리, 이용 등의 계획 수립, 심사, 허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문화유산 조사, 발굴, 복원 등과 관련한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기능과 편제는 우리의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체계와 유사하다.

둘째, 유네스코는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주를 크게 ‘세계유산(World Heitage)’,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과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구분 짓고 있다. 유네스코 유산의 등재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접수,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결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해당 국가에게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이후 관광객 증가로 인해 문화유산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유산 등재가 파생시키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한다.

한편 유네스코는 하나의 문화유산을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경우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등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는 등재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고 협력

의 당위성을 강화시키며, 공동등재 추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협력의 제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과 함께 국가별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한이 유네스코 등재 과정 속에 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북한이 단독등재한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 사례와 남북한이 공동등재한 ‘씨름’ 등 총 3건이 있다.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에서의 남북 협력 사업은 북한에 위치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발굴과 보존에 있어 남북한 문화재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성과를 이루어낸 사례이고, 씨름의 경우는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와는 달리 남북한이 단독등재를 신청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과 유네스코의 협력을 통해 공동등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남북한이 유네스코의 공동등재 제도를 활용하여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과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우선 남북 간에는 문화재에 대한 정의와 인식, 문화재 관련 법률에서 문화재 분류, 문화재의 활용 목적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남북한 문화재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및 체계성 확보와, 남북한 문화재 지정 체계의 통일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별 추진 방안으로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금강산 역사유적지구’를 한반도 월경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방안과 남북한이 공유하는 DMZ를 월경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의 ‘백제역사유적지구’, ‘경주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과 북한의

‘고구려역사유적지구’, ‘개성역사유적지구’를 하나로 묶어 ‘(가칭)한반도 역사지구’를 유네스코 ‘연속유산’으로 남북한이 공동등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에서 만들어져 남한으로 전승된 무형문화유산을 ‘한반도 전승유산’이라는 의미로 남북한이 함께 공동등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남북한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 남북한 협력 체계, 국제 협력 체계로 세분화하여 대내외 추진 체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남북 문화유산 협력 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주제어: UNESCO, 문화유산, 공동등재, 남북 교류협력

Inter-Korean Cooperation on Joint Registration of Shared Cultural Heritage with UNESCO

Lee, Wootae et al.

The process of registering a country's cultural heritage on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serves to demonstrate the cultural excellence and national power of the country concerned and its people. In addition, joint registration with UNESCO by several countries of shared cultural heritage is viewed as a symbol of regional reconciliation, peace and cooperation.

South and North Korea's joint registration of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 on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list in 2018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s an achievement of the two Koreas that was made through cooperation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Building on this, at the 74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19,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the transform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into an international peace zone and the inter-Korean joint registration of the DMZ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gainst the backdrop of recent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regarding issues such as the origin of kimchi and the Hanbok, the need is growing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imed at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cooperation on issues related to inter-Korean cultural heritage using a system established by UNESCO is likely to be acceptable to North Korea considering that it has been actively revising its laws and system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showing great interest in registering its cultural assets o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since Kim Jong Un took office.

In this light,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cultural heritage policies and related management systems, the process and significance of registering a country's cultural heritage o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cas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relation to UNESCO registration, and pla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using UNESCO's joint registration system.

Keywords: UNESCO, Cultural Heritage, Joint Registrati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문화유산’의 사전적 정의는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선조(先祖)로부터 물려받아 살다가,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문화유산’인 것이다.¹⁾ 즉 문화유산은 한 국가 또는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세계 각국은 자국 또는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1972년 11월 제 17차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정기총회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하 약칭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되게 하였고, 2018년 기준 193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³⁾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은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지닌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문화유산,”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B%AC%B8%ED%99%94%EC%9C%A0%EC%82%B0>> (검색일: 2021.6.1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계유산소개,”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소개/세계유산소개/>> (검색일: 2021.6.18.).

2) 문화유산과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정의가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문화유산과 문화재가 동일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상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 남한에서 사용하는 ‘문화유산’ 또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민족유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여주시, “여주시사 - 문화유산: 문화재와 문화유산,” <https://www.yeouju.go.kr/history/jsp/Theme/Save_View.jsp?BC_ID=c0002> (검색일: 2021.6.18.).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도(2017-2018),” <https://www.unesco.or.kr/data/report/list/5/?s_cat=5> (검색일: 2021.6.18.).

하는 것”으로 인류가 보존해야 하는 유산은 그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1975년 세계유산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세계유산이 갖는 상징적 가치, 문화적 파급효과, 경제적 이익 등이 중요시 되자 세계 각국은 자국 또는 자민족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유산 공동등재의 경우 지역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1950년, 전 세계 55번째로 유네스코에 가입하였다.⁵⁾ 가입 당시는 6·25전쟁 등으로 인해 ‘유산 또는 국가 문화재’에 대한 관리 개념이 부족하였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문화유산 관리를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는 본격적으로 문화유산 보존, 관리 그리고 홍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⁶⁾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의 개념과 활동이 우리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인지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 이후 1995년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이 남한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가 국내 문화재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간 협조와 교류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으며, 정부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과정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면서 이 과정을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과정으로 승화시키고 있다.⁷⁾

4) 서권, “세계문화유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및 개선 방안 연구: 경주 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p. 1;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 세계유산을 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해녀문화를 중심으로』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8), p. 17.

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p. 3, <https://unesco.or.kr/assets/pdf/unesco_way.pdf> (검색일: 2021.6.18.).

6) 조민재, “현대 한국 문화유산 관리: 국보에서 유네스코까지,” (제4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19), p. 354.

북한은 1974년 133번째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였다.⁸⁾ 북한이 자국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시점은 2000년대 이후였다. 북한은 2004년 63기의 ‘고구려 고분군’을, 2013년에는 고려 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만월대, 개성 침성대, 고려 성균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성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에 등재시켰다.⁹⁾ 김정은 집권 이전까지의 북한의 문화재 정책은 역사유적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관리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오던 무형문화유산(비물질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반적인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남북한은 모두 유네스코 회원국이면서 「세계유산협약」에도 가입하였지만, 최근까지 남북한은 각기 비슷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개별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경쟁적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남북한은 ‘씨름’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함으로써 문화재 분야에서의 대결 구도를 협력 구도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물론 씨름의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 이전에도 북한 고구려 고분군, 개성 만월대, 태봉국 사례 등 문화재 관련

7) 위의 글.

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p. 3, <https://unesco.or.kr/assets/pdf/unesco_way.pdf> (검색일: 2021.6.18.).

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Q. 북한에도 유네스코 유산이 있나요?,” <<https://heritage.unesco.or.kr/%EB%AC%B8%EC%84%9C%EC%9E%90%EB%A3%8C/?mod=document&uid=10>> (검색일: 2021.6.18.).

10) 조우찬, “북한 김정은 시대 문화재정책의 특징: 무형문화유산의 부각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2019 통일부 신진연구자논문집』 (통일부, 2019), p. 4, <<https://unibook.unikorea.go.kr/files/bd48b195-4894-4f70-9176-b7b733b0509d>> (검색일: 2021.6.18.).

남북 협력 사업은 존재하였으나,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라는 제도를 통한 문화 협력을 추진한 경우는 씨름의 공동등재가 처음이었다. 공동등재한 씨름의 경우도 애초에 남과 북이 각기 개별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남과 북은 물론 유네스코까지 함께 협력하여 공동등재라는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정치·군사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비롯한 사회문화 분야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2019년 9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면서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강조하며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¹¹⁾ 이후 퍼민 에두아르 마토코(Firmin Edouard Matoko) 유네스코 사무총장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협력을 통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리고자 하는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¹²⁾

남북 문화유산 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이질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한국과 중국의 문화갈등은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02년 중국의 ‘동북공정’ 연구 사업에

11) ““文” DMZ, 국제평화지대 만들자…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동아일보』, 2019.9.25.,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925/97576090/2>> (검색일: 2021.6.19.).

12) “유네스코 “남북 DMZ 세계유산 공동등재’ 문대통령 노력지지,” 『한국경제』, 2020.9.9.,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090144Y>> (검색일: 2021.6.19.).

서 시작된 한중 문화갈등은 2005년 한국의 ‘강릉단오제’와 2009년 중국의 ‘용선축제’, 2009년 한국의 ‘동의보감’과 2011년 중국의 ‘중국침구’, 한국의 ‘농약’과 2006년 중국의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농무’ 등 유사 문화를 한중 양국이 경쟁적으로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 하면서 마치 ‘문화유산 선점’과 같은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는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泡菜)가 김치의 원조라는 주장과 우리 민족 고유 의복인 ‘한복’이 중국의 ‘한푸(중국 한족의 전통복장)’를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중 간 문화유산을 두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의 ‘문화 예속화’ 작업에 대응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문화유산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남북 문화유산 협력은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 교류협력이 비정치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에도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를 통한 남북 문화유산 협력은 단순히 문화유산의 개발과 보존을 넘어 국제사회에 남북한이 공동의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한민족이라는 점을 알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호적 국제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북한이 수용 가능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문화 교류 방안으로써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 제도를 상정하고 이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구성

앞의 연구 필요성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북 문화유산 교류는 분단으로 인한 이질성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비정치적 분야 교류로써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라는 제도의 활용은 남북한이 보다 수월하고 효과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우리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과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북한의 민족유산 정책과 관리체계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II장에서는 북한에서 민족유산이라 불리는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와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향후 남북 문화유산 협력 가능성을 도출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네스코 유산의 개별등재 및 공동등재의 과정을 살펴보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갖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네스코 공동등재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남북한이 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 과정에서의 남북한 협력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과거 남북한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단독 및 공동등재한 사례와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남북 문화유산 공동등재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남북한 문화유

산 관련 법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문화유산 협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남북 유네스코 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사업 추진 기반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 협력을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사례 분석 및 단계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 I 장 서론, 제 IV 장 남북 유네스코 유산 등재 관련 협력 사례, 제 VI 장 결론은 이우태가 집필하였고, 제 II 장 북한의 민족유산 정책과 관리체계는 나용우가 집필하였다. 제 III 장 유네스코 유산 등재 과정과 의미는 권재범이 집필하였으며, 제 V 장 유네스코 유산 공동 등재를 활용한 남북 협력 방안은 엄현숙이 집필하였다.

II. 북한의 민족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1. 북한의 민족유산 현황

가. 북한의 민족유산(문화재) 정의와 유형

남한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유형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¹³⁾

한편, 북한은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문화유산’ 혹은 ‘민족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북한의 가장 최신 법률인 「민족유산보호법」에 따르면, 민족유산을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 민족의 정기와 넋이 깃들어있으며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⁴⁾

북한은 민족유산(문화재)을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그리고 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II-1〉 참조).¹⁵⁾ 또한 물질유산은 역사유

13) 「문화재보호법」(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6.9., 일부개정), 제2조(정의).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채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2018년 11월 24일 수정보충), 제2조(민족유산의 정의). 북한의 문화재 관련 법령은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가장 최근 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의 정의로 사용하도록 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족유산을 문화재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되, 남북 간 비교를 위해 문화재라는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도록 할 것임.

15) 박영정은 북한이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제 정비를 하면서 중국의 용어를 따라 ‘비물질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82년 유네스코가 처음으로 ‘비물질유산(non-physical heritage)’을 공식 사용하며 등장했으나, 1992년 일본의 용례를 수용해 ‘무형유산(intangible heritage)’으로 용어를 수정했고, 2003년 국제협약의 명칭에도 무형문화유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법」을 제정하면서 ‘비물질문화유산’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 『무형유산』 제7호 (2019), p. 8.

적과 역사유물로, 자연유산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로 구분된다.¹⁶⁾ 물질유산은 역사유적인 경우 국보유적과 보존유적으로, 역사유물인 경우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로 평가하며, 비물질유산은 국가비물질유산과 지방비물질유산으로, 자연유산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로 평가한다(〈표 II-2〉 참조).¹⁷⁾

공식적인 유형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북한에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것으로 ‘교시유적’이 있다. 이는 물질, 비물질, 자연유산 등에 폭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최고지도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혁명활동에서의 의미를 갖는 것들로 북한에서 교시유적은 학술적 연구 및 보존사업에서 우선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¹⁸⁾

〈표 II-1〉 북한의 민족유산(문화재) 유형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물질유산	역사유적	원시유적,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질그릇 및 도자기기마터, 쇠부리터 등
	역사유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등
비물질유산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과 의술, 사회적관습, 레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업기술	
자연유산	명승지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섬
	천연기념물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강천, 로두

출처: 「민족유산보호법」을 토대로 저자 정리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제3조(민족유산의 구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민족)유산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제26조(민족유산의 평가방법).

18)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p. 15, p. 24, p. 27.

〈표 II-2〉 북한 민족유산의 유형과 평가

구분		평가	비고
물질유산	역사유적	국보유적	
		보존유적	
	역사유물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	
비물질유산		국가비물질유산 지방비물질유산	비물질유산보유자 평가도 함께 진행
자연유산		명승지 천연기념물	

출처: 「민족유산보호법」을 토대로 필자 정리

북한의 민족유산은 2006년 기준으로 2,816점으로 국내에 알려지고 있다. 역사유적(1,916점) 중 국보유적은 193점, 보존유적 1,723점이고, 역사유물(204점) 중 국보유물 83점, 준국보유물 121점, 자연유산(690점) 중 명승지 223점, 천연기념물 467점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⁹⁾

또한 조은경의 자료에 따르면, 역사유적(1,916점), 역사유물(587점), 자연유산(697점), 비물질유산(124점)으로 총 3,324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 민족유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²⁰⁾

한편, 2020년 기준 한국의 문화재는 14,132점으로 규모 면에서 남북 간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표 II-3〉 참조).²¹⁾ 이러한 차이

19)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p. 9; 박대남, 『북한의 문화재 실태』(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p. 24; 한편, 김혜정은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고고학총서』(2009), 『역사유적 조사자료』, 남북 공동으로 발간한 『조선향토대백과』(2004) 등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북한의 역사유적을 3,245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혜정, “북한 민족유산 정책 변화와 물질유산(역사유적) 연구 현황,” 『북한 정책변화에 따른 민족유산의 현황과 이해』(2020년 제1차 남북 문화유산 정책포럼 자료집, 2020.5.14.), p. 6.

20) 조은경, “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 사업 체계,” 『2020년 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2기)』(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2020.9.), p. 23.

는 양측 정부의 문화재 정책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²²⁾ <표 II-3>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화재의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문화재를 발굴 및 보호,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문화재를 선정 및 보호·관리함에 있어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 당국의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됨으로써 우리와는 상이한 민족유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3> 2020년 한국 지정문화재의 규모

(단위: 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168	6	3	1	2	1	2	0	12	12	12	30	8	21	56	14	0	0	348
보물	716	54	77	29	15	11	8	2	174	83	95	131	101	192	364	175	8	0	2,235
사적	69	6	9	20	2	1	5	0	69	19	19	51	41	45	102	54	7	0	519
명승	3	2	0	1	1	0	0	0	4	25	10	3	8	22	15	12	9	0	115
천연기념물	11	7	2	13	2	1	3	1	20	44	23	17	32	61	70	43	49	64	463
국가무형문화재	31	5	0	5	1	0	0	0	10	4	4	4	9	14	11	15	4	32	149
국가민속문화재	41	2	6	0	3	2	2	1	22	11	21	24	14	38	95	12	9	0	303
합계	1,039	82	97	69	26	16	20	4	311	198	184	260	213	393	713	325	86	96	4,132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229	22	13	9	21	22	6	2	89	45	30	61	88	113	64	57	25	0	896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439	202	84	69	31	57	36	17	308	172	344	202	245	239	477	890	37	0	3,849
시도무형문화재	51	25	17	29	20	24	6	3	58	31	27	52	60	47	47	40	23	0	560
시도기념물	40	51	18	64	24	47	46	11	185	79	138	163	122	193	155	267	128	0	1,731
시도민속문화재	34	19	4	2	9	2	1	0	14	4	20	28	34	42	154	21	82	0	470
합계	564	297	123	164	84	130	89	31	565	286	529	445	461	521	833	1,218	270	0	6,610
(시도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74	111	53	26	30	59	32	14	184	145	92	315	156	243	581	681	10	0	2,806

출처: 문화재청, “문화재 현황.”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cultural_info/cultureTotal_ccrebase1_kor.jsp&mn=NS_03_07_03> (검색일: 2021.6.16.).

- 21) 설사 북한이 다수의 민족유산을 추가로 지정했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 22)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pp. 15~16.

나. 북한 민족유산의 현황

현재 북한 민족유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민족유산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에 따라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로 문화유산을 동시에 등록하는 이중 등록의 문제 그리고 유산 폐기에 따른 결번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²³⁾ 하지만 북한은 최근 문화유산 관련 정보체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민족유산보호법」에 자료기지화, 비물질문화유산의 목록작성을 규정하고 있다.²⁴⁾

현재 국내에 알려진 바로는 물질유산 중 국보유적 193점, 보존유적 1,723점, 국보유물 286점, 준국보유물 301점, 비물질유산 중 국가비물질유산 112점, 지방비물질유산 12점, 자연유산 중 명승지 223점, 천연기념물 488점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⁵⁾

(1) 물질유산: 역사유적과 역사유물

북한 「민족유산보호법」에 따르면, 물질문화에는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 가마터, 쇠부리터 등의 ‘역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등을 ‘역사유물’로 명기하고 있다.²⁶⁾

북한은 정권 수립 이전부터 유적을 보호 대상으로 관리해왔는데, 1946년 4월 2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김일성 명의로 발표되었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서 유적(고적)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유물론적 역사관의 토대 위에서 북

23) 한승대, “북한의 문화유산(민족유산) 현황,”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4.19.).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 제69조(종합적인 자료기지화), 제42조(비물질유산의 목록작성).

25) 조은경, “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 사업 체계,” p. 23.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 제3조(민족유산의 구분).

한의 초기 문화재 정책은 유물 발굴과 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민족유산 보호를 위한 최초의 법적 체계라 할 수 있는 1994년 채택된 「문화유물보호법」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비물질(무형)유산은 보호 대상이 아니었으며 형태를 갖고 있는 유물과 유적 등 물질유산을 중심으로 법률이 제정되었다(부록 참조).

(2) 비물질유산

‘비물질유산’은 우리의 무형문화재와 상응하는 것으로, 비물질유산이 북한에서 문화유산으로서 보호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에서 보이듯, 비물질유산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가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이 채택되면서 비로소 보호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문화유산보호법」에 따르면, “비물질문화유산에는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전통 및 관습, 각종례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요리, 민속놀이 같은 것이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부록 참조).²⁷⁾

(3) 자연유산

2015년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에 따르면, 자연유산은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섬,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강천, 로두(路頭)와²⁸⁾ 같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²⁹⁾ 북한의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 제2조(문화유산의 정의). 비물질유산에 대한 정의는 2015년 채택된 「민족유산보호법」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28) ‘노두’의 북한말로서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을 의미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노두,”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B%85%B8%EB%91%90&range=word>> (검색일: 2021.6.18.).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 제3조(민족유산의 구분).

경우 자연유산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은 역사성이며, 이 부분이 남한의 정책과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북한 천연기념물의 경우, 학술적 의미를 갖는 기념물과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기념물로 구분될 수 있다.³⁰⁾ 식물천연기념물, 동물천연기념물, 지리천연기념물, 지질천연기념물로 구분되는 천연기념물 지정에 있어 희귀성을 포함한 자연적·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은 최고지도자 혹은 혁명성에 있다.

남한의 경우 천연기념물, 명승지가 갖는 의미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사회 전체의 공동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우선하지만, 북한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고지도자 및 혁명사상과 연관되거나 북한의 정치체제를 선전하거나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자연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부록 참조).³¹⁾

다. 북한의 민족유산에 대한 인식

북한은 국가 수립 및 운영에 있어 계급적 관점에서 사회 및 역사를 인식해왔기 때문에, 민족유산(문화재) 역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선별적인 평가를 했고, 그에 따라 보호 대상을 선정 및 관리해왔다.

예를 들어 궁중예술이나 양반계급에서 향유되었던 문화유산이나 종교 또는 민속과 관련된 문화유산은 봉건시대 지배계급의 문화라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자 단절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즉 북한은 계급적인 시각에서 민족문화를 평가하고 보호해왔기 때문에 무형(비물질)

30) 전영선·신준영, 『북한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pp. 22~24.

31) 이선, “북한 자연유산의 현황과 과제,” 『북한 민족유산의 현황과 보호관리체계 이해』 (2020년 제1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자료집, 2020.7.23.), p. 97.

문화유산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 민족유산에 대한 인식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유물론적 역사관이 중요하게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역사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질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북한은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보호 및 관리해왔다. 실제 민족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첫 번째 법률이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이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민족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명분으로 하는 민족유산 정책이 민족 자긍심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의 이상화 및 체제의 정통성 확보가 정책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³²⁾

이와 함께 남북 간 문화재 보호 법제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주체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³³⁾ 또한 북한은 「민족유산보호법」 제7조에서 “민족유산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고 함으로써,³⁴⁾ 단지 문화유산(혹은 민족유산)이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 차원의 계급성 혹은 혁명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문화재 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³⁵⁾

32)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 pp. 9~10.

33)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제5조(민족유산보호의 기본원칙).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제7조(민족유산의 리용원칙).

35) 전영선, “북한의 문화재 정책의 시대별 특징 비교,”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6.15.).

첫째, 고구려 중심주의다. 북한의 문화재 정책에서 가장 중심을 두는 것은 고구려인데, 북한은 역사상 고구려가 제일 강한 나라였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는 입장이다. 고조선과 고구려의 이주민들이 한반도 남쪽에 ‘선진’적인 문화와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세력을 이루었고, 신라와 백제를 건설했다는 것이 북한의 역사관이다.³⁶⁾ 이와 같은 역사관을 바탕으로 문화재 보호 정책 역시 고구려를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평양의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한 고구려 문화유산들이 중국 집안(集安)의 고구려 유산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문화보존지도국을 중심으로 고구려 문화에 대한 보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평양을 민족문화의 중심에 두고 있다. 평양은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 혁명의 수도로서 상징성도 있다. ‘평양 중심주의’는 문화재 보호 차원을 넘어 인류 문화의 발상지의 하나로서 평양을 강조한다. 평양은 ‘인류 발생지의 하나’로 일찍부터 문화가 ‘찬란히 발전한 도시’, ‘인류발생지 중의 하나’라는 입장이다.³⁷⁾ 북한은 민족 역사의 중심지인 평양이 오늘날 사회주의 문화의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평양의 역사성과 혁명성을 강조한다.³⁸⁾ 실제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민족역사의 정통성이 평양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평양을 중심으로 유물·

36) 리원희, “5세기초이전 고구려-신라관계에 대하여,” 『역사과학』, 3호 (2004), pp. 44~46.

37) 이와 관련해서는 장상렬, “평양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력사의 도시,” 『천리마』, 11호 (1989), pp. 56~58.

38) “주체문화의 보급기지로 자랑 떨치고 있는 평양문화전시관,” 『로동신문』, 2018.1.27.: “전시관에는 백두산을 축으로 하여 단군릉을 비롯한 민족력사문화의 내용들을 건축 장식벽화로 형상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라는 것을 조형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문명개화기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시대상을 문화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인류발생의 시작으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력사적 과정이 시기별로 구분 되어 부각형식의 건축장식벽화로 형상 되어 있어 우리 민족문화의 발생발전 전 과정이 한 눈에 안겨온다.”

유적 발굴과 복원을 추진하였다. 1993년 동명왕릉, 1994년 단군릉, 왕건왕릉을 개축·복원한 바 있다.³⁹⁾

셋째, 계급적 관점에서 문화재를 선별하고 보호한다. 궁중문화, 양반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종교와 관련한 문화유산 역시 인민 교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부정적이다. 실제로 김일성은 1949년 10월 15일에 있었던 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인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에서도 불교 유적이 산재한 묘향산의 유적들에 대해 인민이 “불교의 허위성과 중들의 교활성을 깨닫도록 하며 날고 부패한 착취제도를 증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⁴⁰⁾

2. 북한 민족유산정책의 변화

가. 개괄

북한에서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광복 직후인 194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주로 김일성, 김정은 등 최고지도자의 교시, 연설, 담화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이 채택되면서 비로소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유물보호법」 채택 이전까지는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김일성 명의로 발표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따라 문화재 보호가 이루어졌다.⁴¹⁾ 북한 정부

39) 박대남, 『북한의 문화재 실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pp. 9~10.

40)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 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저작집5(1949.1-1950.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83~284.

41) 별다른 법률이 제정 없이 문화재 보호관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최고지도자의 교시가 공

수립 직후인 1948년 11월 1일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내각결정 제5호)」가 발표되고,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채택됨에 따라 법제와 함께 문화재(당시 물질문화유물로 한정) 보호를 위한 관련 기구가 설치되었다.⁴²⁾

이후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명승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 및 유물 보호에 대한 각각의 개별규정을 마련하였다.⁴³⁾ 1993년 12월 10일 김일성 교시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결정문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법과 규정을 새롭게 정비할 것을 공포했다. 이후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 1995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은 법적인 문화재 보호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⁴⁴⁾

「문화유물보호법」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초기 북한의 문화재 정책은 유형문화재와 역사 유적 등 물질적인 유산을 우선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하였다. 「문화유물보호법」은 몇 차례 개정되다가 2012년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문화유산보호법」 채택으로 대체되었다. 그동안 유형(물질)유산 보호에만 적용되었던 기존 법률에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었다. 이후 2015년 6월 10일 자연유산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족유산보호법」이 채택되었다. 동 법은 2018년 11월

식적 법보다 우선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pp. 38~3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재(문화유산)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에서 문화재 관련 법제들이 정비된 이유는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2) 이규창, “북한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0 남북법제연구보고서』(I) (서울: 법제처, 2010), p. 123.

43) 1990년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을, 1992년 「역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위의 글.

44) 위의 글, pp. 123~124.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한 차례 수정·보충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민족유산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대상을 보면, 남한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문화재 보호 대상과 상당히 유사해졌다.

〈표 II-4〉 북한 문화재 관련 교시 및 법제 변천

일시	제 목	시행주체	형식
1946.4.29.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량욱	
1946.4.29.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규칙	인민위원회 교육국 지령	
1946.4.29.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수속	인민위원회 교육국 지령	
1948.11.1.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	내각결정 제58호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주석명령 제35호
1949.8.2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승인에 관한 결정서	내각결정 제10호	
1949.10.15.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김일성	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
1954.8.2	문화유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내각지시 제23호	
1954.8.2	각종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할데 대하여	내각지시 제92호	
1958.4.30.	역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할 데 대하여	김일성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 학생들과 한 담화
1964.9.16.	역사 유적과 유물 보존사업에 대한 당 적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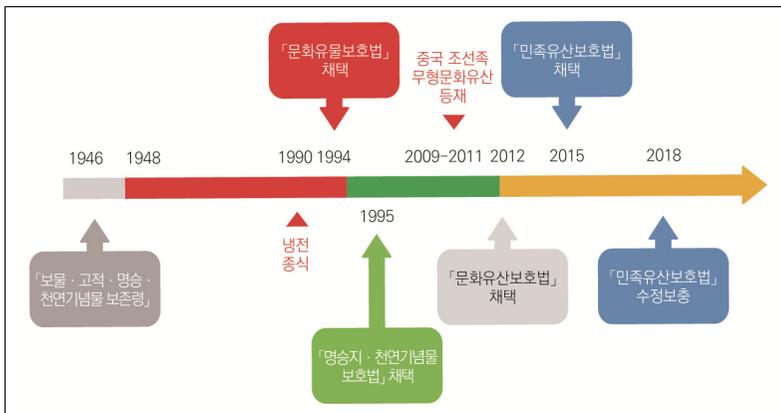
일시	제 목	시행주체	형식
1970.2.17.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	과학교육 및 문학에 술부문일군협의회 에서 한 연설
1970.3.4.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 처리할데 대하여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5.1.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보존 총국에 관한 규정을 승인할데 대하여	정무원 결정	
1985.7.11.	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석명령 제35호	
1987.6.7.	역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복원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김일성	정무원책임일군들, 역사학자들과 한 담화
1989.12.28.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1991.12.24.	역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에 대하여	정무원 결정	
1992.6.4.	역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의 시행세칙	문화예술부	
1993.12.10.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결정
1994.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에서 법령 제26호로 승인
1995.7.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시행규정	정무원 결정	
1995.12.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

일시	제 목	시행주체	형식
2012.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채택
2014.10.24.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사업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책임일군과의 담화
2015.6.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최고인민회의의 상임 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채택
2018.11.24.			최고인민회의의 상임 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수정보충

출처: 전영선, 『북한 민족문화정책의 이론과 현장』 (서울: 역락, 2005), pp. 53~54를 참조해
저자 수정 보완.

이러한 북한의 민족유산 정책을 관리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아래 <그림 II-1>과 같다. 민족유산 관리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1> 북한의 문화재 관련 주요 법제의 시대별 변화



출처: 저자 작성

우선 주목할 만한 특징은 그동안 최고지도자의 교시 및 담화로 유지되어왔던 민족유산(문화재) 관리가 1994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1993년 12월 김일성 교시 이후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 회의에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이듬해 4월 「문화유물보호법」이 채택되었다. 이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소련을 비롯한 구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되고 상당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체제가 전환되었던 시점으로, 그동안 북한을 둘러싸던 보호의 외피가 약화되고 있었던 체제위기의 시기였다.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생산을 강조하며, 체제의 내구력을 공고히 유지시켜야 하는 과제를 최우선했다.

그동안 교시 혹은 담화로 체제를 지탱해왔던 북한은 변화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보다 명시적인 법제도를 통해 체제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유물보호법」은 여전히 사회주의적 문화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즉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는 눈에 보이는 물질유산만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난의 행군’, ‘선군정치’ 등 체제 생존이 최대의 과제였던 김정일 시기에는 민족유산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수 없었고, 민족유산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혹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북한은 2012년 8월, 김정은 집권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보호법」을 채택했다. 「문화유산보호법」 제정 당시 가장 큰 변화는 보호 대상으로 유물(즉 물질유산) 이외 비물질유산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들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북한은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을 채택하고, 이후 2018년 11월 한 차례의 수정·보충을 통해 보다 법률을 정교화하였다.

김정은 시기 들어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법체계를 정교하게 정비한 이유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첫째, 중국의 비물질유산 관리 강화 정책 및 조선족 문화 흡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조선족의 문화인 농악무와 아리랑을 각각 2009년과 2011년에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비물질무형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중국의 소위 ‘문화공정’에 대응해 북한이 고유 문화유산을 비물질유산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둘째, 김정일의 사망으로 등장한 새로운 지도자였던 김정은에게 있어 체제 정통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면서 필요한 것이었고,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강조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정통성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매개물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연유산 등 비물질유산은 북한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동했다고 하겠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관광산업에 많은 자원과 역량을 투자하고 있는데, 원산-금강산 등 북한의 주요 관광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나. 민족유산정책의 시기별 변화: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에서 민족문화 보호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었다.⁴⁵⁾ 북한 정권 수립 초기 문화재 보호 정책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훼손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북한에서 문화재 보호 정책이 처음 시작된 것은 정권수립 이전인 1946년이었다. ‘항일혁명 투쟁’을 앞세우면서, 일제강점기 과정 동안 훼손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항일(抗日)’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45) 정창현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을 북한의 사상정책변화와 정권교체를 기준으로 6개 시기로 구분한 바 있다.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77호 (2019), pp. 366~375.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최초의 규정은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었다. 이는 1946년 4월 29일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양욱의 명의로 발표한 행정명령이었다.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은 전문 11조로 구성되었고, 보호 대상인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는 “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고적(古蹟), 회화(繪畵), 조각(彫刻), 공예품(工藝品) 기타의 물건(物件)으로써 특히 역사의 증징(証徵) 또는 미술의 규범이 될 만한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약칭함)은 이를 보물로 지정할 수 있음”, “패총(貝塚), 고적(古蹟), 사지(寺址), 요지(窯址) 기타의 물건으로써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위원장이 이를 고적(古蹟), 명승(名勝)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음”, “‘보물’은 건축물, 서적, 고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의 ‘물건(物件)’”으로 규정하였다.⁴⁶⁾

11조의 보존령 가운데 위원장의 권한과 관련된 것이 8개 조항이었으며, 3개 조항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이었다. 1조부터 8조까지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과 관련해 위원장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은 ① 보물 및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② 문화유물의 이전에 대한 권한, ③ 변형 및 보전관련, ④ 시설설치, ⑤ 변형, ⑥ 지정해제, ⑦ 발굴조사 감독, ⑧ 관리감독권의 일부 위임 등을 규정하였다.⁴⁷⁾ 이들 문화재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절차는 별도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 시행규칙」,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 시행수속」으로 규정하였다.

46)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문헌자료편)』 (서울: 문화체육부, 1995), p. 85.

47)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1946.4.29.); 박상철·김창규, “부록 I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5), pp. 49~50.

이후 북한 정권이 수립된 1948년 1월 1일,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규정인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35호, 내각 결정 110호로 발표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가 발족되었다.⁴⁸⁾ 물질문화의 유적과 유물은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비롯해 각 지방 력사박물관에서 소장, 관리하였고, 비물질문화유산(민속자료 등 주로 무형유산)은 ‘조선민속박물관’과 ‘민속학연구소’가 주체가 되어서 연구와 관리를 주도하였다.⁴⁹⁾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이외의 주요 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

문화재보호와 관련한 행정조치로는 1985년 7월 11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35호」 문화유적보존관리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가 있다. 이후 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 회의에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결의하였고, 이 결의에 따라서 이듬해인 1994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법령 제26호로 「문화유물보호법」이 승인되었다.

「문화유물보호법」은 전 6장 52조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문화유물 보호법의 기본, 제2장은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3장은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4장은 문화유물의 보전관리, 제5장은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제6장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통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⁵⁰⁾

48)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1948.1.1.); 위의 글, pp. 62~63.

49) 전영선, “북한의 문화재 정책 특징,”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6.16.).

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1994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6호로 채택/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 수정).

다. 김정은 시대의 민족유산 정책

(1) 보호 대상의 확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문화재 정책은 큰 변화를 겪는다. 정책 변화의 계기는 2012년에 제정한 「문화유산보호법」이다. 「문화유산보호법」은 1994년에 제정한 「문화유물보호법」을 대체하는 법으로서 핵심은 보호 대상 문화재가 ‘문화유물’에서 ‘문화유산’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문화유산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여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구전문학, 예술, 전통과 관습, 민속놀이 등 우리의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 포함되었다.⁵¹⁾ ‘유물보호’에서 ‘유산보호’로 바뀌면서 명칭도 달라졌고, 기존의 ‘문화유물’이 유형문화재인 ‘물질문화’와 무형문화재인 ‘비물질문화’로 세분화되었다. 「문화유산보호법」 제2조에서는 “물질문화유산에는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역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같은 역사유물이 속한다”, “비물질문화유산에는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전통 및 관습, 각종례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료리, 민속놀이 같은것이 속한다”고 규정하였다.⁵²⁾

「문화유산보호법」은 이후 2015년 7월에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으로 대체되었다. 총 6장 6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을 보호하는 법으로 민족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 제2조(문화유산의 정의).

52) ‘비물질유산’은 ‘non-physical heritage’로 1982년에 유네스코 산하에 ‘비물질유산처(section for the non-physical heritage)’가 설치되면서, 공식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한다.”⁵³⁾

물질유산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질그릇 및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역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같은 역사유물” 등이 포함된다.⁵⁴⁾ “비물질문화유산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 사회적 관습과 레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같은 것이 속한다.”⁵⁵⁾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섬 같은 명승지와 여러가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고 규정하였다.⁵⁶⁾

「민족유산보호법」은 2018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의 결정에 따라 비물질유산 부분의 내용을 수정·보충하여 개정하였다. 전체 6장에 6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항은 전체 6장 73개 조항으로 11개의 조항이 늘어났다.⁵⁷⁾ 2015년 법에서는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과 제5장 ‘민족유산의 복원’으로 구별되었던 조항이 2018년 개정된 법에서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복원’으로 통합되었다. 대신 2015년 법에서는 제4장의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으로 통합되어 있던 ‘관리’와 ‘리용’을 나누어 2018년 개정법에서는 제4장 ‘민족유산의 관리’와 제5장 ‘민족유산의 리용’으로 분리하였다.⁵⁸⁾ 수정·보충 이후 변화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 제2조(민족유산의 정의).

54) 위의 법.

55) 위의 법.

56) 위의 법.

57) 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채택된 「민족유산보호법」은 2018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수정보충되었다. 국가정보원, 『北漢法令集』 下 (서울: 국가정보원, 2020), pp. 570~581.

첫째, ‘민족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015년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 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규정하였던⁵⁹⁾ 민족유산의 개념을 2018년 수정·보충된 법에서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 민족의 정기와 넋이 깃들어 있으며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규정하였다. 이렇듯 력사와 문화전통에 더하여 ‘민족의 정기와 넋이 깃들어 있는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규정하였다.⁶⁰⁾ 이에 따라 과거보다 비물질유산의 대상을 폭넓게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비물질유산의 범위를 넓혀 전통의학과 전통기술을 추가하였다. 2015년에 비물질유산은 ‘구전 전통과 표현’, ‘전통예술’, ‘사회적 관습과 레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 수공예’였다.⁶¹⁾ 2018년 개정된 법에서는 ‘전통예술’을 ‘전통예술과 의술’로, ‘전통수공예’를 ‘전통수공예기술’로 수정하였다.⁶²⁾

셋째, 민족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였다. 2015년 법에는 민족유산의 소유권에 대해 “민족유산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 받았거나 전승 받은 민족유산은 개별적공민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⁶³⁾ 그러나 2018년 개정된 법에는 ‘개별 공민’의 소유권 규

58) 전영선, “북한의 문화재 정책 특징,”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6.16.).

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 채택) 제2조(민족유산의 정의).

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2018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44호 수정보충) 제2조(민족유산의 정의).

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 채택) 제2조(민족유산의 정의).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2018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44호 수정보충) 제3조(민족유산의 구분).

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 채택) 제3조(민족유산의 소유권).

정을 삭제하고, 보관, 이용의 권리만 인정하였다.⁶⁴⁾

넷째, 2018년 개정법에서는 비물질유산 관리에 대한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였다. 2015년 법에서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세분하여 비물질유산의 목록 작성에 관한 규정, 비물질유산 보유자 및 전수에 관한 규정, 비물질 유산의 보급에 관한 규정 등을 상세화하여 제시하고 있다.⁶⁵⁾ 주목할 부분은 비물질유산 보유자 및 전수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에 등록된 비물질유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우대하고, 공로에 따라 평가를 해주고, 대를 이어 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⁶⁾

다섯째, 비물질유산의 적극적인 이용이다. 비물질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면서 민족이 우수한 문화적 자산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⁶⁷⁾ 상업적인 이용에 관한 내용도 있다. 2015년 법 제43조에서는 “비물질유산의 마크를 상업적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⁶⁸⁾ 2018년 개정된 법 제61조에서는 “비물질유산마크의 리

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2018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44호 수정보충) 제4조(민족유산의 소유권).

65)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등록된 비물질유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물질유산의 명칭, 소재지, 역사적 시기와 유래, 현 상태, 보호 가치, 보존 전망, 보존 장소,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자, 비물질유산과 연관된 수단, 도구,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비물질유산 목록은 비물질유산이 보충되는 데 따라 갱신한다”;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3),” 『민주조선』, 2019.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2018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44호 수정보충) 제2절 비물질유산의 보호관리(제41조~제47조).

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2018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44호 수정보충) 제44조(비물질유산보유자에 대한 우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비물질유산보유자를 우대하며 그의 공로에 따라 해당한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제45조(비물질유산의 전수) “비물질유산보유자는 비물질유산을 후대들에게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도록 전수하여야 한다.”

67) 전영선, “북한의 문화재 정책 특징,”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6.16.).

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 채택) 제43조(비물질유산의 마크).

용에 대한 승인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비물질유산마크를 상업적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한 요금을 낸다”고 수정하였다. 이는 비물질유산의 경제적 활용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⁶⁹⁾

〈표 II-5〉 북한의 민족유산 관련 법제의 변화

구분	문화유물보호법 (1994년 채택)	문화유산보호법 (2012년 채택)	민족유산보호법 (2015년 채택)	민족유산보호법 (2018년 수정보충)
전체	제6장 52조	제6장 58조	제6장 62조	제6장 73조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제2장	문화유물 발굴과 수집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집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민족유산의 발굴과 복원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민족유산의 평가와 등록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	민족유산의 보호관리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문화유산의 복원	민족유산의 복원	민족유산의 리용
제6장	문화유물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출처: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p. 372를 기초로 저자 수정 보완

(2)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 문화재 분야의 정상국가화

201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을 계기로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호, 세계문화유산 등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체계도 정비되었다.

2012년 8월 ‘국가 비물질유산’ 제1호로 민요 ‘아리랑’을 등록한 이후 ‘김치담그기풍습(제2호)’, ‘막걸리담그기(제3호)’, ‘장담그기(제4호)’, ‘조선옷차림풍습(제5호)’ 등을 ‘비물질민족유산국내목록’으로 연이어

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2018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44호 수정보충) 제61조(비물질유산의 마크 리용).

등록하고, 해마다 숫자를 늘리고 있다. 또한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한 이후로는 전설과 신화, 전통예술과 전통의술, 사회적 관습과 예식 및 명절행사, 자연,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기술과 관련한 내용까지 ‘국가 비물질유산’에 포함시키고 있다.⁷⁰⁾

비물질문화유산 등록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물질문화유산 등록이 시작된 2012년부터 민족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 조선민요 ‘아리랑’을, 2013년에 ‘김치담그기 풍습’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여, 2014년에 ‘민요 아리랑’을, 2015년에 ‘김치담그기 풍습’을 등재하였다. 2018년에는 남북이 각각 등재를 신청하였던 ‘씨름’을 남북 협력을 통해 공동등재하였고, 2019년에는 ‘조선옷차림풍습’의 등재를 신청하였다.⁷¹⁾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을 통해 북한 법제상 처음으로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우리 나라의 우수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세계유산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다.⁷²⁾ 남보라 등에 따르면,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개성역사유적지구’가 등재되기에 앞서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으로 인해 북한의 문화유산정책과 법률(「민족유산보호법」으로 개정)이 변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⁷³⁾ 한편 그동안 헌법에서 ‘북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한다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민족유산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2018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44호 수정보충) 제3조(민족유산의 구분).

71) 전영선, “북한의 문화재 정책 특징,”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6.16.).

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제30조(민족유산의 세계유산등록).

73) 남보라·서순복,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법학논총』, 제21권 3호 (2014), p. 192.

관련 조항(제41조)을 2019년 「사회주의헌법」에서 개정해 비물질유산의 보전과 진승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⁷⁴⁾

〈표 II-6〉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유산	고구려 고분군(2004) 개성역사유적지구(2013)	조선민요 아리랑(2014) 김치담그기 풍습(2015) 씨름(2018, 남북공동등재)	무예도보통지 (2017)
잠정목록	금강산 및 주변 유적지, 묘향산 및 주변 유적지, 평양 역사 유적지, 구장지역동굴, 칠보산	잠정목록 제도 없음	잠정목록 제도 없음

출처: 문화재청, “북한의 세계유산현황 (2019.7.31. 기준),”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77651&bbsId=BBSMSTR_1045&pageUnit=10&searchCnd=&searchWrl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mn=NS_03_09_01&searchSiteCd=> (검색일: 2021.10.20.)

(3) 글로벌 스탠더드의 ‘우리식’ 수용 및 민족유산 관리에의 활용

북한의 민족유산 관련 법제도는 점차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추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모든 부문에서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민족유산의 차원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민족유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북한의 노력은 아래의 〈표 II-7〉에서 확인되듯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 유네스코 범주와 유사한 내용으로 범주를 정리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74) 박영정,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와 협력,” (2020년 제1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자료집, 2020.5.14.), p. 49.

〈표 II-7〉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 남북 무형문화유산 범주 비교⁷⁵⁾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남한 무형문화재	북한 비물질문화유산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구전 전통 및 표현	• 구전 전통과 표현
• 공연예술	• 전통적 공연·예술	• 전통예술
• 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행사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사회적 관습과 레식 및 명절행사
•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자연과 우주에 관련한 지식과 관습
• 전통 공예기술	• 공연·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전통수공예
총 5개 범주	총 7개 범주	총 5개 범주

출처: 통일교육원,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지,” (2021년 제7기 사이버 통일교육 공공과정 교육자료, 2021.8.3.) 참조.

그러나 북한이 민족유산 보호관리 차원에서 국제화를 시도하는 것은 기저에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분단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래의 〈그림 II-2〉에서 보이듯,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에 남한이 가입한 이후 북한이 뒤이어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75)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7개 범주로 비물질유산의 범주를 나눴으나,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유네스코의 유형과 유사하게 5개 범주로 정리하였다.

〈그림 11-2〉 남북의 유네스코 협약 가입 비교



출처: 통일교육원,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지,” (2021년 제7기 사이버 통일교육 공공과정 교육자료, 2021.8.3.) 참조.

둘째, 사회주의 종주국인 중국의 문화재 정책 변화로부터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계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2011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비물질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북한 역시 중국에 이어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문화유산보호법」 제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개념과 보호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특히 민족유산의 구분에 있어 물질민족(문화)유산과 비물질민족(문화)유산으로 구분하는 것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적극적인 비물질민족유산 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한 대응 성격도 존재한다.⁷⁶⁾ 중국은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으로 2009년 ‘농악무’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2011년 ‘아리랑’을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한민족 고유 유산으로 인식되어 오던 농악

76) 중국 조선족의 비물질문화유산이 중국 정부의 국가급 혹은 성(省)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무형유산 등재를 두고 국가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조우찬, “북한 김정은 시대 문화재정책의 특징: 무형문화유산의 부각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pp. 6~7, <<https://unibook.unikorea.go.kr/files/bd48b195-4894-4f70-9176-b7b733b0509d>> (검색일: 2021.4.15.).

무와 아리랑이 국제적으로 중국의 문화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여 남북한 모두에게 위기감을 주었다. 이후 남한이 북한에 아리랑 공동등재를 제의하였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남한 단독으로 등재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 민족유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민족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8년 11월 24일 수정·보충한 「민족유산보호법」 제30조에서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족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⁷⁷⁾ 또한 제14조에서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필요에 따라 우리 나라 령역안에서 다른나라 단체 또는 개인과 고고학적조사, 탐사, 민족유산의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할수 있다”고 함으로써,⁷⁸⁾ 자국 영토 안에서의 유산발굴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수용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활용해 북한은 실리적으로 자국의 민족유산 관리 및 보호를 추진하고 있기도 한다. 고구려 고분군에 이어 개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던 것이 그러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⁷⁹⁾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위원회로부터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체 기반 목록 작성을 위한 역량 강화 및 등재 신청서’의 정교화를 위해 98,000달러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19년 10월에도 동 위원회로부터 ‘전통고려청자 제작 역량강화’를 위해 37,177달러의 지원을 받았다.⁸⁰⁾

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제30조(민족유산의 세계유산등록).

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제14조(민족유산의 공동발굴).

79)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p. 382.

80) UNESCO, “Periodic Reporting on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국제사회와의 교류(혹은 지원)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2018년 6월 28일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설립에서도 확인된다.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은 국내외에서 ‘가치있는 역사자료와 유물, 물자, 자금을 기증받아 민족유산의 발굴과 고증, 보존관리 등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⁸¹⁾ 이 기금이 국제기구들과 비정부단체들, 해외 개인 및 남한에까지 기금 기부 및 지원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북한은 민족유산에 대한 보호관리 정책을 점차 중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중화주의에 기반을 둔 공격적인 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문화재 협력의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2018년 남북관계의 혼풍 속에서 남한과 북한이 각기 등재 신청을 했던 씨름이 공동등재라는 성공으로 이어졌던 것은 향후 남북 문화재 협력이 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s://ich.unesco.org/en-stat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KP?info=periodic-reporting#rp>> (Accessed April 15, 2021); UNESCO,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of the DPR of Korea for community-based inventorying of ICH and for elaborating nomination files under the mechanisms of the 2003 Convention,” <<https://ich.unesco.org/en/assistances/strengthening-the-capacities-of-the-dpr-of-korea-for-community-based-inventorying-of-ich-and-for-elaborating-nomination-files-under-the-mechanisms-of-the-2003-convention-01444>> (Accessed April 15, 2021); UNESCO, “Capacity building on traditional Koryo celadon making practice,” <<https://ich.unesco.org/en/assistances/capacity-building-on-traditional-koryo-celadon-making-practice-01619>> (Accessed April 15, 2021), 재인용: 남보라, “북한 문화재 보호 정책의 변화와 최신 동향,” 『2020년 남북 문화유산의 이해과정(2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2020.9.), p. 113.

81) 남보라, 위의 글, p. 115.

3. 북한의 민족유산 관리체계

가. 민족유산 관리기구 및 관리체계

「민족유산보호법」에 따르면 북한은 문화성 산하 ‘민족유산보존위원회’에서 문화유산 관리·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 즉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 실무를 담당한다.⁸²⁾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북한 내 문화유산의 수집, 평가, 등록, 관리, 이용 등의 계획 수립, 심사, 허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⁸³⁾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문화유산 조사, 발굴, 복원 등과 관련한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기능과 편제는 우리의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체계와 유사하다.

(1)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기관으로 남한의 문화재청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남한의 문화재청이 문화관광체육부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국도 문화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박물관이 문화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은 박물관이 민족유산보호국 산하에 위치하고 있다.

82) 「민족유산보호법」 상에서 ‘민족유산보존위원회’,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문화성 산하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역사유적보호구역의 설치나 문화유산의 심의 결과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현우·이선복,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 지방의 유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재』, 52권 4호 (2019), p. 8.

83) 「민족유산보호법」에서의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문화성 산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을 칭한다.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pp. 373~374.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산하에는 ‘건설 및 보존처’, ‘계획처’, ‘박물관 및 천연기념물지도처’, ‘비물질문화유산보호처’, ‘단군능유적관리소’, ‘대박산전통제품제작소’, ‘조선민족유산보존사’ 등이 있다.⁸⁴⁾ 보호지도국은 다른 과학 연구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민족유산의 ‘심의 등록, 평가사업을 조직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있는 민족유산보호를 위한 부서와 민족유산보호관리소, 명승지관리소, 천연기념물관리소의 민족유산보호사업과 중앙 및 지방의 역사박물관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도국 산하에는 물질 혹은 비물질유산을 심의·평가해 등록을 결정하는 기구로 ‘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와 ‘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존재하고 있다.⁸⁵⁾

(2)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남한 문화재청 소속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4년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라는 담화 이후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민족유산보호부분의 과학연구중심이며 자문기관’으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민족유산보호법」에 ‘민족유산보존사의 조직운영’이 조항에 포함될 만큼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⁸⁶⁾ 특히 민족유산의 발굴과 고증, 등록, 복원, 보존관리와 같은 연구 사업과 함께

84) 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 (서울: 통일부, 2020), p. 77.

85) 김현우, “북한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 『북한 민족유산의 현황과 보호관리체계 이해』 (2020년 제2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자료집, 2020.6.24.), p. 78.

86) 남보라, “북한 문화재 보호 정책의 변화와 최신 동향,” p. 116.

직접 발굴과 출판선전 사업도 진행하며, 민족유산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내각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문제에 대한 자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⁸⁷⁾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은 2018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조사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과거 2007~2015년까지는 북측 조사단으로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2018년에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조선민족유산보존사가 함께 참여한 바 있다.⁸⁸⁾

(3)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조선민족유산기금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은 1945년 개관한 이래 북한의 유물 관리 및 유적 발굴 등을 담당하고, 국보급 유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발굴대를 조직하여 발굴조사를 담당하고 있다.⁸⁹⁾

또 다른 관리기구인 ‘조선민족유산기금’은 민족유산의 보존복원을 위한 국내외로부터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 2018년 6월 설립되었다. 기금리사회가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행정조직과, 선전과, 국내담당과와 국내지부, 해외담당과와 해외지부, 재정회계과로 운영되고 있다.⁹⁰⁾

기부 분야는 역사유적유물의 발굴, 복원, 보수, 보존관리, 력사박물관 지원, 명승지·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 비물질유산 지원, 해외 유출된 유물반환을 위한 지원, 전문가 양성 및 도서·연구설비 지원, 세계유산등록 지원, 전시회 조직, 도서 및 선전물 발행 등이 있으며 유물의 기증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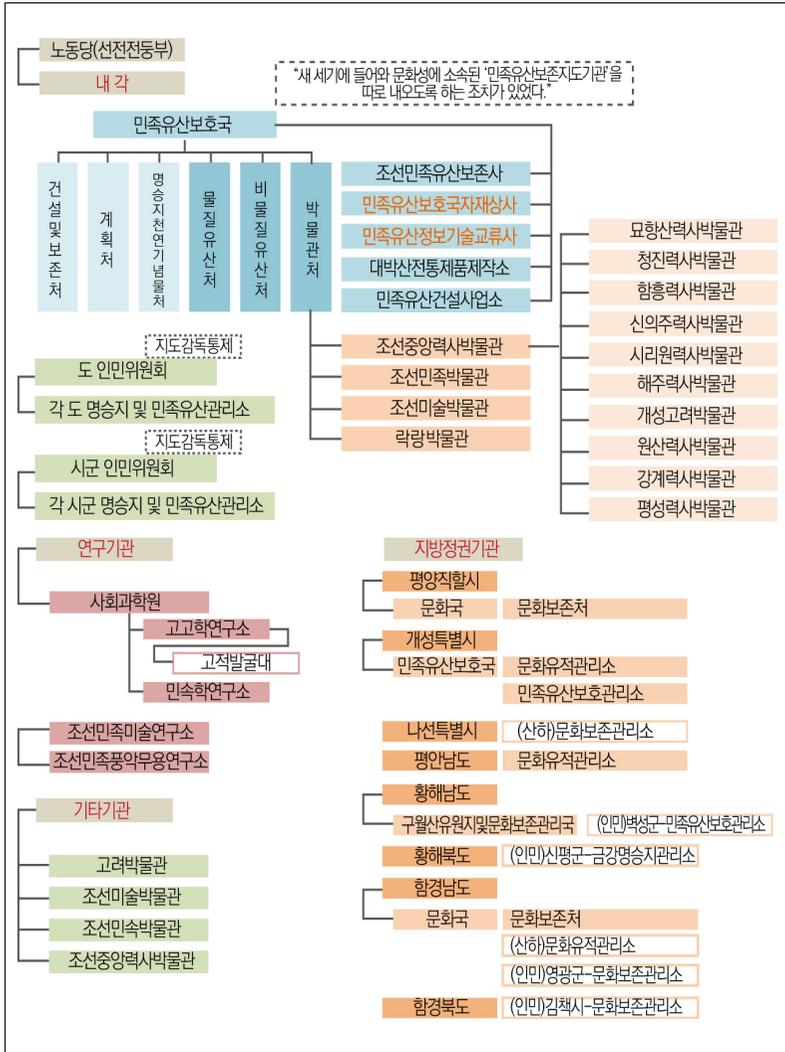
87) 조은경, “북한의 문화재 관리기구,”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7.29.).

88) 남보라, “북한 문화재 보호 정책의 변화와 최신 동향,” p.116.

89) 조은경, “북한의 문화재 관리기구,”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7.29.).

90) 위의 자료.

<그림 11-3> 북한의 민족유산 관리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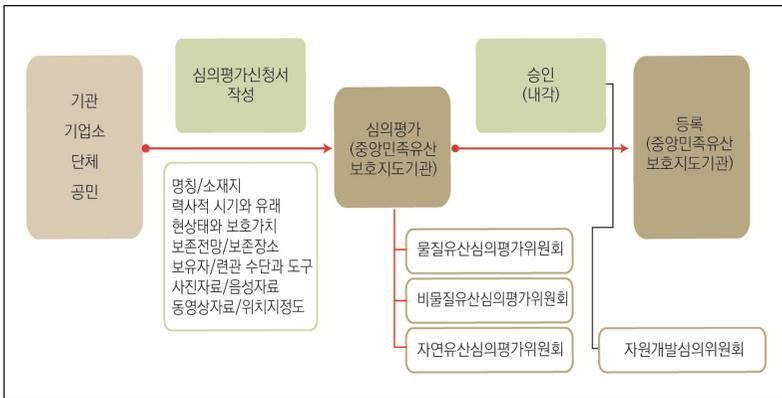


출처: 조은경, “북한의 문화재 관리기구,”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7.29.)

나. 북한의 문화재 심의평가 등록 체계

북한은 문화재(민족유산)를 심의평가하여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문화유산 등록 절차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민족유산 등재 후보에 대한 ‘심의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인 ‘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자연유산심의평가위원회’가 각기 심의평가를 진행한다. 각 위원회에서 평가된 유산은 내각 산하의 ‘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민족유산으로 최종 등록되게 된다(<그림 II-4> 참조).

<그림 II-4> 북한의 민족유산 심의평가 및 등록 체계



출처: 조은경, “북한의 문화재 관리기구.”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7.29.)

문화재 소유와 관련해서 북한은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 국가 또는 공민의 소유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오직 국가소유로만 일원화하였으며, 공민은 ‘보관과 리용’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민족유산(특히 물질유산)의 불법 거래 등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민족유산의 보존관리를 기관, 기업, 단체와 학교 등 공민과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4월과 11월은 민족유산애호월간으로 지정해 이 기간에 인민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전군중적, 전사회적관심 속에서 민족유산보호관리부문 일군을 중심으로 군중적으로 보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⁹¹⁾

또 다른 특징으로는 북한은 민족유산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고 있어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민족유산 현황 역시 일부 공개된 내용으로 정리된 것이라 하겠다.

북한은 「민족유산보호법」(2018)에 의해 문화재를 ‘민족유산’으로 하고, 이 민족유산을 ① 물질유산, ② 비물질유산, ③ 자연유산으로 구분하는데, 남한은 「문화재보호법」(2020)에 의해 ① 유형문화재, ② 무형문화재, ③ 기념물, ④ 민속문화재로 규정하고 있다.⁹²⁾ 북한이 민속문화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와 달리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 북한 민족유산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에서 기인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국가 중심의 관리체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민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민속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91) 「민족유산보호법」의 제32조(역사유적관리의 분담)과 제49조(자연유산관리의 분담)에서 해당인민위원회가 기관, 기업소, 단체에 관리를 분담하고 특히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는 보호관리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성 만월대의 보호관리 담당기관은 ‘만월중학교’이다. 조은경, “북한의 문화재 관리기구,”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7.29.).

92)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북한 「민족유산보호법」의 특징-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월호 (2021), p. 8.

III. 유네스코 유산 등재 과정과 의의



1. 유네스코 유산의 종류

인류의 중요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1950년대 중반 이집트 누비아에 위치한 유적들이 이집트 정부의 댐 건설 정책 아래 수몰 위기를 겪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⁹³⁾ 1959년 유네스코와 50여 개 국가들은 ‘누비아 캠페인’을 통해 8000만 달러를 모금하여 누비아 유적을 다른 지역으로 원형 그대로 이전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국제사회는 전쟁과 같은 여러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문화소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어 오고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종류의 유산들을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가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하에 국제사회는 1972년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며 유·무형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국제사회가 보호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더욱 넓혀지고 있는데, 현재 유네스코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을 아우르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을 비롯해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과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약을 맺고 다양한 보호 및 보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중이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유산들은 각각의 정의 아래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구분되고 있다.

9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유산사업 소개,”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소개/유네스코-유산사업-소개/>> (검색일: 2021.6.18.).

가. 세계유산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적 특징 모두를 가지고 있는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문화유산’이란 선조들이 남긴 문화적 자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첫째, 건축물이나 여러 기념비적 조각품 및 그림 등을 아우르는 기념물(monuments), 둘째, 역사, 예술, 혹은 과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건물군(groups of buildings), 셋째, 역사, 미학, 민족학, 또는 인류학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sites)들이 포함된다(「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2장 45항 제1조).⁹⁴⁾

그리고 ‘자연유산’이란 미학이나 학술 혹은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징물 또는 자연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첫째, 미학이나 과학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리적,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이러한 생성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체, 둘째, 과학적 혹은 보존의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질학적, 지형학적 생성물과 멸종 위기 대상종(동·식물)의 서식지를 구성하는 정확하게 구획된 지역, 셋째, 과학, 보존, 자연미의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유적지, 혹은 정확히 구획된 자연지역 등을 포함한다(운영지침 2장 45항 제2조).⁹⁵⁾

마지막으로 세계유산에는 ‘복합유산’이 포함되어 있다. 복합유산이란 운영지침 2장 45항 제1, 2조에 정의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94) UNESCO,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July 10, 2019, p. 19,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Accessed June 18, 2021).

95) *Ibid.*, pp. 19~20.

특징을 부분적 혹은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일컫는다(운영지침 2장 46항).⁹⁶⁾

나.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이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르는 것으로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온 것을 말한다.⁹⁷⁾ 세계유산이 주로 기념물이나 역사적 건축물, 사적지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문화적 소산이라면 무형문화유산은 각종 공연예술 등과 같은 물질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문화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을 아우르는 세계유산이 「세계유산협약」에 의해 정의되고 보호받고 있다면, 무형문화유산은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의해 정의되고 보호받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이란 공동체나 집단, 그리고 때때로는 개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practices), 표상(representations), 표현(expressions),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그리고 도구(instruments), 물품(objects), 공예품(artefacts) 및 문화공간(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으로 정의된다(「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2조 1항).⁹⁸⁾ 무형문화유산

96) *Ibid.*, p. 20.

9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무형문화유산소개,”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소개/무형문화유산소개/>> (검색일: 2021.6.18.).

98) UNESCO, “Text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s://ich.unesco.org/en/convention>> (Accessed June 18, 2021).

은 세대를 통해 전승되며,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에게 정체성 및 계속성을 제공하고, 결국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는 첫째,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둘째, 공연예술(performing arts), 셋째, 사회적 관습과 의례 및 축전행사(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넷째, 자연과 우주와 관련된 지식과 관습(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다섯째, 전통 공예(traditional craftsmanship) 등을 포함한다(「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2조 2항).⁹⁹⁾

현재 유네스코는 세계화와 도시화, 그리고 각 국가들의 문화 통합 정책에 더해 문화유산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 부족이 커짐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다양한 보존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¹⁰⁰⁾

99) *Ibid.*

10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무형문화유산소개,”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소개/무형문화유산소개/>> (검색일: 2021.6.18.).

다.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에서는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사업 설립을 통해 기록유산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즉 전쟁 등 다양한 종류의 폭력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약탈과 불법 거래, 파괴, 부적절한 보호시설 등으로 인해 많은 기록유산들이 사라져버렸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바,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의 기록유산이 곧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라는 인식 아래 다양한 기록유산들을 미래세대에도 전수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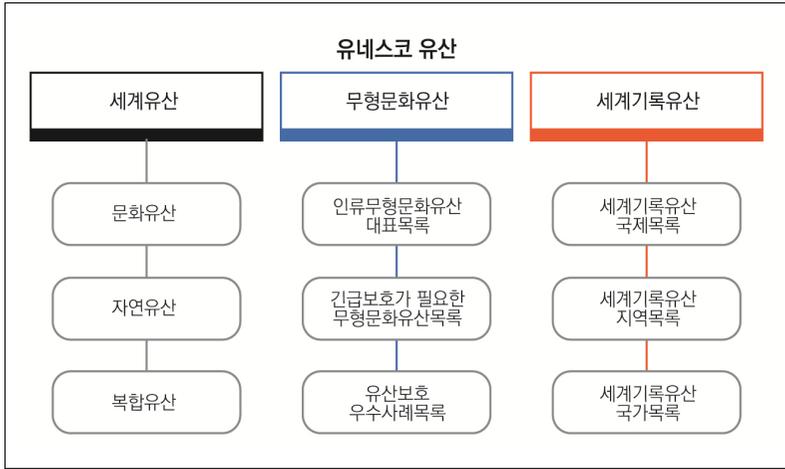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으로써 “단독 기록일 수 있으며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일 수도 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특히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데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⁰²⁾ 이러한 기록유산에는 우선 필사본이나 도서, 신문, 포스터 등과 같은 기록이 담긴 자료, 둘째,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자료로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셋째, 그림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non-textual) 자료, 넷째 전통적인 움직임이나 현재를 기록한 영상 이미지, 다섯째 오디오나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¹⁰³⁾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남겨져 있는 기록유산을 그 중요성에 따라 국제적 목록, 지역적 목록, 국가적 목록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보호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10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계기록유산소개,”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소개/세계기록유산소개/>> (검색일: 2021.6.18.).

102) 위의 글.

103) 위의 글.

〈그림 Ⅲ-1〉 유네스코 유산 종류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유산사업 소개.”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소개/유네스코-유산사업-소개/>> (검색일: 2021.8.10).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은 협약국의 등재 신청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수정 등 대부분의 절차는 신청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유네스코 역시 신청국가가 제출한 신청서와 보고서 등을 심사하고, 신청된 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정도로 충분히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평가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세계유산 등재 절차

일반적으로 세계유산 등재 절차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회원국 정부가 유네스코 사무국(세계유산센터)(이하 사무국)에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이후 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유네스코의 등재 심사 절차가 시행된다(〈표 III-1〉 참조).

〈표 III-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

일정	절차	유네스코의 역할
수시	잠정목록 등재	
1차년도 이전 9월 30일	예비신청서 접수 마감	사무국: 신청서 완성도 검토 후 신청국에 통보. 신청서 미완성의 경우 누락 내용 등을 알림
1차년도 2월 1일	본 신청서 접수 마감	사무국: 신청서 접수 후 완성도 평가
1차년도 2월 1일~3월 1일	본 신청서 완성도 판단 및 자문기구 전달, 평가 의뢰	사무국: 신청서에 대한 완성도 평가 후 자문기구에 전달. 해당신청서 목록화와 홈페이지 등재, 자문기구 평가 의뢰
1차년도 3월 ~ 2차년도 5월	자문기구 평가	자문기구: 신청국에 전문가 파견, 현지조사 실시, 2차년도 1월 31일까지 중간보고서 (보완정보 요청 등) 제출
2차년도 위원회 연례회의 개최 6주 전	자문기구 평가서 및 권고안 제출	자문기구: 최종보고서 및 권고안 제출 사무국: 보고서 및 권고안을 위원회와 등재 신청국에 전달
2차년도 위원회 연례회의 (6, 7월)	신청서 검토 및 등재 여부 최종결정	위원회: 심의 및 신규 세계유산 최종결정 등재/보류/반려/등재불가 결정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잠정목록 등재의 경우 신청국이 수시로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심사 절차는 없으며, 유네스코 역시 이 과정에서는 잠정목록 신청 접수와 목록 갱신 이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년 9월 1일 등재 신청국가의 예비신청서 접수 마감일이 끝나면 등재 절차에 있어 유네스코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사무국은 신청서 접수와 완성도 평가, 외부자문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 등 전반적인 행정 및 기술적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부자문기관은 1차년도 3월에서 2차년도 5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현지조사를 비롯한 등재 신청 유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엄정한 과학적 평가를 진행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와 권고안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5월에서 6월 사이, 즉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연례회의 개최 6주 전에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에서는 이 보고서를 위원회와 등재 신청국에 전달한다. 이후 통상적으로 6월과 7월 사이에 개최되는 위원회 연례회의에서는 신청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목록 등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러한 절차는 1차년도 2월 1일 마감 이후 시작되어 2차년도 6~7월 즈음 위원회 연례회의에서의 최종결정을 통해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재 절차는 약 16~17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표 Ⅲ-2〉 무형문화유산 등재 절차

절차	시기	내용
신청서 준비 (신청국) 및 접수	1차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마감
	1차년도 6월 10일까지	신청서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통보
	1차년도 9월 30일까지	신청국에 의한 보완된 신청서 접수 마감
심사	1차년도 12월~ 2차년도 5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대표목록 심사보조기구에서 심사
	2차년도 4~6월	최종심사 회의
	연례 국가간 위원회 개최 몇 주 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
결정	2차년도 11월	최종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무형문화유산 등재 절차,”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등재/등재절차/>〉 (검색일: 2021.6.15.).

한편, 무형문화유산의 경우는 그 절차와 시기가 세계유산 등재 경우와는 조금씩 다르다(〈표 III-2〉 참조). 무형문화유산은 1차년도 3월 31일에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고 이듬해인 2차년도 11월에 등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약 1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나. 등재 과정에서의 유네스코의 주요 주체와 역할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는 회원국이라 할 수 있다. 국가들이 자국이 보유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에 대해 등재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유네스코에 의한 등재 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등재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 보강 등 역시 등재 신청국가의 역할이 그만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의 주체는 국가들인 것이다.

하지만 등재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의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 유네스코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유네스코의 경우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기를 원하는 유산의 가치와 진정성은 물론이고, 해당 유산 보호를 위한 등재 신청국가의 법적·제도적 관리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사무국과 외부전문기관, 그리고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무국은 세계유산센터로 불리기도 하며 총회 및 위원회 주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히 세계유산 등재 과정과 관련해서는 등재 신청서의 접수, 등록, 완성도 검사, 문서관리, 그리고 외부전문기구로의 신청서 전달 등과 같이 다양한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운영지침 1장 28항).¹⁰⁴⁾

104) UNESCO,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July 10, 2019, p. 14,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Accessed June 18, 2021).

우선 사무국은 등재 신청국가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사무국은 등재 과정의 여러 절차들이나 그 과정에서 작성·제출해야 할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등재 신청국가에게 제공하거나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적절한 사진 및 지도를 확인하고 등재 신청서의 작성 및 수정 과정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운영지침 3장 126항).¹⁰⁵⁾

또한 사무국은 등재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서류의 완성도를 점검한다. 신청서에 별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신청서를 등록하고, 이를 관련 자문기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동시에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도 등록하여 위원국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서류상 미진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완성을 위해 필요한 누락 내용을 등재 신청국가에 통보하기도 한다(운영지침 3장 140항).¹⁰⁶⁾

이후 사무국은 외부자문기관이 해당 유산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작업 등을 지원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외부자문기관과 등재 신청국가 간의 연락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외부자문기관의 평가 결과 및 권고안을 위원회에 전달하며 최종결정에 대해 등재 신청국에 통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운영지침 3장 168항참고).¹⁰⁷⁾ 즉, 사무국은 모든 등재 과정에 있어서 등재 신청국, 외부자문기관, 위원회의 업무를 위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이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등재 신청 대상 유산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뛰어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외부자문기관의 역할이다(운영지침 3장 143~151항).¹⁰⁸⁾ 즉 사무국은 등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외부자문기관

105) *Ibid.*, pp. 34~35.

106) *Ibid.*, p. 40.

107) *Ibid.*, pp. 46~48.

108) 외부자문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3장 143~151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Ibid., pp. 40~42.

에 평가를 의뢰하는데, 이러한 요청에 따라 외부자문기관은 해당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outstanding universal)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완전성(integr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보호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운영지침 3장 143항).¹⁰⁹⁾

평가를 담당하는 외부자문기관은 등재 신청 대상 유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데, 문화유산의 경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가, 자연유산의 경우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이 평가를 담당한다(운영지침 3장 144, 145항).¹¹⁰⁾ 아울러 기록유산의 경우 등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개별적 계약을 체결한 후 기록유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며, 무형유산의 경우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대표목록 심사보조기구에서 평가를 맡는다.

이들 외부자문기관들은 「세계유산협약」 관련 운영지침과 위원회에 의한 추가 지침에 따라 대상 유산을 평가하며, 고고학자, 구조기술자, 유적 보존처리 전문가, 생태계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평가대상 유산이 문화와 자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일 경우 ICOMOS와 IUCN이 공동으로 평가하는데(운영지침 3장 146항), 이 경우 ICOMOS와 IUCN에서 선정한 각각의 전문가들이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며 보고서와 관련 정보들을 주고받으며 평가를 진행하기도 한다.¹¹¹⁾

109) *Ibid.*, p. 40.

110) 보다 자세한 외부자문기관의 평가과정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의 부록 6 참고. *Ibid.*, pp. 109~117.

111) Lynn Meskell, Caludia Liuzza, Enrico Bertacchini, and Donatella Saccone, "Multilateralism and UNESCO World Heritage: Decision-making States Parties and Political Process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21, no. 5 (2015), p. 424.

위 자문기관들은 철저하고 엄격한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데 있어 ‘조건 없는 등재 권고(recommended for inscription without reservation)’, ‘등재 불가 권고(not recommended for inscription)’, ‘등재 보류 또는 반려 권고(recommended for referral or deferral)’ 등과 같은 세 가지 범주의 권고사항을 사무국에 제출한다(운영지침 3장 151항).¹¹²⁾

위원회는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해당 유산의 등재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린다(운영지침 1장 24절).¹¹³⁾ 총회에서 선출된 21개 회원국 대표들이 1년에 한 번씩(매년 6~7월) 회의를 개최하며, 이때 외부자문기관의 보고서와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특정유산의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운영지침 3장 153-160항).¹¹⁴⁾ 이때 위원회는 ‘등재(inscription)’, ‘등재거부(decision not to inscribe)’, ‘보류(referral of nomination)’, ‘반려(deferral of nomination)’ 등을 결정하는데, 보류와 반려 결정의 경우 위원회는 등재 신청국에게 추가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즉 보류 결정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등재 신청서에 대한 보완 및 추가정보를 요구하거나, 반려 결정의 경우에도 당사국의 해당 유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상세한 연구 진행, 신청서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운영지침 3장 159, 160항).¹¹⁵⁾

요컨대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 있어 유네스코는 위원회와 사무국, 그리고 유네스코의 의뢰를 받은 여러 외부자문기관들을 통해 접수 전반에 걸친 행정 및 기술적 지원, 심사 및 평가, 최종결정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12) *Ibid.*, p. 41.

113) UNESCO,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July 10, 2019, p. 13,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Accessed June 18, 2021).

114) *Ibid.*, pp. 42~43.

115) *Ibid.*, pp. 42~43.

다. 선정과정의 문제점

새로운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데 있어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내리지만 일반적으로 외부자문기관의 권고안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외부자문기관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해당 유산들이 지니는 가치와 우수성, 완전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자문기관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위원회는 자문기관의 평가 및 권고안의 중요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등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등재 선정 과정은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최종결정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억이나 역사 유물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유물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정치적 요소와 결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 세계유산 및 기록유산 등재 선정 과정에서도 정치권력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¹⁶⁾ 즉 일부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여부가 해당 유산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 등이 아닌, 국가들 간의 정치적 계산과 이해관계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¹¹⁷⁾ 결국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선정 과정에 대한 형평성 및 일관성, 공정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최종 선정결정을 내리는 위원회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정 기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란 비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과

116) 최은봉·이민주,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와 탈냉전기 기억의 민주화: 제주, 오키나와, 난징의 기억은 경합하는가?” 『담론201』, 제20권 3호 (2017), p. 43.

117) 노선영·최은봉, “인권 정치와 기록레짐화: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세계기록유산,” 『문화와 정치』, 제7권 2호 (2020), p. 56.

정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자는 유네스코 협약을 체결한 회원 국가들이며, 그중에서도 위원회에 속해 있는 21개 대표국들이라 할 수 있다.¹¹⁸⁾

과거에는 21개 대표국들이 고고학자나 환경 분야 전문가와 같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주로 위원회 대표로 임명했다면, 최근에는 그 자리에 각 위원국이 임명한 외교관들이나 정치인들이 임명되면서, 결정 과정에 각 국가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¹¹⁹⁾

한편, 2010년 제34회 유네스코 총회 세션에 제출된 노르웨이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15년간 유네스코 내 정치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세계유산 선정 등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국력이 강한 국가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¹²⁰⁾ 일례로 최근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원회 내에서 이들 국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정치적 이익에 근거해 이들 간의 연합이 형성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¹²¹⁾

특히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유네스코 등재유산이 ‘위험유산’ 목록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연합을 형성하여 상호 지지하며, 결국 목표를 이루기도 했다.¹²²⁾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위치한 ‘마퐁구베

118) Lynn Meskell, Caludia Liuzza, Enrico Bertacchini, and Donatella Saccone, “Multilateralism and UNESCO World Heritage: Decision-making, States Parties and Political Processes,” p. 424.

119) *Ibid.*, p. 424.

120) *Ibid.*, pp. 425~426.

121) Enrico Bertacchini, Claudia Liuzza, and Lynn Meskell, “Shifting the Balance of Power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An Empirical Assess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23, no. 3 (2017), pp. 341~343.

122) ‘위험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위험유산으로 지정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유산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

문화경관(Mapungubwe Cultural Landscape)’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이후 ICOMOS와 IUCN은 인근 지역에서의 광산 채굴로 인해 ‘마푼구베 문화경관’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유네스코 위험유산 등재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위원국들에게 로비를 진행하였고, 당시 같은 브릭스 국가였던 러시아와 인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지지함으로써 결국 ‘마푼구베 문화경관’은 위험유산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 이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거나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데 있어 문화유산의 가치나 도덕적인 규범보다도 국가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²³⁾

또한 국가들은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수단을 통해 자국 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등재 신청이 거부되도록 방해를 하기도 한다.

러시아의 ‘볼가르 역사고고유적군(Bolgar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Complex)’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국력이 강한 국가의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자원이 외부자문기관의 권고사항을 무시할 만큼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²⁴⁾ 러시아는 2010년대 초반 자국의 ‘볼가르 역사고고유적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ICOMOS가 해당 유적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ICOMOS는 201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제36차 위원회가 개최되기 약 6개월 전 ‘볼가르 역사고고유적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회의가 개최되

123) *Ibid.*, p. 343.

124) *Ibid.*

던 시기에 맞춰 유네스코 대표단들에게 전세기를 제공하여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위원회의 다른 국가 대표들에게도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며 이들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결국 러시아는 위원국 내 여러 나라들의 지지를 얻고 최종적으로 ICOMOS의 초기 권고사항과는 달리 ‘볼가르 역사고고유적군’의 유네스코 목록 등재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등재 결정에 있어 순수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이외에도 국가의 국력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2〉 볼가르 역사고고유적군



출처: Indeikin, “Bolgar 9,”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0%91%1D1%83%D0%BB%D0%B3%D0%B0%D1%80%D1%81%D0%BA%D0%BE%D0%B5_%D0%B3%D0%BE%D1%80%D0%BE%D0%B4%D0%B8%D1%89%D0%B5_9.JPG> (Accessed June 23, 2021); Тимур Искандаров, “Black Chamber,”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lack_chamber.jpg> (Accessed June 23, 2021).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이 위원국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합치되거나 국력이 강한 국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외부자문기구의 과학적 평가에 근거한 권고사항이 무시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¹²⁵⁾

125) Lynn Meskell, Caludia Liuzza, Enrico Bertacchini, and Donatella Saccone, “Multilateralism and UNESCO World Heritage: Decision-making, States Parties and Political Processes,” p. 426.

〈표 III-3〉 외부자문기관 권고사항과 위원회 최종결정 간의 합치 비율

2003~2007년		위원회 최종결정			
		등재(%)	보류(%)	반려(%)	거부(%)
외부자문기관 권고사항	등재	97.06	0.98	1.96	0.00
	보류	55.56	33.33	11.11	0.00
	반려	29.73	21.62	45.95	2.70
	거부	0.00	0.00	50.00	50.00
2008~2013년		위원회 최종결정			
		등재(%)	보류(%)	반려(%)	거부(%)
외부자문기관 권고사항	등재	97.26	2.74	0.00	0.00
	보류	91.67	8.33	0.00	0.00
	반려	46.81	31.91	21.28	0.00
	거부	12.50	37.50	25.00	25.00

출처: Lynn Meskell, Caludia Liuzza, Enrico Bertacchini, and Donatella Saccone, "Multilateralism and UNESCO World Heritage: Decision-making, States Parties and Political Processes," p. 428의 표를 저자 재작성.

〈표 III-3〉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등재 신청 유산에 대한 외부자문기관의 평가에 근거한 권고사항과 위원회의 최종결정 사항 간의 합치 비율을 보여준다. 2003년과 2007년 사이 외부자문기관의 등재 권고는 대부분 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등재(97.06%)됨으로써 대부분 위원회가 자문기관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부자문기관의 보류 권고와 반려 권고의 경우 위원회가 상당 부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외부자문기관의 전체 보류 권고 건수 중 33.33%만 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보류 결정이 난 데 비해 55% 이상은 등재 결정이 내려졌으며, 외부자문기관의 반려 권고 중 45.95%만이 위원회에 의해 최종 반려 결정이 난 데 비해 29%는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부자문기관에서는 몇 개월 동안의 종합적인 평가와 검증을 통해 해당 유산의 등재 여부에 대한 권고를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않는 모습

이 상당수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2003~2007년 기간보다 2008~2013년 기간에 접어들면서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외부자문기관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외부자문기관에서 보류 권고를 내린 전체 유산 중 불과 8% 정도만이 위원회에 의해 최종 보류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91.67%는 외부자문기관의 보류 권고에도 불구하고 등재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외부자문기관이 반려할 것을 권고한 신청 유산 중에서는 약 46%가 위원회에 의해 등재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2003~2007년 기간과 비교했을 때 외부자문기관의 권고사항과 위원회 최종결정 사항 간의 불일치가 더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부자문기관의 거부 권고에 대해서 2003~2007년 기간에는 절반인 50%가 위원회에 의해 최종 등재거부 결정이 내려진 데 비해 2008~2013년 기간에는 위원회가 외부자문기관의 거부 권고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거부 결정을 내린 비율은 25%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ICOMOS나 IUCN은 유네스코의 의뢰를 받아 등재 신청 문화유산 및 자연경관이 등재될 자격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전문기관들이다. 그리고 이들 외부자문기관은 수개월간의 현지조사를 포괄적이며 과학적으로 조사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평가단 역시 고고학자, 생물학자, 보존처리 전문가 등과 같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외부자문기관은 위원회에 등재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최근 이러한 권고가 위원회로부터 무시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¹²⁶⁾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는 데에는 결국 위원회 내 국가들이 등재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126) *Ibid.*, p. 427; Enrico Bertacchini, Claudia Liuzza, and Lynn Meskell, "Shifting the Balance of Power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An Empirical Assessment," p. 332.

나 경제적 자원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일부의 경우에 있어 유산 본연의 가치보다는 신청국가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능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3.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의의 및 문제점

국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문화유산이나 수려한 자연경관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국가들의 다양한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인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유네스코 및 타국과의 협력 아래 해당 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추진하거나 혹은 등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 등이 국가들의 주요 동기로 꼽히기도 한다. 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자국 유산을 등재시킴으로써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동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렇듯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해당 국가에게 다양한 차원의 이익을 주고 있다.

가. 정치적 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한 국가의 유산을 등재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유산 등재는 국제무대에서 해당 국가의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프트파워란 “강압(coercion)이

나 보상(payment)이라는 수단보다는 매력(attraction)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한다.¹²⁷⁾ 즉 국가는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력을 이용한 강압적 수단이라든지 경제력을 이용한 보상적 수단을 이용하기보다 자국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나 호감도를 이끌어내어 다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이끄는 능력이 바로 소프트파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파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국가의 문화적 우수성과 가치이다.¹²⁸⁾ 특히 한 국가의 문화적 자원이 다른 국가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가치를 향유하고 있을 경우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파워 자원이 될 수 있기도 하다.¹²⁹⁾ 이러한 측면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한 국가의 문화적 우수성을 판단하는 척도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그 선정기준부터가 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수성, 독특함, 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그 유산이 탁월한 가치 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⁰⁾

127) Joseph S. Nye,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6, no. 1 (2008), p. 94.

128) 소프트파워의 근원으로는 한 국가의 문화적 자원, 정치적 가치, 그리고 외교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제력 역시 소프트파워를 창출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Joseph S.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2004), pp. 11~14; Joseph S. Nye, *The Future of Power* (New York: PublicAffairs, 2011), p. 85.

129) Joseph S. Nye, *The Future of Power*, p. 84.

130) 박선희, “문화다양성의 역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국가주의,” 『문화와 정치』, 제6권 4호 (2019), p. 88.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문화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파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Portland Communications)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순위 지표에는 국가의 정부, 대외관계, 기업, 교육, 디지털, 문화 등 6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히 문화 분야의 하부지표 중 하나로 각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개수가 포함되어 있다.¹³¹⁾ 물론 여기에는 워낙 다양한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 기관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각 국가들의 소프트파워와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보유 개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유 개수는 상위권이지만 그에 비해 소프트파워는 그에 걸맞지 않은 경우도 나타난다(〈표 III-4〉 참조).

〈표 III-4〉 소프트파워 상위 30개 국가의 유네스코 보유 현황

국가	소프트파워 랭킹	유네스코 유산 순위	보유개수
프랑스	1	5	45
영국	2	8	32
독일	3	4	46
스웨덴	4	20	15
미국	5	10	24
스위스	6	24	12
캐나다	7	14(공동)	20
일본	8	12	23
호주	9	14(공동)	20
네덜란드	10	28(공동)	10

131) Portland, "The Soft Power 30: A Global Ranking of Soft Power 2019," p. 118, <https://softpower30.com/wp-content/uploads/2019/10/The-Soft-Power-30-Report-2019-1.pdf> (Accessed May 28, 2021).

국가	소프트파워 랭킹	유네스코 유산 순위	보유개수
이탈리아	11	1(공동)	55
노르웨이	12	-	8
스페인	13	3	48
덴마크	14	28(공동)	10
핀란드	15		7
오스트리아	16	28(공동)	10
뉴질랜드	17	-	3
벨기에	18	23	13
대한민국	19	21(공동)	14
아일랜드	20	-	2
싱가포르	21	-	1
포르투갈	22	18	17
폴란드	23	19	16
체코	24	21(공동)	14
그리스	25	16(공동)	18
브라질	26	13	22
중국	27	1(공동)	55
헝가리	28	-	8
터키	29	16(공동)	18
러시아	30	9	29

* 소프트파워 순위는 2019년 기준이며 유네스코 보유 개수는 2021년 기준
출처: Portland, "The Soft Power 30: A Global Ranking of Soft Power 2019," p. 40; UNESCO, "Number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inscribed by each State Party (167)," <<https://whc.unesco.org/en/list/stat/#s2>> (Accessed May 28, 2021) 자료들을 저자 재정리.

하지만 2019년 보고서에서는 소프트파워 1위에 오른 프랑스의 경우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인정받은 점에 프랑스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인정되었고, 프랑스의 주요 문화적 자산의 예시로서 프랑스 음식문화, 파리의 센 강변(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등 포함) 등과 같은 유네스코 등재유산들이 보고서에 명시되기도

했다.¹³²⁾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유네스코 등재유산 역시 한 국가의 매력 척도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으며,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 강화에도 기여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두 번째 의의로 국가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민족 국가의 경우 자국 소수민족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민족적·국가적 통합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¹³³⁾

현재 한족을 포함해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의 국가로의 통합을 위해 중국 정부는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주요 통합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단일 국가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민족들의 고유 문화들까지 ‘중화민족의 문화’로 만듦으로써 중국 내 모든 민족들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는데,¹³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수민족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각 국가들이 자국의 유·무형 문화유산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시키려는 목적 중에는 자국 문화의 우수함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함도 있지만 해당 문화가 ‘자국의 것,’ 즉 자국 소유임을 내세우기 위함도 있다.¹³⁵⁾ 특히 비슷한 유형의 무형문화유산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경우 한 국가가 우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게 되면 국제무대의 인식은 해당 유산을 등재 국가의 고유한 문화로, 다른 국가들에 존재하는 비슷한 문화들은 아

132) *Ibid.*, p. 39.

133) 박선희, “문화다양성의 역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국가주의,” p. 101.

134) 박정수, “중화(中華) 민족주의와 동아시아 문화갈등: 역사와 문화의 경계짓기,” 『국제정치논총』, 제52권 2호 (2012), pp. 69~92.

135) 박선희, “문화다양성의 역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국가주의,” p. 97.

류(亞流)로 취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2005년 한국이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先)등재한 데에는 등재를 통해 단오라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문화 소유권을 한국이 선점하고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¹³⁶⁾ 즉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한다는 것은 그 문화가 ‘자국의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렇다면 자국 내 소수민족 문화를 다른 나라들보다도 먼저 등재시킨다는 것 역시 소수민족들의 문화도 ‘그들의 것’이나 ‘다른 나라의 것’이 아닌, ‘자국의 것(중국의 경우 중화의 것)’이라고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¹³⁷⁾ 결국 이는 소수민족들은 단일하고 통합된 하나의 정치적 단위(중국의 경우 중화민족)에 귀속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몽골족의 전통 무형문화유산 중 하나인 ‘후미(呼麦)’라는 가창예술을 몽골을 배제한 채 2009년 단독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였으며, 아라비아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전래되어 온 ‘무카무(木卡姆)’ 예술 역시 2001년 자국의 유산으로 단독등재한 바 있다.¹³⁸⁾

이는 ‘후미’나 ‘무카무’가 각각 몽골족과 위구르족의 대표적 무형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등재시킴으로써 이들 소수민족의 문화가 ‘중화의 것’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중국 민족통합의 일환으로써 이들 민족들을 중화주의 정책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¹³⁹⁾

136) 위의 글, p. 99.

137) 위의 글, p. 103.

138) 김창경, “중국 무형문화유산과 국가적 정체성 고찰 - 소수민족 무형문화유산 등재 문제점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1권 42호 (2015), pp. 190~193.

139) 위의 글, p. 201.

〈그림 Ⅲ-3〉 몽골족 후미



출처: “Khoomei,”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lash-5x5-300dpi.jpg?uselang=ko>) (Accessed June 23, 2021).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민족의 통합, 국민들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 국가의 유·무형 유산과 자연경관들은 ‘유산 외교(heritage diplomacy)’라는 이름으로 외교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¹⁴⁰⁾

실제로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공공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한류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와 음식과 같은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 한국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 제고 등에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¹⁴¹⁾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유산의 경우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유용한 외교적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정치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동등재의 경우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복수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을 공동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신청 과정에서부터 등재 이후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동안 높은 수준의

140) 노선영·최은봉, “인권 정치와 기록레짐화: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세계기록유산,” p. 57.

141) 신진,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한류의 확산의 영향력과 공공외교,” 『대한정치학회보』, 제21권 1호 (2013), pp. 1~2.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¹⁴²⁾

즉 공동등재 신청 단계 이전부터 국가들은 신청 대상 유산이 개별 국가 수준에서 어떤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워크숍 및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력과 교류의 기회를 갖게 마련이다. 또한 등재 이후로도 등재유산에 대한 공동의 보호활동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력 국가 간 교류 및 이해증진이 이어지게 된다.¹⁴³⁾

종합하자면 한 국가의 유·무형 유산이나 자연경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이는 남북한 간의 공동등재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우선 남북한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유·무형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 등을 공동등재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소프트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 자원을 얻게 된다. 아울러 공동등재 추진이나 등재 이후의 협력 과정 속에서 남북한 간의 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가 역시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등재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가 같은 토대 위에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으며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남북한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내 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여 통일 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42) 황경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매사냥’ 공동등재의 특성과 의의,” 『문화재』, 제51권 4호 (2018), p. 220.

143) 위의 글, pp. 219~220.

나. 경제적 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해당 유적지·자연경관이 위치한 지역 및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해당 유산은 국내외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어 관광객들의 증가로 이어지며, 그로 인한 관광수입 등이 직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의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경우 각 국가들은 해당 유적을 자국의 관광홍보를 위한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제적 홍보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TV 광고나 여행 잡지 등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해당 유적지가 외국인들에게 소개될 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된다.¹⁴⁴⁾

실제로 미국의 한 국제적 여행전문잡지(National Geographic Traveler)에서는 1999년 ‘일생 동안 꼭 방문해야만 하는 여행지 50선’을 선정, 발표한 바 있는데, 이때 50위 내에 선정된 여행지들 중 추천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들이기도 했다.¹⁴⁵⁾ 이렇게 해외에 더 많이 소개되고 유명세를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네스코 등재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 규모 역시 커지게 된다.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실제 어느 정도의 관광객 증가를 이끌어내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여행의 경제적 영향력에 관한 일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표준화된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 세계 곳곳의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

144) Chih-Hai Yang, Hui-Lin Lin, and Chia-Chun Han, “Analysis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in China: The Role of World Heritage Sites,” *Tourism Management*, vol. 31, no. 6 (2010), p. 829.

145) *Ibid.*, p. 829.

의 규모, 경제적 효과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개별적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¹⁴⁶⁾

무엇보다도 각 국가들마다 관광객들에 대한 정의와 자료 수집 방법, 합산 방식 등이 상이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어느 정도의 관광객 증가와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세계유산 등재와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표준화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최근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지역으로의 방문 규모, 여행객들의 소비,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 마련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기관 및 대학들과 공동으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별 연구들은 특정 사례 분석과 개별 국가의 통계자료 등에 의존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가 해당 유산의 인기를 높이고 관광객의 증가를 이끌어 낸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례로 총 118곳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지역에 대한 방문객 조사 결과 매년 이 지역들에 대한 전체 방문객들은 해마다 약 6,300만 명이 증가했으며, 그중 13%에 달하는 자연유산의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⁸⁾

146) UNESCO, "Socio-economic Impacts of World Heritage Listing," <<https://whc.unesco.org/en/socio-economic-impacts>> (Accessed May 28, 2021).

147) *Ibid.*

148) Jim Thorsell and Todd Sigaty, "Human Use in World Heritage Natural Sites: A Global Inventory," *Tourism Recreation Research*, vol. 26, no. 1 (2001), pp. 85~101.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등재 이후 최소 40%의 방문자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며,¹⁴⁹⁾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Nova Scotia)에 위치한 ‘루넨버그 구시가지(Old Town Lunenburg)’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1990년에서 2007년 동안 이 유네스코 등재유산에 방문한 관광객이 매년 평균 6.2%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¹⁵⁰⁾

중국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중국 내에서 새로운 4A/3A급 관광지가 등재될 경우 기대되는 외국 관광객 증가 규모와 비교할 때 새로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기대되는 증가 규모는 6배 가량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⁵¹⁾ 특히 한 연구는 2011년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 있던 캐나다 ‘그랑프레 역사지구(Grand Pré Historic Site)’가 실제 유산목록에 등재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방문객 증가 및 관광수입 등을 종합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세계유산 목록 등재와 경제적 이득 간의 보다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 있는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등재 이후 관광객은 연평균 6.2% 증가할 것이며 그로 인한 관광수입은 5만~32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¹⁵²⁾

149) C. Michael Hall and Rachel Piggin, “Tourism and World Heritage in OECD Countr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vol. 26, no. 1 (2001), pp. 103~105.

150) Brian Logan VanBlarcom and Cevat Kayahan,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 of a UNESCO World Heritage Designation,” *Journal of Heritage Tourism*, vol. 6, no. 2 (2011), p. 144.

151) 현재 중국의 문화재 등급은 원래 1A~4A 등 네 개 등급으로만 구분되어 있었으며 2000년대 중반 개정을 통해 1A~5A 등 5개 등급으로 새롭게 구분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2010년에 발표된 자료로서 1A~4A만 존재하던 이전 등급기준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5A 등급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Chih-Hai Yang, Hui-Lin Lin, and Chia-Chun Han, “Analysis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in China: The Role of World Heritage Sites,” p. 834.

152) *Ibid.*, p. 161.

아울러 이러한 연구들 이외에도 일부 사례들 역시 유네스코 등재가 관광객의 증가 효과로 이어짐을 잘 보여준다.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의 한 사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서부에 위치한 ‘내로이 피오르드(Nærøyfjord)’가 2005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이후 이 지역 관광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등재 이후 지금까지 내로이 피오르드와 인근의 ‘에울란피오르드(Aurlandsfjord)’ 지역에 25,000회 이상의 크루즈 선이 방문했으며, 해마다 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⁵³⁾

〈그림 III-4〉 내로이 피오르드 전경



출처: Vincent, “Nærøfjorden from Bakkanosi,”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C3%A6%C3%B8fjorden_from_Bakkanosi.jpg>; mcxurxo, “Nærøfjorden mot Gudvangen,”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C3%A6%C3%B8fjorden_mot_Gudvangen.jpg> (Accessed June 23, 2021).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국 ‘핑야오 고대도시(平遙古城)’의 경우도 등재 1년 후인 1998년 이곳을 찾은 관광객 숫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하였고, 2000년 핑야오 고대도시가 위치

153) 다만, 현재 이 지역은 ‘오버투어리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내로이 피오르드’의 관광거점마을이라 할 수 있는 ‘에울란(Aurlands)’의 경우 거주인구가 약 2,000명인데 비해 한 해 이 지역 방문객이 백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RICS, “World Heritage Sites: overtourism,” May 24, 2019, <https://www.isurv.com/info/390/features/12009/world_heritage_sites_overtourism> (Accessed May 28, 2021).

한 ‘핑야오 현(平遙縣)’의 한 해 수입이 3배가량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¹⁵⁴⁾

이러한 관광객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해당 관광지의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로 이어지게 된다. 즉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유산이 소재한 지역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다(〈표 III-5〉 참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는 것은 등재유산의 입장 수입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관련 일자리가 증가하고 호텔이나 레스토랑, 기념품점 등과 같은 지역상권도 보다 활성화되기 때문이다.¹⁵⁵⁾

〈표 III -5〉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경제적 이익 효과

재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관광객들의 환전으로부터 이익 • 외국 관광객들의 여행세(부가 가치세, 숙박세, 관광세 등) • 외국 관광객들로부터의 입장료 수익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업 관련 일자리 창출(현지 가이드, 티켓 카운터, 관광안내센터 등) • 국민총생산(GNP) 증가
지역발전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중심으로 경제적 기지 다양화(인근 지역들의 발전) • 지역 관광업 관련 인프라 구축(교통 등) • 세계유산 인근 마을의 상업 활성화(호텔, 레스토랑, 기념품점 등) • 지역의 복지 증진, 교육 및 기술 습득 기회 제공 • ‘로컬 소싱(local sourcing)’ 촉진

출처: Josephine Caust and Marilena Vecco, “Is UNESCO World Heritage Recognition a Blessing or Burden? Evidence from Developing Asian Countries,” p. 7의 표를 저자 재작성.

154) “UNESCO heritage status a matter of pride and concern in China,” *The Strait Times*, July 26, 2016, <<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unesco-heritage-status-a-matter-of-pride-and-concern-in-china>> (Accessed May 28, 2021).

155) Josephine Caust and Marilena Vecco, “Is UNESCO World Heritage Recognition a Blessing or Burden? Evidence from Developing Asian Countries,”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vol. 27 (2017), p. 3.

캄보디아 앙코르 사원군(Angkor)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어떻게 해당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⁵⁶⁾ 1992년에 등재된 앙코르 사원군은 등재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방문객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2010년 115만 명 수준의 외국 방문객은 2014년에 23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¹⁵⁷⁾

그리고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방문객 입장권을 구입해야 했고, 특히 단체 관광객의 경우는 캄보디아 관광청이 공식 인정한 현지 관광 가이드를 통해서만 유적지 출입이 가능했기에 관광 가이드 고용 효과가 창출되기도 했다. 더욱이 앙코르 사원군의 거점 도시라 할 수 있는 ‘씨엠립(Siem Reap)’에는 밤낮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머무르게 되면서 호텔과 레스토랑, 기념품점 역시 부가적으로 호황을 누리게 되는 등 지역 상공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림 Ⅲ-5〉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전경



출처: Bjørn Christian Tørrissen, “Angkor Wat,”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ngkor_Wat.jpg> (Accessed June 23, 2021); Jakub Halun, “Angkor Wat Gateway,”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0171128_Angkor_Wat_5765_DxO.jpg> (Accessed June 23, 2021).

156)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의 경제적 이익 효과 창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음.
Ibid., p. 4.

157) *Ibid.*

요컨대 현재 일괄적인 자료의 부재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등재가 전 지구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광객 증가와 경제발전 효과를 창출하는지는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의 연구들과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후 관광객 증가와 함께 경제적 이득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하나의 문화재나 자연경관 등이 유네스코 유산 목록에 등재될 경우 유산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유네스코 등재가 가지는 경제적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회적 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등재로 인해 자국 문화와 자연경관에 대한 자부심이 고취될 뿐만 아니라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특히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문화와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유산들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생태학적으로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지속적인 보존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전쟁·내전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폭력행위나 인간들의 무분별한 경제활동, 국가적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소실 위험이 큰 유산이라면 더욱더 보존과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유산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갖춰져야만 한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이러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해당 유산에 대한 국민적 이목과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등재 신청 과정에서부터 등재 성공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와 학자들이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해당 유산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보호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그 결과 일반 대중들 역시 해당 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보호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¹⁵⁸⁾ 특히 소실 위험이 큰 유·무형 유산이나 자연경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실제 행동으로도 옮겨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갈라파고스 제도(Galápagos Islands)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는 그러한 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에콰도르령이며 남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갈라파고스 제도는 1978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되었고, 2001년에 등재 확장된 곳이다.¹⁵⁹⁾

〈그림 Ⅲ-6〉 갈라파고스 전경



출처: Michaël Lejeune, “Galapagos Islands,”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alapagos.jpg>> (Accessed June 22, 2021); “Galapagos Islands,” *Pixabay*, <<https://pixabay.com/ko/photos/%eb%a0%88%ec%98%a8-%eb%8f%84%eb%af%b8%eb%8f%84-%ea%b0%88%eb%9d%bc%ed%8c%8c%ea%b3%a0%ec%8a%a4-%ea%b2%b0%ec%84%9d-1630058/>> (Accessed June 22, 2021).

158) Bruno S. Frey and Lasse Steiner, “World Heritage List: Does It Make Sens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17, no. 5 (2011), p. 558.

159) UNESCO, “Galápagos Islands,” <<https://whc.unesco.org/en/list/1/>> (Accessed May 28, 2021).

갈라파고스 제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후 이곳이 간직하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이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 에콰도르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결과 이 지역의 섬과 인근의 해양 생태계, 그리고 이곳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이 에콰도르 국민들 사이에서 고조되었다.¹⁶⁰⁾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에콰도르의 각 지방들은 등재 이전부터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 인근에서 급속히 증가하던 ‘샤크피닝(shark finning)’ 행위를 근절하고 이 지역 상어를 보호하기 위한 ‘상어의 해(Year of Shark)’를 선포하는 한편 에콰도르 주민들 역시 해마다 상어 보호를 위해 진행되는 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¹⁶¹⁾

아울러 유네스코 등재는 국가나 해당 지역 정부, 정치인들까지도 등재유산의 특별한 가치 및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해당 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정부는 정치적 목적이나 국위 선양, 유네스코와의 협약 이행 등을 이유로 등재 이후 적극적으로 등재유산의 지속적 보존을 위한 노력을 착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¹⁶²⁾

보다 지속적인 유산의 보존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거나 법령을 제정하는 행위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예로써 에콰도르 정부 역시 갈라파고스 제도의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지금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이 지역으로의 이주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 체제 도입, 외래 유입종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제도 마련, 제도 인근의 해양 보호 대상구역 확대, 해당 지역에

160) UNESCO, “Case study: Galapagos,” <<https://whc.unesco.org/en/activities/615/>> (Accessed May 28, 2021).

161) ‘샤크피닝’이란 상어 지느러미를 얻기 위해 상어 포획 후 지느러미만 자른 다음 산 채로 몸통만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Ibid.*

162) Bruno S. Frey and Lasse Steiner, “World Heritage List: Does It Make Sense?” p. 559.

서의 경제적 활동 및 재산권 제한,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적 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갈라파고스 제도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¹⁶³⁾

라. 유네스코 등재로 인한 문제점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유산 등재가 문화·세계유산이 위치한 지역에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가지고 있던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등재 목록에 오른 이후 관광업이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되면서 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진정성이 약화되거나 자연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후난성의 ‘우링위안 자연경관 및 역사지구(武陵源風景名勝區)’의 경우 19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6년 동안 이곳을 중심으로 400여 개의 호텔과 레스토랑, 그리고 수백여 개의 기념품점 등이 들어서 오히려 이곳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¹⁶⁴⁾

또한 남태평양에 위치한 갈라파고스 제도의 경우 역시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독특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함께 그곳에 서식하는 희귀종 및 멸종위기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¹⁶⁵⁾ 1년 내내

163) *Ibid.*

164) “UNESCO heritage status a matter of pride and concern in China,” *The Nation Thailand*, July 27, 2016, <<https://www.nationthailand.com/international/30291502>> (Accessed May 28, 2021).

165) UNESCO, “Case study: Galapagos,” <<https://whc.unesco.org/en/activities/615/>> (Accessed May 28, 2021).

외국 관광객들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방문하면서 지역 인구의 증가, 섬 토양의 질적 저하, 외래 유입종의 증가 등을 야기하였고, 그 결과 토착 동식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갈라파고스 제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버린 상당한 양의 쓰레기 역시 이 지역 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둘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가치 훼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유산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이후 여행객들의 숫자 역시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해당 지역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지역사회 분열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기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선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관광지화(touristify)’라는 단어와 지가 상승으로 인해 원주민이 내쫓김 당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합성어로 관광객들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해 그 지역이 지나치게 관광지화 되고, 그 결과 원래 그곳에 살던 지역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¹⁶⁶⁾

한편, 관광객들의 과도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세계유산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관광객들은 세계유산을 방문할 때 해당 유산 자체에서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유산의 관문 도시라든지 인접한 마을 등을 거점 삼아 시간을 보낸

166) 윤혜진,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과 정책 대응방안 연구: 북촌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32권 5호 (2020), pp. 55~56.

다. 그리고 그곳에서 관광객들은 마을의 아름다운 광장이나 거리, 시장, 혹은 십터 등과 같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보다 깊숙이 들어 오게 되고,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¹⁶⁷⁾

관광객들이 주민들의 삶의 공간에 유입되면서 교통난 및 소음공해의 발생, 환경오염 악화, 광장이나 시장 등 주요 시설의 혼잡도 증가, 지가 상승, 물가 상승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결과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유네스코 유산목록에 등재된 후 관광지로서의 유명세를 얻게 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져다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우 지역의 원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관광과 외부 여행객들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투어리즘포비아(tourism-phobia)’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¹⁶⁸⁾ 특히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발전되기도 하는데, 외부 관광객들이 지역 경제 발전과 상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인 관광 확대를 주장하는 쪽과 주민 생활 향상을 이유로 관광산업 육성을 반대하는 쪽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독일 베를린이나 이탈리아 베니스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도시들에서도 과도한 관광객들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⁹⁾

167) 손신욱·박상훈·이나현,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경영연구』, 제22권 4호 (2018), p. 335.

168) 위의 글, p. 337.

169) 위의 글, p. 340, p. 342.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내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명세와 함께 해당 유적지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방문객의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부 지역과 국가에서는 해당 등재 유적지의 입장료를 과하게 인상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내 관광객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중국의 사례는 이러한 악순환을 잘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적지나 자연경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대부분 관광객들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고, 곧이어 해당 등재 유적지, 자연경관의 입장료 인상이 뒤따랐다.¹⁷⁰⁾ 일례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중국 ‘쑤저우의 전통 정원들(苏州古典园林)’의 경우 등재 직전인 1996년에는 98위안이던 통합입장권 가격이 2004년에는 376위안으로 인상되어 8년 동안 3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¹⁷¹⁾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입장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19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난성의 ‘장자제 국가산림공원(張家界國家森林公園)’의 경우 2010년대 중반 가장 저렴했던 통합입장권이 245위안(3일간 유효)으로 비슷한 시기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Yellow Stone National Park)’의 입장료 12달러(약 74위안, 7일간 유효)와 비교해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¹⁷²⁾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네스코 등재 신청 과정에서 사용했던 막대한 재정적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등재 이후 해당 유적지나 자연경관의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170) “UNESCO heritage status a matter of pride and concern in China,” *The Nation Thailand*, July 27, 2016, <<https://www.nationthailand.com/international/30291502>> (Accessed May 28, 2021).

171) *Ibid.*

172) *Ibid.*

문제는 인상된 입장료가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중국의 많은 문화유산 및 자연경관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지나친 입장권 인상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자국 유네스코 등재 유산들을 둘러볼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것 역시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DMZ의 남북한 공동등재가 성사될 경우, 다른 유산들과 마찬가지로 위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DMZ는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재가 될 경우 국제적인 관심과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인근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가 흔치 않고 규모도 작아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남북한이 공동으로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미리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공동등재의 현황 및 의의

많은 국가들이 문화적 자긍심 고취, 소프트파워 강화, 국내 문화재 보호 인식 강화, 경제적 발전 등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목적으로 자국 내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를 유네스코 유산목록에 등재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혹은 무형문화유산

의 경우 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닌, 두 개 국가 이상에 걸쳐 존재하거나 국경을 넘어 전파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비슷한 유형의 세계유산이 두 개 국가 이상의 국가군에 걸쳐 널리 자리 잡고 있는 경우라든지 동일한 무형문화유산이 두 개 이상 국가들에 의해 공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공유된 유산들에 대해 한 국가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 유산을 공유하는 또 다른 국가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는 이러한 공유된 유산들을 ‘월경유산(transboundary properties)’¹⁷³⁾ 등으로 정의하며 공동등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하는 데 있어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국가 및 단체들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협력을 진행한다. 각 주체마다 해당 유산의 현황 및 보존 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등재 신청서 작성 전부터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해당 유산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 등을 조율해야 한다. 단독등재의 경우와 비교하면 등재 신청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공동등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공동등재 과정에서의 유네스코의 역할은 단독등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동등재 신청서가 제출된 후의 과정은 단독신청서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복수의 국가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신청국가의 유산 현황을 조사해야 하므로 유네스코의 요청을 받은 외부자문기관의 전문가들은 단독신청 때와는 달리 모든 신청국가들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173) UNESCO,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p. 38~39,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Accessed June 18, 2021).

가.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 현황

2021년 7월 기준 총 39개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공동등재되어 있다. 이는 현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총 1,121개의 세계유산 중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동등재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숫자는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다. 공동등재유산 중 상당수는 2개 국가의 공동등재이며, 이외에도 6개국이나 10개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등재국으로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표 III-6〉 참조).

〈표 III-6〉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목록

공동등재 유산명	공동등재국가	등재시기 (최초)
카르파티아 및 유럽의 기타 지역에 생육하는 고대 및 원시 너도밤나무 숲 Ancient and Primeval Beech Forests of the Carpathians and Other Regions of Europe	1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2007
오히리드 지역의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Ohrid Region	2개국: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1979
카팍냐, 안데스의 도로 체계 Qhapaq Ñan, Andean Road System	6개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2014
과라니족 예수회 선교단 시설 Jesuit Missions of the Guaranis	2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1983
알프스 주변의 선사시대 호상 가옥 Prehistoric Pile dwellings around the Alps	6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2011
페르퇴/노이지들러 호 문화 경관 Fertő/Neusiedlersee Cultural Landscape	2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2001
스트루베 측지 아크 Struve Geodetic Arc	10개국: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몰도바, 러시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2005
비아워비에자 삼림지대 Białowieża Forest	2개국: 벨라루스, 폴란드	1979
벨기에와 프랑스의 종루 Belfries of Belgium and France	2개국: 벨기에, 프랑스	1999

공동등재 유산명	공동등재국가	등재시기 (최초)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 모더니즘 운동에 관한 탁월한 기여 The Architectural Work of Le Corbusier, an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Modern Movement	7개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인도, 일본, 아르헨티나	2016
더블유 아를리 펜자리 복합유산 W-Arly-Pendjari Complex	3개국: 베닌,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1996
스테치 중세 돌무덤 Stećci Medieval Tombstone Graveyards	4개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2016
상가 트리내셔널 Sangha Trinational	3개국: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2012
캐나다·알래스카 국경지대의 산악 공원군 Kluane / Wrangell-St Elias / Glacier Bay / Tatshenshini-Alsek	2개국: 캐나다, 미국	1979
워터턴 글레이셔 국제 평화 공원 Waterton Glacier international Peace National Park	2개국: 캐나다, 미국	1995
실크로드: 칭안-톈산 회랑 도로망 Silk Roads: the Routes Network of Chang'an-Tianshan Corridor	3개국: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2014
탈라망카 산맥-라 아미스타드 보호 지역/라 아미스타드 국립공원 Talamanca Range-La Amistad Reserves / La Amistad National Park	2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1983
남바산 엄정 자연보존지역 Mount Nimba Strict Nature Reserve	2개국: 코트디부아르, 기니	1981
16-17세기 베네치아 방어시설 Venetian Works of Defence betwee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3개국: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몬테네그로	2017
에르츠 산맥/크루슈네호리 산맥 광업 지역 Erzgebirge/Krušnohoří Mining Region	2개국: 체코, 독일	2019
바덴해(海) Wadden Sea	3개국: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2009
하이 코스트/크바르켄 군도 High Coast / Kvarken Archipelago	2개국: 핀란드, 스웨덴	2000
피레네 산맥 - 몽 페르뒤 산 Pyrénées - Mont Perdu	2개국: 프랑스, 스페인	1997
세네감비아 환상 열석군 Stone Circles of Senegambia	2개국: 감비아, 세네갈	2006

공동등재 유산명	공동등재국가	등재시기 (최초)
무스카우어 공원 / 무자코프스키 공원 Muskauer Park / Park Mużakowski	2개국: 독일, 폴란드	2004
로마제국 국경 Frontiers of the Roman Empire	2개국: 독일, 영국	1987
로마 역사 지구 – 바티칸 시국의 유산들과 산 파올로 푸오리 레 무라 대성전 Historic Centre of Rome, the Properties of the Holy See in that City Enjoying Extraterritorial Rights and San Paolo Fuori le Mura	2개국: 바티칸, 이탈리아	1980
아그텔레크 카르스트·슬로바키아 카르스트 동굴군 Caves of Aggtelek and Slovak Karst	2개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1995
몬테 산 조르조산 Monte San Giorgio	2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2003
알불라·베르니나 지역의 래티세 철로 Rhaetian Railway in the Albula / Bernina Landscapes	2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2008
텐산산맥 서부 지역 Western Tien-Shan	3개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2016
말로티-드라켄즈버그공원 Maloti-Drakensberg Park	2개국: 레소토, 남아프리카공화국	2000
쿠로니아 모래톱 Curonian Spit	2개국: 리투아니아, 러시아	2000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카르파티아 지방의 나무 세르크바스 Wooden Tserkvas of the Carpathian Region in Poland and Ukraine	2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2013
코아 계곡의 선사시대 암각화 Prehistoric Rock Art Sites in the Côa Valley and Siega Verde	2개국: 포르투갈, 스페인	1998
우브스 누르 분지 Uvs Nuur Basin	2개국: 러시아, 몽골	2003
다구르, 다우르스키 경관 Landscapes of Dauria	2개국: 러시아, 몽골	2017
알마덴과 이드리야 수은광산 Heritage of Mercury, Almadén and Idrija	2개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2012
모시 오아 툰야 폭포(빅토리아 폭포) Mosi-oa-Tunya/Victoria Falls	2개국: 잠비아, 짐바브웨	1989

출처: UNESCO, “World Heritage List,” <<https://whc.unesco.org/en/list/>> (Accessed July 25, 2021)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공동등재된 세계유산의 상당수가 서유럽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소수의 공동 등재 유산들이 아프리카 및 남미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 모더니즘 운동에 관한 탁월한 기여(The Architectural Work of Le Corbusier, an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Modern Movement)”와 같이 특정 지역을 벗어나 많은 국가들이 공동으로 등재에 참여한 경우(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인도, 일본, 아르헨티나)도 존재하기도 한다.

〈그림 Ⅲ-7〉 매사냥



출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매사냥’ 청도서 본다…12일 시연회,” 『연합뉴스』, 2017.3.11., <<https://www.ynaco.kr/view/AKR20170311040900053>> (검색일: 2021.9.20.).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는 세계유산에 공동등재된 사례가 없지만 무형문화유산에서는 일부 공동등재 사례가 존재한다. 그중 한국의 매사냥 문화는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유산(Falconry, a living human heritage)”이라는 명칭으로 UAE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독일 등 17개 국가와 함께 공동등재되어 있고, “줄다리기(Tugging Rituals and Games)” 역시 2015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과 공동으로 유산 등재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씨름은 “한국의 전통레슬링, 씨름(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이라는 명칭으로 북한과 공동등재된 상황이다. 씨름의 경우 남북한 간 최초이자 현재로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유산목록에 공동등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다.¹⁷⁴⁾

17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 <<https://heritage.unesco.or.kr/씨름-한국의-전통-레슬링>> (검색일: 2021.7.25.).

나. 공동등재의 의의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는 정치적·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유네스코 공동등재는 등재 참여 국가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고 협력의 당위성을 강화시킴으로서 관계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둘 이상의 국가들이 유산을 공동등재한다는 것은 해당 유산이 하나의 국가가 아닌, 복수의 국가들 모두에게 중요한 ‘보편적’ 유산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해당 유산에 대한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책임을 공동등재에 참여한 국가들이 함께 균담(均擔)한다는 것을 뜻한다.¹⁷⁵⁾ 또한 공동등재한 유산에 대해 복수의 신청국가 구성원들 역시 해당 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친밀한 관계(rapport)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도 하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산을 등재하게 되면 남북한 사회구성원들 역시 특정 유산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관계 역시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참여 국가들 간의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가 구축된다. 참여국들의 입장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우선 등재 신청에 참가한 국가들은 각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등재 신청 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공동등재 추진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방향 및 등재 신청 시 공식명칭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바, 참가국들 간 몇 차례의 정부 간 회의 등이

175) 김동현,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와 다국적유산의 과제,” 『무형유산』, 제3호 (2017), p. 206.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등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참여국들이 각각 자국이 보유한 등재 신청 유산에 대한 설명과 중요성 등을 균등한 분량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공유하기 때문에 등재 신청을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논의들이 전제되어야 한다.¹⁷⁶⁾

즉 공유된 유산과 관련해 각 국가들 내의 보존 수준이나 각국의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참가 국가들 간의 문화적 교류에 기여함으로써 결국 높은 수준에서의 문화적 협력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10년 최초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매사냥의 등재 과정을 살펴보면, UAE의 주도 아래 수차례의 정부 간 회의 및 워크숍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 등재 신청 준비 기간이었던 2009년 한 해 동안 UAE는 공동등재 제안에 응했던 아랍 5개 국가와의 역량강화 워크숍(6월), 국제 매사냥 축제에서의 전승국가 대표들 간의 교류회(7월), 공동등재 참여 12개국과의 워크숍(8월), 정부 간 등재추진회의(12월) 등과 같은 네 차례에 걸친 회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다.¹⁷⁷⁾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참가국들 간에는 각 국가 내에서 전승되고 있는 매사냥 문화의 현황과 보호수준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될 뿐만 아니라 등재를 위한 서류작성 방향, 공식명칭 지정 등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등재 참여 국가들 간에는 매사냥이라는 문화를 매개로 한 협력 체제가 구축되기도 했다.

매사냥의 사례는 남북 공동등재가 추진될 경우 남북한 간에도 실질적인 문화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공동등재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남북한 간 회의 및 워크숍 개최, 상호 실사 방문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176) 위의 글.

177) 황경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매사냥’ 공동등재의 특성과 의의,” pp. 212~213.

과정에서도 다양한 합의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각각 등재 추진 유산의 현황 및 보호조치 등과 같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향후 유산의 보호 및 보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거치게 됨으로써 협력의 제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유네스코 공동등재 사례연구

가. 공동등재 성공 사례: ‘매사냥’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공동등재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은 39개이며(〈표 III-6〉 참조), 무형문화유산과 기록유산까지 합쳐지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은 UAE 등과 ‘매사냥’,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와 ‘줄다리기’, 그리고 북한과 ‘씨름’ 등을 공동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상태이다. 공동등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등재 신청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협력이 중요한데 이러한 성공 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매사냥’ 공동등재를 들 수 있다.

초창기 UAE가 주도가 되어 12개 국가들이 참여했던 매사냥은 2010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공동등재되었으며, 이후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매사냥 확대 등재 추진을 통해 2012년 확대 등재되었다.¹⁷⁸⁾ 따라서 현재 매사냥 인류무형유산에는 UAE를 비롯해 한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체코 등 18개 국가가 공동등재국으로 올라 있다.¹⁷⁹⁾

178) 위의 글, pp. 212~213.

17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매사냥-살아있는-인류-유산/>> (검색일: 2021.7.25.).

〈표 III-7〉 ‘매사냥’ 공동등재 과정

일시	전개과정
2006.3.	• 아부다비 문화유산부 주최, 매사냥 등재 신청 준비위원회 구성
2007.3.	• 무형문화유산 보호목록 작성 위한 아랍국가 간 지역회의 개최
2007.9.	• 매사냥 공동등재를 위한 당사국 정부 간 위원회 결의안 채택
2008.6.	• 아부다비 문화유산부-아부다비 환경청 주최의 매사냥 워크숍 개최
2008.11. ~ 2009.	• UAE 주도로 공동등재 참여국 모집 활동 시작 - 공동등재 관심국에 외교채널 통한 초대장 발송 - 매사냥이 전승되는 협약 당사국 방문
2009.6.	• 공동등재 참여를 희망한 아랍 5개국(UAE, 모로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009.7.	• UAE, 영국에서 개최된 매사냥 국제축제 참여하여 전승국가 대표들과의 교류 및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추진 사실 알림 - UAE,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통해 공동등재 참여 서한 발송 - 한국의 공동등재 참여 시작 • 이외에도 UAE 주도로 프랑스, 벨기에 등 10개 국가와 매사냥 공동등재 협의 진행
2009.8.	• 공동등재 참여국 12개국 워크숍 및 등재 신청서 제출
2009.11.	• 유네스코에서 UAE에 등재 신청 보완 요청
2009.12.	• 아부다비에서 매사냥 등재 추진 회의 개최 - 공동등재 신청서 수정 진행
2010.11.	• 유네스코 제4차 정부 간 위원회에서 매사냥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2011.1.	• 헝가리, 오스트리아 매사냥 확대등재 요청
2012.2.	• 유네스코, 공동등재 확대 추진 국가들에 매사냥 확대 등재를 위한 추가 정보 작성 요청
2012.4.	• 유네스코 제6차 정부 간 위원회에서 매사냥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확대 등재

출처: 황경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매사냥’ 공동등재의 특성과 의의,” pp. 212~213.

〈표 III-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국가들이 공동등재로 신청한 만큼 신청 과정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매사냥 공동등재의 실질적 주도 국가였던 UAE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 우선 UAE는 매사냥이 공동등재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UAE에 있어 매사냥은 국가 정체성의 상징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매사냥’이라는 문화에 대한 국가적 자부심이 높다.¹⁸⁰⁾

180) 황경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매사냥’ 공동등재의 특성과 의의,” p. 212.

하지만 UAE는 매사냥을 자국만의 문화유산이라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매사냥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먼저 등재 준비를 제안했다. 매사냥이라는 문화가 자국만의 문화라는 인식을 버리고 다른 전승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신청을 추진한 것이다.

이와 함께 UAE는 공동등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참가 요청에 응한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하였다. 무엇보다도 UAE는 모로코, 카타르 등 아랍 5개국에 먼저 공동등재 요청을 하였고, 관련 기관 대표단들의 전승국가 방문, 외교채널을 통한 서한 발송 등을 통해서도 다른 전승국가들의 참여 의향을 문의하기도 했다(〈표 III-7〉 참조).

그 결과 UAE를 중심으로 12개국이 공동등재 신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전승국가들이 단독으로 등재 신청했을 경우 벌어졌을 과열 경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및 보완 과정에서도 UAE는 여러 차례의 정부 간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며 참여 국가들의 협조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와 장을 마련하였고, 다른 참가국들 역시 UAE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등재 성공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매사냥’ 공동등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몇 가지 중요 요인이 꼽히고 있다. 첫째,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 현재 매사냥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공동 참여한 국가는 총 18개 국가로, 저마다의 역사와 환경 속에서 매사냥이라는 무형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왔다.¹⁸¹⁾

181) 현재 매사냥 공동등재 국가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UAE,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모로코, 몽골, 파키스탄, 포르투갈, 카타르, 시리아, 체코.

자국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유산목록에 등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등재 국가가 보편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국가의 문화적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²⁾ 때문에 비슷한 성질과 형태의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민족문화의 자긍심 고취, 문화의 세계화 등을 위해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단독으로 유산을 등재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 역시 나타날 수 있다.¹⁸³⁾ 하나의 공유된 문화유산을 놓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공동등재의 가능성보다는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공동의 유산에 대한 공동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유산에 대해 국가들 간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 매사냥의 경우는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 일치가 공동등재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공동등재 주도국이었던 UAE는 매사냥이 자국 문화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상황에서 단독등재보다는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몽골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역시 매사냥 문화를 자국만의 고유한 문화임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가 공유하는 문화적 자원임을 인정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공유된 무형문화유산이 어느 특정한 국가의 독점적 문화자산이 아닌,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공동의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고 공동등재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로 공동등재를 위한 충분한 국내외적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UAE의 경우를 보면 매사냥 공동등재 추진 전인 2006

182) 박선희, “문화다양성의 역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국가주의,” p. 88.

183) 안미정, “문화의 세계화와 민족주의 담론: 제주해녀(잠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제117호 (2020), pp. 167~200.

년부터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부의장국, 그리고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다른 국가들과의 의사소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¹⁸⁴⁾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공동등재 신청을 할 경우 참여 국가들 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해당 유산에 대한 각 국가들의 정책이나 보존 현황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은 국가들 간의 공유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등재 신청 경험이 부족한 국가들만이 모여 있을 경우 이러한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협력, 정보의 공유 등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공동등재 준비 과정 역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UAE의 주도 아래 매사냥 문화 전승국가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워크숍, 국제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동등재 신청국 간, 해당 국가의 유관기관 간, 각 지역 및 민간 단체 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즉 공동참여 국가들이 각 개별 국가들의 신청서 작성 과정은 물론이고 공동신청서 작성 및 보완 과정에서도 매사냥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등재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¹⁸⁵⁾

나. 공동등재 실패 사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2016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일본의 조직적 전쟁범죄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8개국 14개 단체 및 기관으로 이루어진 ‘국제연대위원회’와 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Imperial War

184) 황경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매사냥’ 공동등재의 특성과 의의,” p. 214.

185) 위의 글, p. 215.

Museum London)의 주도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Voices of the Comfort Women)’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공동등재 신청이 접수되었다 (<표 III-8> 참조). 해당 기록물은 일본군 ‘위안부’ 운영 기록, 피해자 조사 자료, 피해자 치료 기록 등을 포함한 2,744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 비극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국가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등재가 신청된 것이었다.¹⁸⁶⁾

한국, 중국, 네덜란드 등 8개국 시민단체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IAC)는 2017년 10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공동등재 신청에 대해 등재 보류권고 결정을 내렸다.¹⁸⁷⁾ 이후 국제연대위원회는 공동등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2021년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위원회에서는 등재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가 사실상 힘들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⁸⁸⁾

즉 기존에는 회원국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할 경우 해당 유산의 등재 여부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회원국 정부의 발언권이 없었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등재 신청된 기록유산에 대해 회원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해당 유산은 등재 목록에 채택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다.¹⁸⁹⁾ 향후 국제연대위원회에서 보완 과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등재를 신청한다고

186)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 <<http://www.voicecw.org/page10.html>> (검색일: 2021.8.15.).

187)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日 저지에 보류,” 『이데일리』, 2017.10.3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46566616098496>> (검색일: 2021.8.15.).

188) “日, 유네스코에 반대 입김…‘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어려워져,” 『동아일보』, 2021.4.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02/106223107/1>> (검색일: 2021.8.15.).

189) 위의 글.

하더라도 일본정부의 반대가 존재하는 한 세계기록유산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다.

〈표 III-8〉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공동등재 과정

일시	전개과정
2015.5.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결성
2015.12.	• 제2차 국제연대위원회 개최(서울)
2016.3.	• 제3차 국제연대위원회 개최(서울)
2016.5.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신청서 접수 완료
2016.10.	• 제4차 국제연대위원회 개최(상하이)
2016.11.	• 제5차 국제연대위원회 개최(서울) - 국제학술대회 개최: 위안부의 목소리, 그 공명과 확산
2016.12.	• 제6차 국제연대위원회 개최(타이베이) • 제7차 국제연대위원회 개최(도쿄)
2017.4.	• 유네스코 RSC 평가 발표 -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
2017.7.	• 제8차 국제연대위원회 개최(난징)
2017.10.	• 유네스코 IAC 심사결과 발표 - 대회를 전제로 한 ‘보류’ • 등재 신청서 심사 및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위한 IAC 회의 참가 • 제9차 국제연대위원회 개최(파리) • 제10차 / 11차 국제연대위원회 개최(서울)
2018.4. ~ 2018.12.	• 제12차 ~ 제15차 국제연대위원회 개최(서울 및 도쿄)
2018.5.	•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와 일본정부 중재를 위한 중재자로 Anthea Seles 임명
2019.5 ~ 2019.6	• Dr. Anthea Seles 사임 및 두 번째 중재자 Ingrid Parents 임명
2019.12.	• 제16차 국제연대위원회 및 2020년 전략대회 개최(서울)
2021.4.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제도 개정 - 특정 신청대상 유산에 대한 회원국의 반대가 있을시 채택 불가

출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 〈<http://www.voicecw.org/page10.html>〉 (검색일: 2021.8.15.); “日, 유네스코에 반대 입김…‘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어려워져.” 『동아일보』, 2021.4.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02/106223107/1>〉 (검색일: 2021.8.15.) 등의 자료를 저자가 정리.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공동등재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공동등재를 추진한 주체는 8개 국가의 14개 시민단체 및 기관들로 구성된 국제연대위원회와 영국의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이다(〈표 III-9〉 참조). 국제연대위원회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이나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의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본정부와의 이해 조정을 위한 논의 등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에 의해 합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일본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하나의 기록물을 두고 피해 국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연대위원회와 일본정부 간의 입장차가 존재했던 것인데, 국제연대위원회 결성 이후 일본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에는 성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제연대위원회의 공동등재 신청 및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심사 과정에서 등재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은 자국 내 단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군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단독으로 등재 신청함으로써 국제연대위원회의 공동등재 신청에 맞불을 놓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¹⁹⁰⁾

한편 유네스코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중재자를 임명하였으나 이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임명된 첫 번째 중재자

190) “위안부 연대위, 유네스코에 기록유산 대화 중재 촉구,” 『연합뉴스』, 2018.12.7.,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7069500005?input=1195m>> (검색일: 2021.8.15.).

(Anthea Seles)는 별다른 중재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임명 1년 만에 사임했고, 2019년에 임명된 두 번째 중재자(Ingrid Parents) 역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임명 1년 반이 지난 2020년 12월이 되어서야 국제연대위원회에 연락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¹⁹¹⁾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둘러싸고 양측 간의 이견을 줄이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라는 의도로 ‘대화를 전제로 한 보류’ 결정을 내렸던 유네스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중재자들을 임명했지만 양자 간의 논의의 무대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만남의 기회가 미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본정부는 유네스코에 대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로비 활동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쳤고, 양자 간의 좁혀지지 않은 입장 차이만 부각되었다.¹⁹²⁾

〈표 III-9〉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공동등재 신청단체

국가	단체 및 기관명	단체 수
대한민국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정의기억연대	6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나눔의집	
	민족과여성 역사관, 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	
	희움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대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중국	상하이사범대학 중국 ‘위안부’ 문제연구소 (Research Center for Chinese ‘Comfort Women’ at Shanghai Normal University)	2
	북경 방원 법률 사무소 (Beijing Fangyuan Law Firm)	

191) “‘위안부’ 기록물의 기록유산 등재, 어디까지 왔나?” 『유네스코뉴스』, 2021.5.3.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79/1263/> (검색일: 2021.8.15.).

192) Heisoo Shin, “Voices of the ‘Comfort Women: The Power Politics Surrounding the UNESCO Documentary Heritage,’” *The Asia-Pacific Journal*, vol. 19, no. 5 (2021), pp. 10~13.

국가	단체 및 기관명	단체 수
타이완	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 (Taipei Women's Rescue Foundation)	1
일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일본위원회 (The Japanese Committee for Joint Nomination to the UNESCO MoW Register)	1
필리핀	릴라 필리피나 로라스 센터 (Lila Pilipina Lolas Center Inc.)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위안부' 네트워크 연대 (Solidarity Network for Indonesian 'Comfort Women')	1
동티모르	HAK협회 (HAK Association)	1
네덜란드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재단 (The 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	1
영국	런던 임페리얼 전쟁박물관 (Imperial War Museum London)	1

출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 <<http://www.voicecw.org/page10.html>> (검색일: 2021.8.15.)

또한 공동등재 성공을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우선 국제연대위원회에 참여한 각 국가 단체 및 기관과 해당 정부 사이에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표 III-9>에서 보이듯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공동등재 추진 과정에서 국제연대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 간의 교류와 협력은 정기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례는 단체와 정부 간 협력이 매끄럽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국제연대위원회에 가장 많이 참여한 단체의 국적은 한국인데, 이들 단체에 대한 한국정부의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016년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이를 집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예산지원이 끊임에 따라 한국

단체들의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¹⁹³⁾ 더욱이 한국정부는 초기에는 홍보와 자료 수집 등에 대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과의 합의가 체결된 이후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추진을 ‘민간단체의 일’로 규정하며 적절한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도되었다.¹⁹⁴⁾

한편, 국제연대위원회에는 일본의 시민단체(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일본위원회)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추진했던 일본정부가 일본의 시민단체에 협력을 제공했을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결국 공동등재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자료 수집 등과도 관련해서 정부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공동등재 추진에 참여한 일부 단체들과 정부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부 간 공조 및 협력 역시 부족했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저지를 위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반대 노력을 전개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재정분담금을 무기로 한 경제적 압박과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 개정을 위한 정치적 압력, 그리고 로비 활동 등을 통한 외교적 수단 등 등재 저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였다.¹⁹⁵⁾

193) “강은희 여가부 장관 “위안부 기록물 등재 민간이 진행...” 예산 지원 더 필요하지 않다.” 『경향신문』, 2016.6.23.,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1606231250011>> (검색일: 2021.8.15.).

194)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예산 편성해 놓고도 안 쓴 정부,” 『경향신문』, 2016.6.23.,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1606230600025>> (검색일: 2021.8.15.).

195) Heisoo Shin, “Voices of the ‘Comfort Women’: The Power Politics Surrounding the UNESCO Documentary Heritage,” pp. 10~13.

현재 일본은 유네스코 전체 회원국 분담금의 약 11%를 차지하며 중국(1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정분담금을 납부하는 국가다.¹⁹⁶⁾ 특히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납부하던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한 상황에서 유네스코에 대한 일본의 재정적 기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분담금을 무기로 등재 저지를 위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¹⁹⁷⁾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유네스코 내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저지를 위한 제도적 개정 움직임에 나섰다. 2015년 중국이 등재 신청했던 난징 대학살 관련 기록물이 세계기록물에 등재되자 이에 격렬히 반대했던 일본은 이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특정 유산에 대해 회원국의 반대가 있을 경우 해당 유산의 등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정을 추진하였고, 2021년 개정에 성공하게 된다.¹⁹⁸⁾

결국 일본의 전방위적 등재 저지 움직임으로 인해 유네스코는 2017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해 ‘대화를 전제로 한 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2021년 등재 절차 개정을 통해 일본의 반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등재의 길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목록 등재 저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었을 때 한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정부들의 외교적 노력 등은 찾기 어렵다. 일본의 등재 저지 노력에 대해 개별 정부 차원에서의 비판성명 등은 찾아볼

196) UNESCO, “Status of Contributions,” <<http://www.unesco.org/new/en/member-states/mscontent/status-of-contributions/>> (Accessed August 15, 2021).

197)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日 저지에 보류,” 『이데일리』, 2017.10.3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46566616098496&mediaCodeNo=260>> (검색일: 2021.8.15.).

198) Heisoo Shin, “Voices of the ‘Comfort Women: The Power Politics Surrounding the UNESCO Documentary Heritage,’” p. 12; “日, 유네스코에 반대 입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어려워져,” 『동아일보』, 2021.4.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02/106223107/1>> (검색일: 2021.8.15.).

수 있으나,¹⁹⁹⁾ 일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이나 중국의 정부 간 공조 노력이 추진되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중국 역시 유네스코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 역시 적지 않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이들 두 국가는 물론 국제연대위원회에 참가한 단체들의 정부들이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응했다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 공동등재의 성패 요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매사냥은 최초 12개 국가가 등재에 성공하고, 이후 2개 국가를 포함한 확대 등재에 성공하면서 대표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8개 국가의 다양한 시민단체 및 기관들이 수년에 걸쳐 공동등재를 위한 활동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동등재에는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두 사례를 통한 공동등재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0〉 공동등재 성패요인

	매사냥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당사자 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간 / 정부-단체 간 지속적 협력 진행 주도국가(UAE)의 지원과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 간 협력 중심 정부 간 / 정부-단체 간 충분한 협력 부재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사냥 문화에 대한 공유의식 형성 해당 문화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인식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적/역사적 인식에 대한 합의 부재

출처: 저자 작성

199) 일례로 일본군 ‘위안부’ 기록에 대한 등재 보류 결과가 나온 후 2017년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강(陸慷)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이 ‘옳은 길’을 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pert slams UNESCO for giving in to Japan on ‘comfort women’ documents,” *Global Times*, November 1, 2017,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073129.shtml>> (Accessed August 15, 2021).

첫째, 등재 추진 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매사냥이 성공적으로 공동등재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등재에 참여한 국가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UAE를 중심으로 워크숍이나 회의 등이 꾸준히 진행되는 한편 당사국 정부간위원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참여 국가 정부 간 정보 공유, 지원서 작성 등과 관련한 협조가 활발히 전개되었다.²⁰⁰⁾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들은 매사냥 공동등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동시에 추진했다.

일례로 UAE는 아부다비 유산부가 주축이 되어 등재 신청위원회를 직접 구성·운영하였고, 국제 전문가들을 합류시켜 국가 차원에서 등재 신청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매사냥 문화 연구 촉진을 위한 유럽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시켰다.²⁰¹⁾ 한국 역시 UAE로부터 공동참여 제안을 받은 후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진행되기도 했다.²⁰²⁾

매사냥 문화는 많은 나라들에게 전승되고 있는 만큼 각 전승국가마다 서로 다른 보호 체계, 현황, 사냥 방법의 차이 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사냥 공동등재에 참여한 국가들은 정부간 워크숍과 회의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지속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공조 노력은 공동등재라는 결실로 이어진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경우를 보면 등재 추진 주체와 각국 정부들 사이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국제연대위원회에 가장 많은 단체가 참여한 한국의 경우

200) 황경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매사냥’ 공동등재의 특성과 의의,” p. 212.

201) 위의 글, pp. 212~214.

202) 위의 글, p. 212.

이들 단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조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부는 초기 홍보 등을 위한 외교적 조력은 제공했지만 이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민간단체의 일로 규정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유네스코를 대상으로 등재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의 체계적이고 전방위적 노력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한국이나 중국 등과 같은 국가들 간의 협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움직임이나 유네스코의 ‘보류’ 결정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개별적 비판 성명 등은 존재하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과 관련된 국가들이 공조를 통해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한 사례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다양한 수준에서의 협력의 부재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공동등재가 어려워진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공동등재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인식의 차이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해당 유산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 태도보다는 문화를 공유한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매사냥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처럼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민감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승하고 보존해온 매사냥이라는 문화는 각 국가들의 상징과도 같은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은 만큼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 알리기 위해 독자적으로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할 유인은 충분하다. 하지만 UAE를 비롯한 한국, 몽골, 시리아 등은 매사냥 문화를 자국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러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는 다국적 문화자산이라는 의식을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매사냥 전승 국가들 간의 분쟁 없이 공동등재가 추진될 수 있었다.

만약 한 국가라도 국가주의나 민족감정 등을 앞세워 매사냥 문화가 자국만의 문화라는 주장을 내세웠더라면, 혹은 다른 국가의 매사냥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공동등재는 추진 과정에서부터 많은 난관을 거쳤을 것이고 공동등재 성공 역시 담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감자튀김’을 둘러싼 벨기에와 프랑스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벨기에와 프랑스는 감자튀김이 자국에서 만들어진 요리문화임을 주장하며 상대 국가의 문화적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감자튀김을 놓고 벨기에는 지속적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단독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자튀김의 정통성 및 뿌리에 대한 상호 배타적 태도, 그리고 먹는 방법에 대한 이견들은 지금까지 공동등재를 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²⁰³⁾

반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과정에서 보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고, 그런 기회조차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동등재에 참여한 8개국 시민단체 및 기관, 그리고 영국의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중요성을 함께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 이해당사자인 일본정부와의 역사적, 정치적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한 국제연대 위원회와 일본정부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중재 움직임은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등재 추진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조직적인 등재 방해 움직임이 진행되었고, 공동등재는 현재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이다.

203) “Belgians unite in UNESCO bid to reclaim ‘French’ fries,” *France24*, March 12, 2014, <<https://www.france24.com/en/20141203-belgians-unite-unesco-bid-reclaim-french-fries-chips>> (Accessed August 16, 2021).

IV. 유네스코 등재 관련 남북 협력 사례



1. 북한 ‘고구려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례

가. 북한 고구려 고분군

북한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고구려 고분군은 고구려 후기에 만들어진 고구려의 정교한 건축공법과 함께 회화를 통해 고구려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고구려의 문화적 보편성과 독자성이 구현되며 중세 동아시아의 문화적 발전을 보여주는 예술사적, 문화사적, 종교·사상사적, 사회사적 가치와 의미를 담은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⁰⁴⁾ 또한 고구려 고분군은 동아시아 중세의 역사발전을 보여주며 벽화의 미적 우수성과 능묘 천장 등 독특한 건축 구조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²⁰⁵⁾ 따라서 효과적인 보존체제를 위해 63개의 고구려 고분군을 4개 지역 그룹(평안남도, 평양시-력포와 삼석구역, 황해남도, 남포특별시)으로 나누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다.²⁰⁶⁾

평양시 지구의 고분은 총 49기로써 호남리 고분군 34개와 력포구역에 있는 동명왕릉과 진파리, 설매동 고분, 도포리 고분 등이 있다. 남포시 지구에는 총 8기가 있으며 강서구역의 대묘, 중묘, 소묘, 덕흥리 고분, 약수리 고분, 수산리 고분과 용강군의 용강대총과 쌍영총이 있다. 이중 덕흥리 고분은 관개공사 중에 노동자에 의해 발견된 특징이 있다. 평양남도 지구의 고분들은 총 3기로써 덕화리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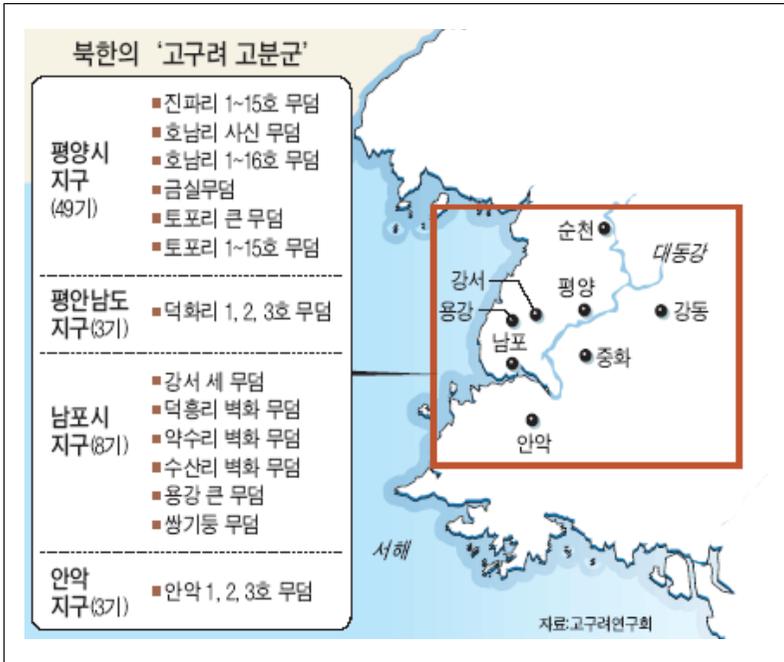
204) 전호태, “세계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의 가치와 의미,”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의 소중한 세계문화유산』 (2018 북한미술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 2018.7.6.), p. 123.

20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NESCO세계문화유산고구려고분등재,”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393&pageFlag=&sitePage=1-2-1>> (검색일: 2021.6.19.).

20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고구려 고분군,” <<https://heritage.unesco.or.kr/고구려-고분군>> (검색일: 2021.6.19.).

2호, 3호가 있으며 황해남도 안악지구에는 안악1호, 2호, 3호가 있다.²⁰⁷⁾ 고구려 고분군의 총 유산면적은 233헥타르에 이르고 완충지역은 1,701헥타르이다.²⁰⁸⁾

〈그림 IV-1〉 유네스코 등재 북한 고구려 고분군 지역도



출처: “고구려 유적’ 인류 문화재로 공인.” 『중앙일보』, 2004.7.1., <<https://www.joongang.co.kr/article/357401>> (검색일: 2021.8.10.) 바탕으로 저자 재편집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구려의 문화유산은 돌과 흙을 재료로 봉분을 이룬 석조 고분들로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며 흙 봉분에 벽화를 그리는 것이 일반화 되어 총 63개의 고구려 고분

207) Ariane Perrin, “북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지명 과정,” 『고구려발해연구』, 16권 (2003), pp. 33~40.

20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고구려 고분군,” <<https://heritage.unesco.or.kr/고구려-고분군>> (검색일: 2021.6.19.).

군 중에 강서삼묘와 동명왕릉 등 16개 고분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²⁰⁹⁾ 벽화가 없는 고분도 유네스코 전문가들에 의해 고구려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아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포함되었다. 고구려 고분군의 벽화들은 풍부한 색채와 현실적이고 생생한 그림들로 평가되었으나 발굴 초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발굴된 경우가 매우 적어 온전한 유물이 매우 적다.

〈그림 IV-2〉 동명왕릉 전경 & 안악3호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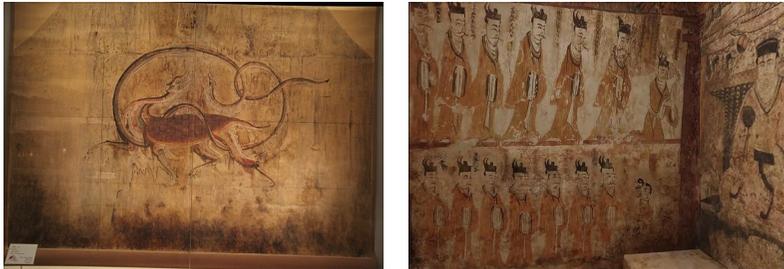
출처: “고구려 고분군,”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omb_of_King_Dongmyeong_of_Goguryeo_in_Pyongyang.jpg> (검색일: 2021.6.23.); “안악3호분,”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an_-_Anak_Tomb_No._3.jpg> (검색일: 2021.6.23.).

고구려 고분군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에 의해 발굴되기 시작했고 고분에 대한 보존 조치는 1946년 4월 「보물 역사적유적 풍광 지역과국가기념물보존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고분이 많은 손상을 입게 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내각 법령(1958년 2월 18일)에 의해 리와 군에 유적보존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고분들을 관리 보호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고분들을 다시 보수하는데 1985년 7월 11일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제35호」 문화유적유물 보존관리사업을 강화

209) 위의 글.

할데 대하여」를 내놓았고 이에 고구려 고분군들을 1987년부터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 강서대묘와 중묘 그리고 약수리 고분 등에 밀폐 유리막을 설치하는 등 현재까지 고구려 고분군들을 관리하며 새로운 발굴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IV-3〉 강서대묘 현무도 & 덕흥리 고분벽화



출처: Tristan Surtel, “The Painting of Black Tortoise at National Museum of Korea,”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Painting_of_Black_Tortoise_at_National_Museum_of_Korea.jpg> (Accessed June 30, 2021); “덕흥리 고분,”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okhung-ri_Tomb.jpg> (검색일: 2021.6.30.).

나. 고구려 고분군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과정

1980년대 북한 내 고구려 유적에 관심이 많아지며 유네스코 차원에서 북한 문화재 보존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에는 국제문화재보전 및 복원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ICCROM)와 함흥과학원이 참여했다. 또한 1989년부터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 문제로 전문가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991년에는 벽화 보존 전문가인 로돌포 루한(Rodolfo Lujan)이 제출한 방북보고서로 고구려 벽화고분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²¹⁰⁾ 북한은 이에 「문화유물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여 고구려 고분

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보호하기 시작했다.²¹¹⁾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연이은 홍수로 많은 유적지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북한은 유네스코에 기술적, 물질적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1998년 7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을 포함한 7건의 유산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으로 제출하였고, 북한이 첫 번째로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선택한 것이 고구려 고분군이었다.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진 유네스코 친선 대사였던 히라야마 이쿠오 교수는 1999년 4월 덕흥리 고분과 강서대묘, 안악3호분의 온·습도 측정을 위한 장비 설치 준비 답사를 진행했고, 고구려 고분군의 지명 보고서 작성과 관리 계획을 준비하는 북한의 문화보존국에 자문을 위해 방북하기도 했다.

2000년 8월과 2001년 7월에 이루어진 유네스코 전문가들의 북한 방문은 세계유산 등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기도 했으며 이후 등재 신청과 관련한 유네스코 조사단의 방북 조사가 2001년 시행되었다.²¹²⁾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2년 1월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Complex of the Koguryo Tombs)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다.

2003년 6월 30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막된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은 처음에는 20여 기 정도만 등재 신청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고구려 벽화분 63기 전체를 일괄 등재 신청 후보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북한의 고구려벽화무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

210) 전호태, “북한 소재 고구려 벽화고분의 보존과 관리-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5권 (2002), p. 66.

211) 1994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6호로 채택하고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1994년 4월 8일)에서 법령 제26호로 승인하였다.

212) 전호태, “북한 소재 고구려 벽화고분의 보존과 관리-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유적을 중심으로-,” p. 66.

지 않았다. 등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이 있는 ICOMOS의 보고서였다. 2002년 7월 ICOMOS 전문가의 세계유산 등재 평가를 위한 북한 현지조사에서 고분군의 일반 공개가 안되고 일부는 물에 잠겨 있거나 원형이 훼손되었다는 이유였다.²¹³⁾

결국 현지조사 이후 ICOMOS는 등재 심의 자체를 미루는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으로 인해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지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유산위원회 이사국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공동등재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ICOMOS의 권고안은 2003년 3월에 제출되었지만 북한의 추가 자료 제출은 2003년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 자료 검토와 후속 조치에 대한 쟁점도 있었다. 결국 북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보류되었고 다음 해인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Capital Cities, Imperial Tombs and Nobles’ Tombs of Koguryo’와 별도로 고구려 고분군을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²¹⁴⁾

일각에서는 ICOMOS의 보고서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배경에는 북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중국의 견제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으나,²¹⁵⁾ 2003년 심사에서 고분군의 등재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ICOMOS 조사단이 “북한지역 고구려 고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 일부 고분의 경우 변형이 가해짐에 따라 고분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점, 보존 및 관리의

213)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총회 30일 개막,” 『기호일보』, 2003.6.29.,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52>> (검색일: 2021.6.21.).

214) 이해은, “북한의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과정과 현황,” (고구려발해학회 발표, 2008.12.23.), <http://www.palhae.org/gnubrd4/bbs/board.php?bo_table=pds2&wr_id=174&sfl=&stx=&sst=wr_hit&sod=desc&sop=and&page=9> (검색일: 2021.6.21.).

215)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총회 30일 개막,” 『기호일보』, 2003.6.29.,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52>> (검색일: 2021.6.21.).

기술 수준이 높지 못하고 관련장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세계유산 위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²¹⁶⁾

“북한은 2003년 ICOMOS 조사단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고구려 고분의 보존 및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했으며, 이에 ICOMOS는 2004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유산 검토 회의에서 북한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고 고구려 고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권고했다.”²¹⁷⁾ 이후 2004년 7월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고구려 고분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04년 10월 20일 북한 인민대학습당에서 유네스코 무니르 부체나키(Mounir Bouchenaki) 부총국장이 유네스코 회의 북측 단장인 북한 문화보전지도국 리의화 부국장에게 고구려벽화무덤의 세계유산등록증서를 전달하였다.²¹⁸⁾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조선유네스코민족위원회(유네스코 북한위원회), 조선문화보전지도국 등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세 번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고분 1개소를 선별하여 보전에 관한 실습 작업 등 협력을 이어나갔다.²¹⁹⁾

216) “고구려 고분 세계유산 등재 여부 판가름: 6월말 중국 쑤저우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서,” 『유네스코뉴스』, 2004.6.1.,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 (검색일: 2021.6.19.).

217) 위의 글, p. 1.

218) 이경수,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남북공동 전시회 및 학술대회] 현장 취재 : 금강산 남북 고구려 토론회 - 누가 왜곡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민족 21』, 2004.10., pp. 92~99.

219) 로돌포 루잔 런스포드, “북한 수산리 고분벽화 보존지원과 성과,”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의 소중한 세계문화유산』 (2018년 북한미술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8.7.6.), p. 142.

다. 고구려 고분군 유산 등재에 대한 북한의 평가

김정일은 1964년 대성산유원지를 방문하여 유물과 유적을 복구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고구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고구려는 넓은 령토와 발전된 문화를 가진 강대한 나라였으며 고구려 인민들은 매우 용감하고 애국심이 강하였습니다. 고구려의 강대성과 높은 문화 수준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입니다.”²²⁰⁾ 이처럼 고구려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기본 인식은 강한 국가이며 북한 민족의 자랑인 것이다.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한 북한 내 평가는 첫째, 조선민족이 창조하고 발전시킨 귀중한 문화 재부라는 것이다. 북한은 고구려를 발전된 경제력과 넓은 영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인 동시에, 중세 초기 동방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민족 문화의 개화기를 연 국가라고 평가하며 고구려의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벽화무덤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수한 회화술과 건축술의 종합체로 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조선 민족이 창조하고 발전시킨 민족 고유의 문화 재부라고 평했다.

둘째,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평가는 중세 동방 회화 미술의 최고 정화로 김정일도 “옛날 고구려무덤벽화만 보아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뛰어난 미술적재능을 가지고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벽화들은 그 묘사의 생동성과 다양한 생활세부, 변하지 않는 색깔로 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을 크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²²¹⁾ 마지막으로 고구려 무덤 벽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인

220) 김정일, “력사 유적과 유물 보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9월 16일),” 『김정일선집 제1권』, p. 34.

221)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고구려무덤벽화는 세계에 자랑할 조선민족의 귀중한 문화 유산,” 『민주조선』, 2004.6.27., 3면.

평양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자랑 높은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다.²²²⁾

하지만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평가는 위와 같은 일반적 평가 이외에 정치적 의도를 담은 평가도 존재한다. 즉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업적과 결부시켜 고구려 고분군을 정당성의 수단으로 삼는 일반적인 북한의 선전 형태도 드러난다.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록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역사관과 민족애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칭송하는 것이다.

1947년 6월 김일성이 강서세무덤을 찾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재에 비탄하며 고구려벽화무덤을 민족문화유산으로 관리하도록 일군들에게 가르쳤다는 것과 1958년 3월에 안악3호벽화무덤을 찾아 고고학적 고증을 이끌며 주체적 입장에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김일성의 비범성과 명철한 판단력에 일군들이 탄복했다는 과거의 일을 상기시켰다.²²³⁾

또한 1965년 3월 조선미술박물관을 시찰하고 고구려무덤벽화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분석하였다고 하며 김일성의 비상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을 강조했다.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김일성의 업적을 선전하며 민족의 우수성은 김일성의 위대성이고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고 전했다. 김일성의 현명한 영도 밑에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김일성에 대한 정당성과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인민에게 전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²²⁴⁾

222) 위의 글.

223) “고구려벽화무덤은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다고 하시며,” 『민주조선』, 2004.10.28., 2면.

224) 위의 글.

아울러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을 김일성에 대한 칭송으로 연결시키는 것과 더불어 김정일의 업적과도 연결시키고 있다. 북한은 “고구려무덤벽화에 새겨진 조선종은 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여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 속에 우리 인민이 대를 두고 전해가며 자랑할 귀중한 문화유산이다”라고²²⁵⁾ 적시하여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문화유산을 김정일의 인민에 대한 사랑을 전할 매체로 제시하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특별히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평가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이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4년 10월 24일)」를 발표한 이후 “민족유산은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는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애국주의로 연결되는 사상감정의 중심”이라고 평했다.²²⁶⁾ 김일성과 김정일이 민족유산을 주체적 입장에서 계승·발전시켰음을 칭송하며 그들에 이은 지도자인 김정은의 영도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라. 고구려 고분군 유네스코 유산 등재와 남북 협력

고구려 고분군 관련 남북 협력은 크게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와 ICOMOS Korea,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교류 협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문화재청은 북한 고구려 고분군의 보존을 위해 2000년부터 유네스코를 통해 매년 10만 달러의 신탁기금을 북한에 지원했다.²²⁷⁾ 유네스코-대한민국 신탁기금 사업 ‘526DRK4000’의 첫 사안은 대동강

225) “우구한 력사, 찬란한 민족문화, 고구려무덤벽화를 통해 본 조선종,” 『민주조선』, 2006.9.19., 4면.

226)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 『로동신문』, 2018.10.24., 2면.

227) “고구려 유적’ 인류 문화재로 공인,” 『중앙일보』, 2004.7.1., <<https://news.joins.com/article/357401>> (검색일: 2021.6.22.).

수원과 태성저수지를 연결하는 신운하 건설이 가져올 약수리 고분의 습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약수리 고분의 보호 및 보존사업이었다.²²⁸⁾ 또한 이 신탁기금 사업은 북한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고분의 보존 방법과 실무체계를 배우고 유물의 진열 보존, 복원 방법, 환경 모니터링 구축 등을 설명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에 다녀오도록 지원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ICOMOS Korea의 고구려 고분군 등재를 위한 국제활동으로 2003년 제27차 세계유산위원회(파리)에서 북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의 탁월함과 가치를 적극 홍보하고 ICOMOS 등재 반려 권고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읍저버 자격으로 참가한 북한대표단이 고구려 고분군의 단독등재 입장에 대해 각국에 지지를 호소할 충분한 기회를 갖도록 도왔다. 이후 2004년 1월에 열린 ICOMOS ‘세계유산 등재 검토 패널회의(프랑스 파리)’와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위원회 핵심 인사들과의 개별 접촉으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우호적인 결과를 내도록 외교활동을 벌이며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²⁹⁾ ICOMOS Korea도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지지 활동을 이어나갔는데,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북한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사업, 2005년 2월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방일워크숍을 개최하였다.²³⁰⁾

민화협은 고구려고분벽화와 고구려 유물의 남한 전시를 위해 북한과 교류 협력을 진행했다. 2002년 4월 25일 민화협은 <특별기획 전 고구려!: 평양에서 온 고분벽화와 유물> 전시회를 2002년 12월 6일부터 2003년 3월 5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특별전시장에서 개최

228) 로돌포 루잔 린스포드, “북한 수산리 고분벽화 보존지원과 성과,” p. 141.

22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MBC ‘느낌표’ 및 조선닷컴 보도 관련 한위 공식입장,” 2006. 9.20., <<https://unesco.or.kr/news/press/view/452/page/1656?>> (검색일: 2021.6.24.).

230) ICOMOS Korea,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연혁,” <http://www.icomos-korea.or.kr/wanee/bbs/board.php?bo_table=z2_2> (검색일: 2021.6.24.).

하였다. 주최기관은 민화협, SBS, 중앙일보, 주관은 특별기획전 고구려! 추진위원회, (주)바인홀딩스, 후원에 통일부, 문화관광부, 특별후원은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재일본조선역사고고학협회가 하였다.²³¹⁾ 2004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북한 고구려 문화유적 방북취재를 진행했다.²³²⁾

이후 2004년 다시 고구려 문화와 관련한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2004 남북공동기획-고구려문화전: 우리의 땅, 살아오는 고구려>는 2004년 4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 한솔동의보감 7층 컨벤션 홀에서 진행됐다. 주최는 중앙일보, SBS, 민화협, 후원에는 통일부,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특별후원은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등이 담당했다.²³³⁾

마지막으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고구려 고분군 관련 남북 교류 협력 내용은 2004년 금강산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및 자료전시회>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약 100여 명 참석, 남측 70여 명, 북측 30여 명)가 함께하여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 학술 토론회에서는 고구려 고분군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북측에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²³⁴⁾

231) “특별기획전-고구려!” 『중앙일보』, 2002.1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4389391#home>> (검색일: 2021.6.26.).

23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활동현황,” <<https://kcrc.or.kr/02/05/Default.asp?act=2004#yy>> (검색일: 2021.6.25.).

23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알림] 남북이 함께 느끼는 고구려 문화,” <https://kcrc.or.kr/04/04/Default.asp?checkbox=1&strSearchCont=&intpage=15&str_value=View&int_idx=5732&s_Btype=4004&str_url=%2F04%2F04%2FDefault.asp&int_order=&int_depth=&str_uid=>;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유게시판] 2004 남북합동기획 고구려 문화전 초, 중, 고생 무료,” <http://www.vkorea.or.kr/common/board/listbody.html?a_gb=board&a_cd=13&a_item=0&page=397&po_no=236&sm=5_1> (검색일: 2021.6.25.).

234) 이경수,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남북공동 전시회 및 학술대회] 현장취재: 금강산 남북 고구려 토론회 - 누가 왜곡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pp. 92~99.

이후 2004년 10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고구려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남북공동 사진전사회>가 서울에서는 국회, 서울역사박물관, 고려대박물관, 낙성대공원, 대전에서는 대전 엑스포공원, 그리고 평양시내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북측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함께 진행됐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서울시, 고려대가 공동 주최하고 북한의 문화보존지도국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2005년 5월 7일에서 8월 31일까지 <6·15공동선언 발표 5돌과 조국광복 60돌 기념 고구려유물 전시회>가 고려대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²³⁵⁾ 또한 2006년 6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린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 전시도 북한의 문화보존지도국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의 협력의 결과이다.²³⁶⁾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전시뿐만 아니라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에도 참여했다. 2006년 고구려 고분군 실태조사를 위한 실무 협의를 거쳐 남한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고구려역사유적들의 보존관리사업을 협력하기로 2006년 3월 20일 합의하여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고구려 유적 보존사업을 위한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평양 및 인근 고구려 고분군 소재 지역에서 북측의 문화보존지도국과 함께 진행했으며 <제2단계 고구려 고분군 보존사업>은 2007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평남 중화군 진파리 고분군, 평양시 력포구역 용산리 동명왕릉 지구에서 행해졌다.²³⁷⁾

235)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5 남북공동학술회의 개성만일대 남북공동발굴조사 9년의 성과와 전망』 (서울: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5), pp. 76~78.

236)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 『일간조선』, 2006.8.10.,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608100063>> (검색일: 2021.6.26.).

237)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5 남북공동학술회의 개성만일대 남북공동발굴조사 9년의 성과와 전망』, pp. 76~78.

2. 북한 ‘개성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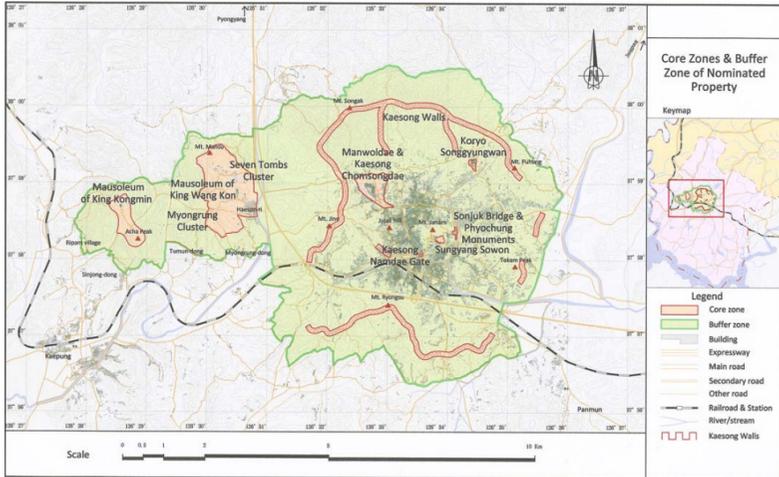
가. 개성역사유적지구

475년 동안 고려(918~1392년)의 수도였으며 조선의 개국이 선포되었던 ‘개성’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와 조선의 많은 문화유산 유적을 가진 역사 도시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개성의 분지에서 서쪽 구릉까지 이어지는 개성역사지구는 고려의 통치 기반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성의 도시 설계에서 나타나는 풍수지리적 요소와 왕의 통치권을 보여주는 왕궁과 왕릉군의 정치적 요소, 그리고 국가와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성벽과 대문의 군사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으며 교육 기관을 통해 불교에서 유교로 사상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요소도 보여주고 있다. 즉 고려의 정치, 군사, 문화, 사상, 정신적 가치를 모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과 교류함으로써 불교에서 유교로 사상적 흐름이 전환되는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 개성역사유적지구라고 할 수 있다.²³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포함된 개성역사유적지구는 만월대, 개성 첨성대, 개성성, 개성 남대문, 고려 성균관, 송양서원, 선죽교, 표충비, 왕건왕릉, 7릉군(7기의 고려시대 고분군), 명릉군(고려 충목왕 무덤 등 3기 고분군), 공민왕릉(경효왕릉) 등 개별 유적 12개이다.

23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개성역사유적지구 등재 관련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전문,” p. 1, <[https://www.unesco.or.kr/upload/news_center/%EB%B6%99%EC%9E%84_37%EC%B0%A8%EC%84%B8%EA%B3%84%EC%9C%A0%EC%82%B0%EC%9C%84%EC%9B%90%ED%9A%8C_%EA%B2%B0%EC%A0%95%EB%AC%B8\(%EA%B5%AD%EB%AC%B8%EB%B2%88%EC%97%AD\).pdf](https://www.unesco.or.kr/upload/news_center/%EB%B6%99%EC%9E%84_37%EC%B0%A8%EC%84%B8%EA%B3%84%EC%9C%A0%EC%82%B0%EC%9C%84%EC%9B%90%ED%9A%8C_%EA%B2%B0%EC%A0%95%EB%AC%B8(%EA%B5%AD%EB%AC%B8%EB%B2%88%EC%97%AD).pdf)> (검색일: 2021.6.26.).

〈그림 IV-4〉 개성역사유적지구 지도



출처: UNESCO,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https://whc.unesco.org/en/list/1278/multiple=1&unique_number=1878> (Accessed June 23, 2021).

〈그림 IV-5〉 개성 만월대



출처: Eternal and life, “Manwoldae Palace and Kaesong Chomsongdae,”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B%A7%8C%EC%9B%94%EB%8C%80.jpg>> (Accessed June 23, 2021).

만월대는 고려 태조 2년(919년)에 세워진 왕궁터로, 송악산 남쪽에 위치해 있다. 공민왕 10년(1361년)에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시켜 재건되지 못하고 주춧돌만 남았다. 개성 침성대는 고려 충렬왕 7년(1281년)에 세워진 고려시대 천문 및 기상 관측소로서 개성시 송악

동에 있는 고려 왕궁터, 만월대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개성 성곽 5개 구역은 고려의 방어를 위한 건축물로 가장 내부에 위치한 발어참성이 있고 외성은 풍수지리적으로 산들이 도시를 보호해주는 형태로 1009년에서 1029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내성은 1391년에서 1393년에 건축되었다.

개성 남대문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으로 고려 왕조 말기 1391년부터 조선 태조 2년인 1393년에 세워져 당대의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다. 남대문 현판은 한석봉의 글씨다. 고려 성균관은 고려의 관리 양성을 위한 최고 교육 기관으로서 국가감으로 불렸다. 현재는 고려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IV-6〉 개성 남대문 & 고려 성균관



출처: David Stanley, "Kaesong Namdae Gate,"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am_Gate_in_Kaesong_\(5063812320\).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am_Gate_in_Kaesong_(5063812320).jpg)> (Accessed June 24, 2021); Uwe Brodrecht, "Koryo Songgyungwan,"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1461_-_Nordkorea_2015_-_K%C3%A4song_-_Koryo_Museum_\(22970455332\).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1461_-_Nordkorea_2015_-_K%C3%A4song_-_Koryo_Museum_(22970455332).jpg)> (Accessed June 24, 2021).

숭양서원은 정몽주의 집터에 세워진 조선 시대 유교 서원이다. 선죽교는 정몽주의 집터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화강암 돌다리로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 피살된 장소로 유명하고 표충비는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는 2개의 석비로 조선시대에 세워졌다. 이외에는 왕건릉과 7개의 왕릉 및 명릉, 공민왕릉이다.

〈그림 IV-8〉 선죽교



출처: “북개성역사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눈앞’(종합).” 『연합뉴스』, 2013.5.13., <<https://www.yna.co.kr/view/AKR20130513112851005>> (검색일: 2021.6.23).

한편 세계유산에서 개성의 절과 절터들이 제외된 것은 고려가 불교국가였던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²³⁹⁾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지구’로 등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과정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는 북한이 「세계유산협약」에 1998년 가입한 후 200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제출할 때 포함된 내용이었다. 2004년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2005년부터 개성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남북한이 협력의 발을 떼기도 하였다. 2005년 11월 개성에서 열린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와 유적답사에서 처음으로 남북공동발굴조사 제안되었다. 2005년 12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기반으로

239) 안병우,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 유산 등재,” 『내일을 여는 역사』 54권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pp. 30~32.

2006년 1월 남북한은 개성역사유적 발굴에 대한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하고 함께 남북공동발굴조사를 2011년까지 진행했다.²⁴⁰⁾

북한은 개성역사유적지구에 대해 2007년 1월 반려 판정을 받았다. 반려의 이유는 첫째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서 고려의 탁월한 가치를 대표할 유적이 선별되지 않았기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유산 지역 재설정 문제, 셋째, 향후 개발로 훼손될 잠정적인 위협으로부터 유적을 보호할 완충 지역 설정의 문제였다.²⁴¹⁾ 이후 북한은 2008년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2011년 2월 14일에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하였다. 그리고 2013년 6월 23일 프놈펜에서 열린 제3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²⁴²⁾ 이로써 고구려 고분군이 등재된 지 9년 만에 개성역사유적지구를 등재하여 북한은 2번째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게 되었다.

북한은 개성역사지구의 첫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반려된 이후 반려 이유로 지적된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맞추려는 노력들을 보였다. 기존의 「문화유물보호법」이 폐기되고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새로 채택했는데,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등재를 앞두고 제시된 유네스코의 권고가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²⁴³⁾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에 대한 ICOMOS의 평가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문화유물보호법」을 개정하고 문화유물의 보존에 관련한 법령의 이행을 위한 규정과 새롭게 준비된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

240) 박성진,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 『환경논총』, 제54권 (2014), pp. 38~40.

241) 이혜은, “개성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과정,” (2013 제주 세계유산포럼 자료집, 2013.7.2.), pp. 33~37.

242) 박대남, “북한의 세계문화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 『월간 북한』, 5월호 통권 533호 (2016), p. 156.

243) 남보라·서순복,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p. 192.

호와 관리를 위한 지침」을 2013년 9월에 승인하여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완충지역을 확대 설정하고 개성 남대문에 위치한 전통가옥지구(한옥거리)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²⁴⁴⁾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국제기준을 따르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써 북한이 다양한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 개성역사유적지구 유산 등재에 대한 북한의 평가

개성역사지구는 1950년 초부터 북한에서 역사적 유물 보존의 필요성이 부각된 북한 문화유산의 중심지였다.²⁴⁵⁾ 한국전쟁 중에 개성 남대문과 만월대를 비롯한 유적들이 파괴되었다는 보고에 김일성의 교시로 원상 복구가 1953년부터 진행되었다. 김일성은 1957년 개성지구를 찾아 대흥산성을 보고 큰 성을 건축한 것에 대해 고려의 방어체계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투쟁이 깃들어 있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하며 애국주의 교양을 잘해야 한다고 교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⁴⁶⁾

이처럼 개성역사지구는 북한에서도 중요한 유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보존의 대상이었고 조국에 대한 애국주의를 강조할 수 있는 통치 도구로 활용되는 문화유산이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이 북한의 언론을 통해 다시 제기된 것은 북한이 개성역사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44) ICOMOS International Secretariat, *2013 Evaluations of Nominations of Cultural and Mixed Properties to the World Heritage List* (Paris: UNESCO, 2013), p. 148.

245) “개성시의 역사적 유물들을 보존,” 『민주조선』, 1953.9.2., 3면.

246) “유구한 력사, 찬란한 민족문화: 자랑많은 개성시의 유적들,” 『민주조선』, 2006.4.7., 4면.

북한은 개성의 유적들에 대해 한반도의 첫 통일국가 고려의 태조 왕건왕릉을 로동당 시대와 연결시켜 민족문화유산의 가치를 중시했다. 그러면서 수령과 영도자를 모실 때 민족의 역사와 문화도 빛낼 수 있다고 하며 북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기반을 수령과 영도자로 삼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결국 김일성의 이전 현지지도가 애국 현신의 업적이었다고 평했다.²⁴⁷⁾

다시 말해 북한은 개성의 유적들을 통치 기반의 도구로, 북한 인민들의 충성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개성역사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에도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성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록은 김정은 시대에 결과된 것이어서 김일성, 김정일의 영도에 따르는 충성, 그것이 애국주의로 이어짐을 계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개성역사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실린 로동신문의 특집기사에서 몇 가지 북한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²⁴⁸⁾

첫째, 민족적 자부심이다.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공화국 창건 65주년과 연계하면서 민족적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당의 주체적인 민족유산보호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김일성과 김정은 영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 개성의 유적들이 훌륭하게 보존되어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체적인 민족유산보호 정책을 제시하고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발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로 규정했다.

247) “민족문화유산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령도,” 『로동신문』, 2011.8.21., 2면.

248) “주체적인 민족유산보호 정책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 37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개성시의 력사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로동신문』, 2013.8.1., 4면.

셋째, 따라서 대원수님들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애국애족 -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상과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 김정은의 영도 하에 민족의 문화유산과 역사 전통을 이어나가야 하는 인민들에 대한 요구가 담겨있다. 이는 “온 사회에 김정일 애국주의가 차 넘치게 하며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달성하자는 인민 구호와 연결되었다.

개성역사지구를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애국의 뜻을 받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⁴⁹⁾ 이후에 개성 만월대에서 고려 금속 활자가 발견됨에 대해 고려인들의 업적을 김일성의 금속활자에 대한 이전의 가르침의 정당성이 실물로 확인되었다고 하며 김일성의 능력을 찬양하였다.²⁵⁰⁾ 또한 김정은의 뜻에 따라 민족유산발굴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이어나갈 것을 주장하고,²⁵¹⁾ 유산 발굴 성과가 김정일애국주의,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에 매진하는 군대와 인민을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으로 불타게 한다고 평했다.²⁵²⁾

결국 북한은 개성역사지구의 유적을 보호하고 유물을 발견하는 일들을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최고영도자의 뜻을 받드는 애국주의로 충성을 강조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결부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이라는 국가 동원의 수단으로 인민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⁵³⁾

249)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에 큰 힘을-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로동신문』, 2014.5.18., 5면.

250) “조선민족의 자랑-금속활자 새로 발굴,” 『민주조선』, 2016.5.20., 4면.

251)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고려금속 활자와 그 문화사적의의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진행,” 『민주조선』, 2016.5.20., 4면.

252) “조선민족의 자랑-금속활자 새로 발굴,” 『민주조선』, 2016.5.20., 4면.

253)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 『로동신문』, 2018.10.24., 2면.

라. 개성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유산 등재와 남북 협력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남북 협력은 대표적인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핵심적인 교류사업 주체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다. 특히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은 남한의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북한의 조선중앙력사 박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는 이 사업이 남북 교류협력과 민족의 동질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남북 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²⁵⁴⁾

이 사업의 시작은 남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발굴조사 추진을 위해 2005년 북측과 접촉한 것에 시작된다.²⁵⁵⁾ 공동발굴조사가 추진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5년 11월 개성의 자남산 여관에서 열린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 행사였다.

이후 6·15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제1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보존관리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2006년 1월 개성역사유적 발굴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체결했다.²⁵⁶⁾

2006년 3월에 개성에서 실무협약이 이루어진 후 2007년 5월에 와서야 첫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남한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의 합의로 2007년 첫 발굴조사가 시작되었고 2018년 12월까지 남북의 관계 상황에 따라 조기철수와 중단, 재개를

254) 통일교육원 남북관계 지식사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view.do?id=30860&mid=SM00000535&limit=10&eqViewYn=true&odr=news&eqDiv=%EA%B0%80>) (검색일: 2021.6.30.).

255)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News Wire』, 2005.11.17.,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8475>> (검색일: 2021.6.26.).

256) 안병우,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 유산 등재,” 『내일을 여는 역사』 54권, p. 33.

반복하며 현재까지 8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사업의 성과로는 미발굴지였던 서부건축군 33,000㎡의 59.9%에 달하는 19,770㎡를 조사한 것과, 금속활자 1점과 함께 와전 및 도자기 등 약 17,900여 점의 유물을 수습한 것이다.²⁵⁷⁾

제1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시굴조사는 2007년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60일간 서부건축군 33,000㎡에 대해 전면 발굴 전, 서부건축군 전체 유구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이어 제2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2007년 9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75일간 확인된 부분 중 규모가 가장 큰 건물지군인 서부건축군 1건물지군에서 행해졌다. 3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원래 4월부터 6월 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2008년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50일간 서부건축군 2·3건물에서 진행되었다. 제4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2010년 3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57일간 추정건덕전구역(9건물지군)에 대해 발굴조사와, 1·2·3건물지군에 대한 보충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건물지군의 밑에 선대 유적의 존재를 알게 된 중요한 사료가 되었다.

제5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2011년 여름, 폭우로 만월대의 일부가 훼손될 위험에 처하자 안전진단 및 긴급복구조사로 이루어져 4건물지군 및 서부건축군과 중심건축군 일원에 보존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14일에서 12월 20일까지 37일간 진행됐다. 제6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2014년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26일 동안 5건물지군에 대해 이루어졌다.

257)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기록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http://manwoldae.org/front/story/excavation.do?folder=story&address=excavation&aid=>> (검색일: 2021.6.30.).

다음 해인 201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굴조사 중 가장 오랜 기간인 183일 동안 이루어진 제7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는 5·6·7·8건물지군에 대한 조사였다. 이 조사에서 금속활자를 발굴하였다. 제8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18년 10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일간 회경전과 장화전 사이 중심건축군 축대 구간인 10건물지군 및 중심건축군 8차 조사구역에서 진행됐다.²⁵⁸⁾

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의 결과로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및 개성 학술 토론회>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통일부, 문화재청이 함께 추진하여 개최되었다. 서울에서는 2015년 10월 13일 오후 7시에 개막하여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광복 70년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특별히 이 전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성 만월대의 발굴조사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북이 동시에 개최하는 전시라는 점에서 뜻깊은 전시였다. 서울에서의 전시와 동시에 북한 개성에서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성 고려박물관 별도 전시장에서 전시회가 개최되었다.²⁵⁹⁾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외에 ICOMOS Korea도 2005년 11월 개성에서 열린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북남공동 학술 토론회와 유적답사> 행사에 참석하고 같은 해 12월 개성에서 열린 개성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및 기타 현안 논의를 위한 실무 회담에 참석했다.²⁶⁰⁾

258) 위의 글.

259)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및 개성 학술회의」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5.10.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083&pageIndex=4505&repCodeType=&repCode=&startDate=2008-02-29&endDate=2019-12-07&srchWord=>> (검색일: 2021.6.26.).

260) ICOMOS 한국위원회, “연혁,” <http://love64.comkr.com/wanee/bbs/board.php?bo_table=z2_2> (검색일: 2021.7.1.).

또한 개성공단 개발이 가시화되자 한국고고학회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보존 문제가 제기되어 2004년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측에서는 토지박물관이, 북측에서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2주에 걸쳐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08년 2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공동조사단은 사전답사를 거쳐 2008년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했다.²⁶¹⁾

3. 남북한 ‘씨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사례

가. 씨름

두 사람이 맨 몸으로 힘과 기술을 겨루는 경기인 씨름이라는 한글 명칭에 관한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서로 버티고 힘을 겨루는 것’을 영남지방의 방언에서는 ‘서로 씨룬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명사화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씨루다 → 씨름 → 씨름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²⁶²⁾ 또 다른 설로는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 등장하는 기예 시범 종목 가운데 하나인 ‘씨름’이 씨름의 어원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²⁶³⁾ 또한 씨름은 한자로는 각저(角觝), 각저(角抵), 각저(殼觝), 각력(角力), 각희(脚戲), 각희(角戲), 상박(相縛), 치우희(蚩尤戲), 줄교(掙校), 질교(迭校), 쟁교(爭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²⁶⁴⁾

261) 심광주, “개성공단 건설부지 내 문화유산 공동조사의 성과와 과제,” 『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 (2018년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특별위원회 학술회의, 2018.8.23.), pp. 31~45.

262) 김학웅, 『김학웅의 씨름 이야기: 씨름 인생 50년』 (서울: 민속원, 2009), p. 167; 대한씨름협회, 『씨름교본』 (서울: 감람원, 2005), p. 6.

263) 대한씨름협회, 위의 책, p. 6.

264) 나현성, “한국 각저고 韓國角觝放,” 『경희사학』, 제3집 (1972), p. 23, 재인용: 심승구, “씨름의 정체성과 유산 가치,” 『비교민속학』, 제67권 (2018), p. 147.

민족의 전통문화인 씨름의 오랜 역사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위치한 고구려 고분인 각저총(角抵塚)은 4세기경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35년 발견 이후 씨름하는 모습의 벽화로 인해 그 이름이 각저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5세기 후반 축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국 지린성 지안의 장천 1호분의 벽화에서도 씨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²⁶⁵⁾

〈그림 IV-9〉 각저총 벽화



출처: “씨름.”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oguryeo-Gakjeochong-Ssireumdo-01.jpg>> (검색일: 2021.10.3.).

씨름에 관한 기록이 문헌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15세기 조선 세종 때 편찬된 『고려사』에서이다. 『고려사』에는 고려 충혜왕 즉위 3년(1330년) 3월 “왕은 아첨하는 신하인 배전(裴佺)·주주(朱柱) 등에게

265) “고구려 각저총에 새긴 ‘씨름’ 유네스코 유산의 향기,” 『경향신문』, 2018.11.1.,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1811011050001>> (검색일: 2021.10.3.).

나랏일을 맡기고 날마다 내수(內豎), 즉 아랫사람들과 더불어 씨름을 하니 위아래의 예절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외에도 충혜왕 복위 4년(1343년) “이 해 봄 2월 갑진일에 임금이 용사를 거느리고 씨름놀이를 구경하였다”, 5월에는 “신묘일에 공주가 연경궁(延慶宮)으로 옮기자 왕은 주연을 베풀어 위로하고 밤에는 씨름놀이를 친히 구경하였다”, 11월에는 “병인일에 고룡보(高龍普)와 함께 시가지의 누(樓)에 거둥하여 격구(擊毬)와 씨름놀이를 구경하고 용사들에게 많은 배를 상으로 주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한다.²⁶⁶⁾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송경지』, 『동국세시기』, 『경도잡지』, 『해동죽지』 등의 문헌에 씨름에 관하여 많은 서술이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이 군사들 간 씨름대결을 하게하고 이긴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는 내용의 기록이 등장하기도 한다.²⁶⁷⁾

<그림 IV-10> 김홍도의 씨름도와 유숙의 대래도 중 씨름 장면



출처: “김홍도 씨름도’ 사실 과산 연풍, 씨름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 『연합뉴스』, 2019.7.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2146600064>> (검색일: 2021.10.3.); 국립중앙박물관, “대래도.”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819>> (검색일: 2021.10.3).

266) 대한씨름협회, 『씨름교본』, p.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씨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4198> (검색일: 2021.10.5.).

267)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고, 군사 중에 힘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씨름을 하게 하여, 그 이긴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71권, 1436.2.15.,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802015_001> (검색일: 2021.10.5.).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민간의 풍속으로 확대된 씨름은 1912년 10월 9일 유각권구락부의 주최로 단성사에서 개최된 씨름대회를 시작으로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된다.²⁶⁸⁾ 씨름의 근대화와 함께 씨름의 대중적 인기가 높아지자 각 지역별로 상이했던 씨름의 규칙을 통일하고 전국 규모의 씨름 대회를 관장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27년 11월 27일 조선씨름협회의 창립과 함께 휘문고등학교에서 조선씨름협회 창립기념 제1회 전조선씨름대회가 개최되었고,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며 1946년 조선씨름협회가 대한씨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1947년 제1회 전국씨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1948년 제2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씨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1982년 4월 민속씨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1983년 프로씨름의 창설과 1984년 4월 14일 제1회 천하장사씨름대회를 통해 씨름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씨름은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침체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²⁶⁹⁾ 침체되어 있는 씨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06년 ‘100대 민족문화상징’ 가운데 하나로 씨름을 선정하고,²⁷⁰⁾ 2012년 「씨름 진흥법」을 시행하였다.²⁷¹⁾ 이후 2017년 1월 씨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11월 26일 제13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를 통해 남북 공동으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68) 대한씨름협회, 『씨름교본』, p. 9; 대한씨름협회, “연혁,” <http://ssireum.sports.or.kr/gnb/bbs/board.php?bo_table=sub1_02_5> (검색일: 2021.10.5.).

269) 심승구, “씨름의 정체성과 유산 가치,” pp. 158~160; 대한씨름협회, 위의 자료.

270) “문화관광부, 100대 민족문화 상징 선정,” 『매일경제』, 2006.7.2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0519374>> (검색일: 2021.10.5.).

271) 「씨름 진흥법」을 통해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씨름 진흥법」(시행 2021.7.14., 법률 제18013호, 2021.4.13., 일부개정), 제7조 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4%A8%EB%A6%84%EC%A7%84%ED%9D%A5%EB%B2%95>> (검색일: 2021.10.5.).

한편 남한과 북한은 씨름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에서 씨름은 모래 위에서 경기를 진행하지만 북한의 씨름은 모래가 아닌 매트 위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또한 선수의 체급 구분이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체급 구분이 없으며, 경기 복장에 있어서도 남한은 하의만 착용하는 반면, 북한은 상하의를 모두 착용하고 경기에 임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²⁷²⁾

〈그림 IV-11〉 남한과 북한의 씨름 경기 모습



출처: “씨름, 인류무형유산 첫 남북공동등재…“평화·화해 위한 결정”, 『연합뉴스』, 2018.11.26.,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6055451005>> (검색일: 2021.10.5.); “지난해 물난리로 추석 거른 북한…올해는 실 수 있을 듯”, 『연합뉴스』, 2018.9.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4113200504?section=search>> (검색일: 2021.10.5.).

나. 씨름의 유네스코 공동등재 과정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4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무형유산보호 협력회의’에서였다.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및 유네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북한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로철수 부국장은 분단 상황으로 인해 민족의 공동유산을 따로 단독등재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

272) “인류 무형문화유산 남북한 씨름, 공통점과 차이점”, 『연합뉴스』, 2021.9.29., <<https://www.yna.co.kr/view/MYH20210928010700888>> (검색일: 2021.10.5.).

며,²⁷³⁾ “앞으로 남북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져 합의가 된다면 남북한이 공동등재를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에서는 다음 등재 대상으로 씨름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사를 공식회의에서 표명했다. 또한 남북한 대표단이 만난 자리에서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가능성에 대한 남한 대표단의 질문에 로철수 부국장이 “남북한 양측 대표들이 만나 합의가 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면서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추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²⁷⁴⁾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대한씨름협회와 새누리당 김장실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씨름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9월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방안 포럼’을 개최하는 등 등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문화재청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하나로 씨름의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추진을 계획하기도 하였다.²⁷⁵⁾

그러나 2015년 3월 북한이 ‘조선씨름(Ssirum(wrestl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는 명칭으로 단독등재를 신청함으로써 공동등재 논의는 무산되었다. 북한이 단독으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남한은 2015년 11월부터 씨름의 등재 신

273) 회의에 앞서 남한과 북한은 아리랑과 김치의 개별등재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었다. 아리랑은 남한이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라는 명칭으로 2012년에, 북한이 ‘조선민요 아리랑(Arirang folk so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는 명칭으로 2014년에 각각 등재하였다. 김치는 남한이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라는 명칭으로 2013년에 등재하였고, 북한은 ‘김치 담그기 전통(Tradition of kimchi-making)’이라는 명칭으로 2014년에 각각 등재하였다.

274) “北 “씨름, 유네스코 공동등재 가능”...문화교류 제안,” 『아시아경제』, 2014.7.1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1006510629485>> (검색일: 2021.10.5.).

275) “민속씨름,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추진,” 『한국일보』, 2014.7.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407182230185229>> (검색일: 2021.10.5.); 문화재청, “2015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23006&bbsId=BBSMSTR_1045&pageUnit=10&searchCnd=&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mn=NS_03_09_01&searchSiteCd=> (검색일: 2021.10.5.).

청서를 준비하여 ‘대한민국의 씨름(Ssireum, traditional wrestling in the Republic of Korea)’이라는 명칭으로 2016년 3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해 9월 수정·보완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만 남한은 중국, 일본과 함께 다등재국가로 분류되어 등재 신청이 2년에 1건으로 제한된 상태였기에, 2017년에는 등재 심의가 보류되어 2018년에 심의를 받게 되었다.²⁷⁶⁾

남한보다 앞서 등재를 신청한 북한은 2016년 11월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정보보완(등재 보류) 판정을 받아 등재에 실패했다. 이에 북한은 신청서를 수정·보완하여 2017년 3월 다시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명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씨름(Ssirum(Korean wrestl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2018년 11월 모리셔스공화국에서 열리는 제13차 유네스코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심사를 받게 되었다.

남북한의 씨름 개별등재 심사를 앞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다. 판문점 선언의 발표와 함께 남북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각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씨름의 공동등재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역시 재개되었다.²⁷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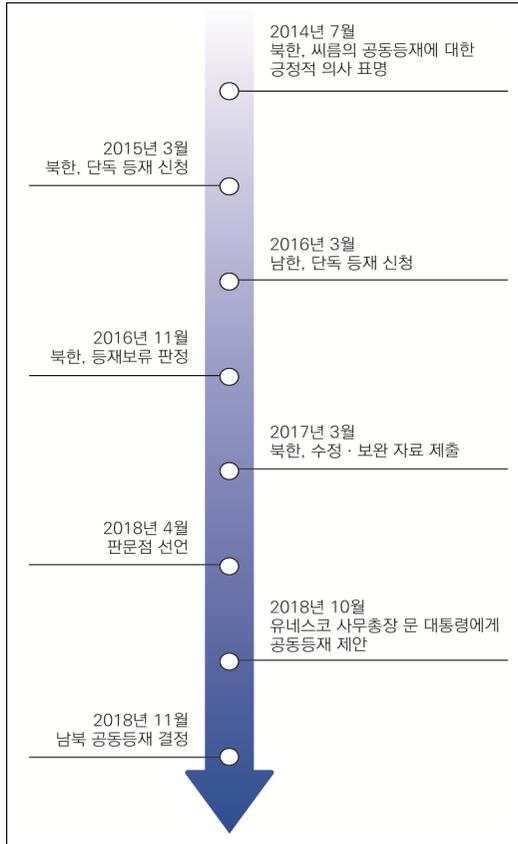
실제로 판문점 선언 이후 이병현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가 유네스코 사무국, 김용일 주유네스코 북한 대사와 씨름의 공동등재 방안을 협의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²⁷⁸⁾

276) 심승구, “인류무형유산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의미와 과제,” 『비교민속학』, 제69권 (2019), p. 16.

277) 심승구, “인류무형문화유산 씨름의 남북한 등재 검토와 전망,” (2018 무형유산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5.12.), pp. 39~50.

278) “씨름, 인류무형유산 첫 남북공동등재…‘평화·화해 위한 결정,’” 『연합뉴스』, 2018. 11.26.,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6055451005>> (검색일: 2021.10.5.).

〈그림 IV-12〉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주요 연혁



출처: 저자 작성

이후 2018년 10월 16일 프랑스를 국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의 남북한의 씨름 공동등재 추진 제안에 문 대통령이 공동등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동등재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²⁷⁹⁾

279) “문 대통령, 유네스코와 ‘씨름’ 남북 공동 세계유산 등재 논의,” 『경향신문』, 2018. 10. 17.,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810170457001>> (검색일: 2021. 10. 5.).

2018년 11월 15~17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공동등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남북이 각각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공동등재를 위한 신청이 이루어졌다. 결국 2018년 11월 26일 제13차 유네스코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24개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을 명칭으로 하는 씨름의 공동등재가 결정되었다. 위원회는 남북의 씨름이 그 연행과 전승양상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의미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평가기구가 남북 씨름을 모두 등재 권고한 점을 고려하여 전례에 없던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등재를 결정하였다.²⁸⁰⁾

다. 씨름의 공동등재의 평가와 시사점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본인의 SNS를 통해 공동등재 소식을 전하며 “남북이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공동등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리 문화유산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도 남북이 함께 하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²⁸¹⁾ 이어 12월 20일에는 문화재청의 주관으로 공동등재 기념식과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남한에서는 씨름의 공동등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²⁸²⁾ 하지만 북한은

280) 외교부, “남북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외교부 보도자료, 2018. 11. 26.,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788> (검색일: 2021.10.5.); “민족유산 씨름, 최초로 남북공동 유네스코 등재될 듯,” 『세계일보』, 2018.11.26., <<https://www.segye.com/newsView/20181126001538?OutUrl=nate>> (검색일: 2021.10.5.).

281) “文대통령, 씨름 유네스코 남북공동등재에 “남북 협력 성과,” 『뉴시스』, 2018.11.26.,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26_0000484646> (검색일: 2021.10.5.).

282)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 기념식,” 『뉴시스』, 2018.12.18.,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218_0000506018&cID=10501&pID=10500> (검색일: 2021.10.5.).

12월 1일 공동등재에 관한 언급 없이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소식을 로동신문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그쳤다.²⁸³⁾

〈그림 IV-13〉 북한 로동신문 ‘씨름’ 세계유산 등재 보도



출처: “우리 민족씨름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 『로동신문』, 2018.12.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등재 이후 처음으로 2019년 2월 12~13일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²⁸⁴⁾ 회담에 참석한 대한씨름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남한이 서울, 평양, 판문점에서 씨름대회의 공동개최를 제안하자, 이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²⁸⁵⁾ 그러나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을 기점으로 다시금 경색되기 시작한 한반도와 남북관계 하에서 이후 남북 간 협력을 위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²⁸⁶⁾

283) “우리 민족의 자랑인 씨름이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지난 11월 26일에 모리셔스에서 개막된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13차회의에서는 씨름을 인류의 대표적인 비물질문화유산목록에 등록하기로 결정하였다. 긴장한 체력과 투지, 슬기와 지혜를 키워주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근면한 로동생활과정에 창조되고 발전되어온 씨름이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소식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로동신문』, 2018.12.1.

284) “남북 씨름, 12일 금강산서 첫 회담…단오대회 공동개최 추진,” 『연합뉴스』, 2019.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6061400007>> (검색일: 2021.10.5.).

285) 심승구, “인류무형유산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의미와 과제,” p. 167.

286) 제주도가 ‘유네스코 남북 공동등재 기념 한민족 평화통일 씨름대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남북 정상 제주 방문 재추진… 평화통일 씨름대회도,” 『연합뉴스』, 2019.4.11.,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1081700056>> (검색일: 2021.10.5.).

현재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씨름의 공동등재는 남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기구 제도를 통해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유네스코 유산 가운데 분쟁, 정전 등의 분단 상황에서 공동등재가 이루어진 유일한 사례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을 통한 화해와 평화의 가치 실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²⁸⁷⁾

또한 분단 이후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북한 간에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인 단절이 발생해왔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민족적 일체감 역시 희미해져가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산을 공동등재시킨 것은 양자 간의 정치적·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²⁸⁸⁾ 2018년 씨름의 공동등재 후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번 공동등재가 남북 화해를 위한 매우 상징적 도약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남북한 국민들을 이어주는 다리로서 (씨름이라는) 문화적 유산이 가지고 있는 평화 구축의 힘을 깨닫게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공동등재된 유산이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사회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²⁸⁹⁾ 물론 남북한 간의 정치적 화해와 사회적 통합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등재만으로는 양자 간의 화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남북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질감과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고 결국 남북 화해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87) 심승구, “인류무형유산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의미와 과제,” p. 166.

288) 위의 글; UNESCO,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lis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llowing unprecedented merged application from both Koreas,” <<https://en.unesco.org/news/traditional-korean-wrestling-listed-intangible-cultural-heritage-following-unprecedented-merged>> (Accessed July 25, 2021).

289) UNESCO, *Ibid.*

또한 씨름의 공동등재를 계기로 이미 등재가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당사국들이 확장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이 각각 단독등재한 ‘아리랑’과 ‘김치’의 공동등재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²⁹⁰⁾

그러나 한편으로는 씨름의 공동등재 과정이 실질적인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정신에 부합하였는가에 관한 문제를 통해 씨름 공동등재의 한계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공동등재를 통한 남북 문화재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본래 공동등재는 신청 과정뿐만 아니라 등재 이후의 과정에서 참여국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간 문화적 이해와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동등재는 단독등재와 비교하여 참여국들 간의 협력과 지원이 더욱 긴밀히 요구된다. 등재 신청서의 준비 과정은 참여국들의 의지와 역량 등의 확인,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등재 신청서 작성 내용에 대한 합의 등 지속적인 상호 신뢰가 요구된다. 그러나 씨름의 공동등재 과정에서는 공동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접촉 없이 남북이 각각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공동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²⁹¹⁾ 유네스코와 남북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여 공동등재가 이루어졌으나 씨름의 공동등재는 형식적인 공동등재일 뿐 실질적으로는 단독등재와 마찬가지로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를 통한 남북 문화재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 간의 공동등재 추진 이전에

290) 김덕순,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 사례,” 『문화재』, 제52권 3호 (2019), p. 258.

291) 위의 글, p. 264.

다자 간 공동등재 추진을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남북 양자 간의 협력과 비교하여 다자 간 공동등재 협력은 남북관계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에서의 다자 간 협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남한은 매사냥과 줄다리기의 공동등재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매사냥은 2010년 UAE를 중심으로 남한을 비롯한 18개국이 참여하여 공동등재에 성공하였으며, 줄다리기는 남한을 비롯한 4개국이 참여하여 2015년 공동등재가 결정되었다.²⁹²⁾ 따라서 남한의 이러한 공동등재 경험을 토대로 남북한 및 주변국들 간의 공동의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92) 위의 글, pp. 260~262.

V. 유네스코 공동등재 제도를 활용한 남북 협력 방안



2021년 현재 남한은 세계유산 15건, 인류무형문화유산 21건, 세계 기록유산 16건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²⁹³⁾ 반면 북한은 세계 유산 2건, 인류무형문화유산 3건, 세계기록유산 1건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²⁹⁴⁾

김정은 시대 북한은 적극적으로 민족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2015년 김정은 담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김정은은 이미 등재된 고구려 벽화무덤과 개성 역사유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라의 우수한 물질, 비물질, 자연유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록 활동을 계속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²⁹⁵⁾

남북한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공동등재는 국제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선결해야 할 전제 조건이 없다.²⁹⁶⁾ 다만 공동등재에 대한 남북한의 협력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유네스코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차별화된 의미를 갖는데, 유네스코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주요 업무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²⁹⁷⁾ 이에 남북한 모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를 두고 유네스코와 자국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 현지에는 유네스코 상주대

293) 2021년 7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남한의 세계유산 등재 건수는 2021년 12월 기준 15건임. 문화재청, “유네스코 등재 유산 현황,”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search/statistics-02_08.jsp&mn=NS_03_07_02> (검색일: 2021.6.11.).

294) 세계유산(고구려 고분군/2004, 개성 역사 기념물 및 유적지/2013), 세계기록유산(무예도보통지/2017), 인류무형문화유산(북한의 아리랑/2014, 김치 만들기/2015, 씨름/2018/남북공동). 문화재청, “2020년 북한의 세계유산 현황,”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7651&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 (검색일: 2021.6.11.).

295)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4.10.24.),” 『로동신문』, 2014.10.30., 3면.

296) 조우찬, “북한 김정은시대 문화재정책의 특징: 무형문화유산의 부가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p. 52.

29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개관,” <<https://www.unesco.or.kr/unesco/introduction>> (검색일: 2021.9.16.).

표부를 두고 있어 이를 통한 직간접적인 대화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남북 간 유네스코를 통한 교류협력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²⁹⁸⁾ 이에 유네스코가 제공하는 유산 개념을 중심으로 남북한 상호 간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한이 강조해온 문화유산의 원형 및 전형유지 논의와 북한이 강조해 온 문화유산의 계승 및 현재적 변용 논의 등은 극명하게 다른 두 체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²⁹⁹⁾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1. 법제도적 개선 방안

가. 현황 및 쟁점

해방 이후 70여 년의 문화 단절과 시기별 인식 차이로 인해 남북 간 문화유산 법제도상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생하였다.

첫째, 남북한 모두 문화유산을 나타내는 용어 정의에서 차이가 존재한다.³⁰⁰⁾ 우선, 남한은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여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정의한다. 이에 ‘문화재’를 그 양태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

298) 김명신, “왜 유네스코(UNESCO)인가?”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9.9.).

299) 전진성,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검토,”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9.17.).

300) 유네스코가 사용하는 용어인 ‘문화유산’은 재화적 가치보다는 그 의미(significance)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적 혹은 자산적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문화재’ 용어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용어와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진성,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검토,”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9.17.). 다만 남한의 경우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 문화재의 정의가 4가지 양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문화유산’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통일하여 서술한다.

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³⁰¹⁾ 반면 북한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 민족의 정기와 낮이 깃들어 있으며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민족유산’으로 정의하며 ‘민족유산’을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의 3가지로 구분한다.³⁰²⁾ 또한 남한은 전통문화 계승에 중점을 두고 문화재 개념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를 추구하며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³⁰³⁾ 또한 북한이 추구하는 ‘원상대로 보존’은 남한의 ‘원형 유지’와는 다른 의미로 ‘비판적 계승론’과 ‘주체문예이론에 의한 전통문화계승정책’에 따른 이질화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다.³⁰⁴⁾

〈표 V-1〉 남북한 문화유산 보호법 비교

구분	남한 (「문화재보호법」 2020.6.9. 개정)	북한 (「민족유산보호법」 2018.11.24. 수정)	검토
명칭	문화재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³⁰⁵⁾	민족유산 한 민족이 오랜 력사발전과정에서 이룩하여 후세에 남긴 유산 ³⁰⁶⁾	사전적인 뜻은 유사/공통
목적	제1조(목적)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사명)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 유산을 보호하고 옹계 계승발전시켜 국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 한다.	보존, 계승/공통 활용, 인류문화 기여/남 민족적 자부심 기여/북
정의	제2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 민족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 민족의 정기와 낮이 깃들어있으며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적 민족적 유산/공통 세계적 유산/남한

301)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재보호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undefined>> (검색일: 2021.7.2.).

302) 국가정보원, 『北漢法令集』 下, p. 570.

303) 박상철·김창규,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 pp. 28~29.

304) 남보라·서순복,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p. 219.

구분	남한 (「문화재보호법」 2020.6.9. 개정)	북한 (「민족유산보호법」 2018.11.24. 수정)	검토
구분	<p>유형: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p> <p>무형: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p> <p>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 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시설, 경치 좋고 예술적 가치 크며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민속문화재: 의식주, 상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p>	<p>물질유산: 원시유적,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절그릇 및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역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p> <p>비물질유산: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과 의술, 사회적 관습, 예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업기술과 같은 것</p> <p>자연유산: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강천, 로두와 같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p>	4종류/남한 3종류/북한
소유권		<p>제4조 민족유산은 국가만이 소유 공민은 상속 또는 증여받았거나 전습받은 민족유산을 보관, 리용할 수 있다.</p>	국가 및 개인 소유/남한 국가소유/북한 개인 소유 예외적 인정
기본 원칙	<p>제3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으로 한다.</p>	<p>제5조 주체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일관성 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풍습과 감정정서에 맞게 풀어나가며 민족유산들을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적으로 발굴하고 원상대로 복구 및 복원, 보존관리하도록 한다.</p>	원형 유지/남한 원상대로 보존/북한 선택적 전승과 계승/북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재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검색일: 2021.7.2); 국가정보원 「北漢法令集」 下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30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문화재,”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B%AC%B8%ED%99%94%EC%9E%AC>> (검색일: 2021.6.11.).

306)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 388.

〈표 V-1〉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의 문화유산 정책이 유·무형 유산의 원형 유지 및 보존에 있다면,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은 ‘민족문화정책’의 틀 안에서 민족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유산을 이해한다. 이에 ‘인민적’, ‘건전한’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었다.

둘째, 남북한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및 문화유산 보호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남한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만을 보존해 오다 1970년 「문화재보호법」 제5차 개정을 통해 보유자도 인정하게 되었으며, 2014년 「문화재보호법」 전문개정을 통해서도 보유자가 없는 경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예: 아리랑 등)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5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현재 무형문화재는 개념 및 범주를 7개로 확장·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유물만을 보존하였다. 이른바 제국주의의 문화침투 및 복고주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부정적이었던 북한은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여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개정하여 현재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 문화유산을 관리하게 되면서 남한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의 법률상 문화유산 분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V-2〉와 같다.

〈표 V-2〉 남북한 법률상 문화유산 개념 대조표

구분	남한	북한		비고
법률	문화재보호법	민족유산보호법		-
용어	문화재	민족유산		-
분류	유형문화재	물질유산	역사유적	북한의 ‘역사유적’은 남한의 ‘사적’과 유사 개념
			역사유물	

구분	남한		북한		비고
	무형문화재		비물질유산		무형문화재 개념 및 범주는 <표 V-4>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기념물	사적	자연유산	명승지	천연기념물	남한의 ‘사적’은 자연유산과는 상관 없이 유형문화재 가운데 국보와 보물을 제외, 기념물 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등으로 주요한 것 ³⁰⁷⁾
	명승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		-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p. 18.

<표 V-2>를 보면 남과 북은 법률상 문화유산 분류에서 차이가 발생할 뿐 내용에서 이질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이 문화유산 관련 법률을 수차례 수정·보완하면서 남한의 「문화재보호법」 체계와 유사해진 결과이다. 다만, 현재 법 체제에서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의 전승 부분에서 선별적 계승의 원칙에 따른 우려가 있다.³⁰⁸⁾

셋째, 문화유산 범주의 구분 및 유산 활용에서도 남북 간 차이가 있다. 남한은 ‘무형문화재’를 ① 구전전통 및 표현, ② 전통적 공연/예술, ③ 전통적 생활관습, ④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⑤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계/무예, ⑥ 한의약, 농경/어로 등 전통지식, ⑦ 공연/미술 등 전통기술 등 7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비물질유산’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① 구전전통과 표현, ② 전통예술, ③ 사회적 관습/예식/명절행사, ④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관습, ⑤ 전통수공예 등 5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307) 심승구,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검토,”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9.10.),

308) 이것은 북한식 민요창법, ‘민족악기 개량사업’, ‘조선화’ 등으로 대변된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 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 (서울: 한울, 2006), p. 82, pp. 119~120.

문화유산 활용에 있어서는 남북한 모두 박물관을 두어 국민에게 문화유산 접근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형태와 담당 기관, 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는 다음의 <표 V-3>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표 V-3> 남북한 문화유산 보호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구분	남한	북한	
공통점	각 지역 박물관 설치 문화재의 해외 교류 활성화		
차이점	행정 기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그 외 주관 부처 산하기관	노동당, 문화성
	문화재의 지정 차이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정	물질/비물질 유산: 내각과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 승인 자연유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해당 중앙기관과 합의하고 내각 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 위원회 승인
	박물관 기관 편제 방식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13개 지방박물관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산하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외 지방박물관
	문화재의 활용 목적	민족문화의 계승 및 국민의 문화적 향상,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미풍양속을 잘 알고 민족적근지와 애국심을 깊이 간직하며 민족성을 고수

출처: 동범준, “남북한 문화재 법제도 비교 분석 및 통일한국 시대에서의 문화콘텐츠 활용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문화콘텐츠연구』, 제11호 (2017), p. 162; 국가정보원, 『北漢法令集』 下, pp. 574~579; “새로 등록된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들,” 『로동신문』, 2020.1.5.; 김성룡, “당의 민족유산보호 정책의 정당성 과시,” 『로동신문』, 2018.10.21. 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문화재보호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의 표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남한은 인류사 내지는 세계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북한은 일국사(一國史)적 관점에서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문화유산에 대한 남북한의 법제도적 차이는 전통문화의 동질성으로 인해 향후 한반도 내 정세 변화가 있을 경우,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방안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남북한은 5,000년의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한민족이라는 일체감을 가지며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한 ‘씨름’은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 무형문화이며, 남한의 ‘아리랑’과 북한의 ‘조선민요 아리랑’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개별등재되었으나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 무형문화임을 고려하면 남북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무형문화유산만 놓고 보더라도 남북한 모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범주에 맞게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남한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2012년) 이후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였고(2014년), 북한은 법제도 마련(2012년) 후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였다(2014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체계는 200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 이후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고,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을 채택함으로써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전일적인 체계로 되었으며,³⁰⁹⁾ 이에 남북한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과 남북한 무형문화유산 범주를 비교하면 <표 V-4>와 같다.

<표 V-4>에 의하면, 남한의 무형문화재는 7개 범주로, 북한의 비물질유산은 5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남북한의 무형문화 구분은 서로 같은 범주에 속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남한의 「문화재보호법」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법률 개정 시 주요 제안 사유로 두는 반면,³¹⁰⁾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은 사유재산을

309) 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 p. 12.

310) 2020.6.9. 일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이유는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재보호법,” <<https://>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민족유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였다.³¹¹⁾ 이에 문화재 관련 법제도는 북한에서 더욱 강한 국가 통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남한의 경우는 최소한의 통제에 한정하는 차이가 있다.³¹²⁾ 따라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북한의 법제도 현실 및 입장과 시각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V-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의 범주 비교

명칭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한 무형문화재	북한	
			과거: 비물질문화유산	현재: 비물질유산
정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구전 전통 및 표현	•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언어 • 구전문학	구전 전통과 표현
	공연예술	전통적 공연·예술	무대예술	전통예술
	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행사	• 전통적 생활관습 • 사회적 의식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 무예	• 사회적 전통 및 관습 • 레식과 명절 행사	사회적 관습과 레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공예기술	공연·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로리, 민속놀이 등	전통수공예
범주	5개 범주	7개 범주	7개 범주	5개 범주
근거	「무형유산협약」 (2003)	「무형문화재법」 (2015)	「문화유산보호법」 (2012)	「민족유산보호법」 (2015)

출처 : 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 p. 14.

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undefined (검색일: 2021.6.16.).

311) 제4조(민족유산의 소유권) “민족유산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정보원, 『北漢法令集』 下, p. 570.

312) 최오주,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비교,”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12.), p. 98.

나. 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남북관계의 특성상 남북 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 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현행 법률 간 연계성 및 체계성 확보

남한의 경우 우선, ① 「문화재보호법」 상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제1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② 「세계유산법」 상에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제8조)’에 관한 사항 규정,³¹³⁾ ③ 「남북교류협력법」 상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제5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³¹⁴⁾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문화재청) - 협력 증진(문화재청) - 협력추진협의회 설치(통일부)로 연계되는 국내법적인 토대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7개의 독립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³¹⁵⁾

다만 앞서 언급된 3개 법률의 추진 부처 간 협력체계가 우선적으로 공고화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부 교류협력실이 운영하는 ‘남북교

313)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8%EA%B3%84%EC%9C%A0%EC%82%B0%EC%9D%98%EB%B3%B4%EC%A1%B4%E3%86%8D%EA%B4%80%EB%A6%AC%EB%B0%8F%ED%99%9C%EC%9A%A9%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검색일: 2021.8.11.).

3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8월 제정된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분권형 대북 정책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사업의 주체로 독자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315)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4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2006년); 「문화재보호기금법」(2009년);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0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2011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년) 제정.

류협력 추진협의회’가 남북한 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교류협력 전체에 대한 포괄적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문화유산 교류협력 총괄 및 심의·의결 시 부처 간 이견 및 전문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³¹⁶⁾

북한의 경우는 현 「민족유산보호법」 체계 내에 남한과의 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한 관련 조항이 있으나 남한의 법률과 비교해보면 구체성과 체계성이 떨어진다. 우선, 동법 제14조 ‘민족유산의 공동발굴’에 관한 사항에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필요에 따라 우리 나라 영역 안에서 다른 나라 단체 또는 개인과 고고학적조사, 탐사, 민족유산의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³¹⁷⁾ 또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동법 제30조 ‘민족유산의 세계유산 등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나,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진행”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행정 목표만으로 규정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³¹⁸⁾

다음으로, 현재 북한과 교류 시 남한 내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여하게 되면 적용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이하 「북남경제협력법」)이 있다. 2005년 제정된 「북남경제협력법」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대칭된다고 볼 수 있지만,³¹⁹⁾ 「북남경제협력법」은 제정 이후 변화된 환경과 질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4년 김정은의 민족유산보호사업 관련 담화상에 ‘북과 남, 해외 온 겨레를 하나의 핏줄을 이어가는 후손이자 민족중시의 입장에서 공통된 인식을 가지기 위한 문화유산 관련 학술교류를 많이 할

316) 2021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은 모두 24명으로 이 중 문화재청 내 차관 및 공무원은 없다. 통일부, “제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 보도자료), 2021. 6. 3.,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933>>

317) 국가정보원, 『北漢法令集』 下, p. 574.

318) 위의 책, p. 574.

319) 최은석,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한국공법학회』, 제39권 4호 (2011), p. 353.

데 대한 주문'이 눈에 띈다.³²⁰⁾ 물론 김정은의 담화는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옛 수도 평양과 개성의 유적 유물을 언급한 점이나 단군의 후손이나 단군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계가 있기는 하지만, 역사유적과 명승지에 대한 참관 내지는 관광을 통한 자금 수입 중 일부를 문화유산보호에 돌려야 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현실이나 시각을 고려한다면 법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문화유산교류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남북한 문화재 지정 체계 통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개념을 중심으로 남북 간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한이 강조해온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의 필요성 논의는 북한이 강조해온 문화유산의 계승과 현재적 변용 필요성 논의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재 개념 및 종류의 병기 및 단일화 작업을 통해 유산 관리의 차이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표 V-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문화재 정책상 상이한 개념 및 종류 조정 문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³²¹⁾ 이에 남북통일을 대비한 문화재 관련 도서나 출판물에 남북한의 문화재 용어를 함께 병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용어

320)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4.10.24.),” 『로동신문』, 2014.10.30., 3면.

321) 고태우, “북한의 불교문화재 현상과 관리 정책,” 『북한학보』, 제13호 (1989), pp. 241~242; 박상철·김창규,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 pp. 38~39; 김응환·전영선,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연구,” 『민족학연구』, 제2집 (1997), p. 180; 남궁승태, “북한 문화유물보호법에 관한 고찰,” 『大佛大學校大學院研究論文集』, 2권 1호 (2004), pp. 29~30; 최오주,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비교,” p. 95; 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통일인문학』, 53권 (2012), p. 239; 남보라·서순복,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pp. 195~197; 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 p. 8.

상의 차이 극복과 통일 후 발생될 문화 충돌로 인한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이다.³²²⁾ 또한 포괄적 문화재 지정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상술했었다시피 북한의 문화재 지정은 국보 및 보물급 문화유물과 일반 문화유물의 지정 기관이 상이한데, 이는 남한 문화재청이 일괄 지정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 북한은 박물관마다 문화재 번호를 따로 부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야기되는 혼돈이 불가피하다.³²³⁾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통일된 문화재 지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2. 사업별 추진 방안

가. 현황 및 쟁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이미 이 시대 대표적 국제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있어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2004년 고구려사 왜곡과 같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한 남북한 공조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결성과 활동 전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조사 사업은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 협력 사업으로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기여하는 남북 문화유산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이 되기도 했다.³²⁴⁾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 전반에서 제기되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322) 최오주,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비교,” p. 111.

323) 동범준, “남·북한 문화재 법·제도 비교 분석 및 통일한국 시대에서의 문화콘텐츠 활용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문화콘텐츠연구』, 제11호 (2017), p. 165.

324)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대전: 예송미디어, 2018), pp. 354~355.

첫째,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단속성(斷續性)과 불규칙성이 다. 대표적인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업은 고구려 고분 보존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그 밖의 남북공동 조사 및 발굴사업(개성공업지구 문화유적 조사 및 발굴, 고건축 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 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 남북공동 학술조사, 고구려 유적 남북공동조사, 동북아역사재단의 북한 지역 고구려·발해 유적조사, 개성 한옥 보존사업)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업 중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류는 10년 이상 하나의 유적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한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이다.³²⁵⁾

〈표 V-5〉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 현황

	연도	사업 내용
1	2006	고구려 벽화고분 남북공동실태조사
		북관대대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2	2007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1,2차)
		고구려 벽화고분 남북공동보존사
3	2008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3차)
4	2009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출토유물 보존관리 사업
5	2010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4차)
6	2011	개성 만월대 안전진단 및 수해복구 보존사업
7	2012	만월대 발굴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업데이트
		북한 고구려 벽화고분 국제화사업
		북한 소장 고문헌자료 DB 구축을 위한 표준매뉴얼 구축사업
8	2014	남북 간 문화재 협력 학술회의 및 발굴조사 실무협의
		제6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9	2015	제7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10	2018	제8차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출처: 문화재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p. 273,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28124&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p. 10의 내용을 참조로 저자 작성

325) 위의 책, pp. 10~11.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은 2007년 ‘10·4 선언’이행을 위해 열린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역사유적과 사료 발굴 및 보존을 함께 추진하고,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문화유산 교류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개성 만월대에 대한 발굴조사·복원·보존사업이 추진되었다.³²⁶⁾ 공동 조사 및 발굴은 예술표류나 체육표류처럼 방송 매체에 노출이 적었지만, 사업의 특성상 남북한 전문 인력이 장기간 함께 하는 등의 경험 교류라는 점에서도 주목되었다.³²⁷⁾

이는 타 분야 남북한 학자들의 학술행사와 방송 교류, 전시 등의 일회성 교류에 비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현장’을 공유하면서 진행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교류협력의 지속성에서 장점이 부각되는 동시에 남북 공동 조사 및 발굴이 전문 인력의 관계성 증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조사처럼 장기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도 남북 정치적·군사적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보니 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성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문화유산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축적하여 교류협력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²⁸⁾ 이와 더불어 “남북 협력이 중단된 동안에 북한은 프랑스 극동연구원 등 제3국 연구기관과 문화유산분야 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갔다는 점”은 민족문화유산 관련 교류협력에 있어서 남한의 ‘우선권’이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³²⁹⁾ 즉

326) 위의 책, p. 56.

327) 위의 책, p. 351.

328) 위의 책, pp. 355~356.

329) 위의 책, p. 356.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인해 교류협력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교류협력의 성과 창출 및 분야 확대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둘째,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사업 진행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았다.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는 남북한이 민족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공동의 협력 사업이다. 그동안 진행된 문화교류협력 사업들 중에서 문화유산 관련 교류 현황을 시기별로 보면 <표 V-6>과 같다.³³⁰⁾

<표 V-6> 남북한 문화교류협력 현황: 분야·시기별

분야	1948~ 1989	1990~ 1997	1998~ 2007	2008~ 2012	2013~ 2017	2017~ 2019	합계
언어·문학	-	9	12	2	4	-	27
공연예술	1	6	34	3	1	6	51
시각예술	-	15	34	4	1	5	59
문화산업	1	3	90	2	-	6	102
종교	16	27	47	17	24	7	138
문화유산	-	8	20	2	10	6	46
합계	18	68	237	30	40	30	423

출처: 조현성 외,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2020), pp. 63~6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V-6>를 보면 종교분야 138건(32.6%)과 문화산업 102건(24.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6개 분야 중 문화유산은 46건으로 전체의 10.9%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 진행의 주체를 살펴보면, 남한 단체가 196건(46.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북한 단체가

330) 지금까지의 남북한 문화재 관련 교류는 남북 공동 학술회의 개최, 남북 공동 발굴 조사, 방송 교류·출판 등 기록화·전시 등의 대중 공개 사업, 사찰문화유산 복원, 국외 소재 북한문화재의 반환 등의 사업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사업별로 총 35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위의 책, p. 10.

함께 한 사업이 136건(32.2%)이다. 북한 단체가 직접 주도한 사업은 15건으로 전체 사업의 3.5%에 불과하고, 문화유산 분야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표 V-7〉 참조).

〈표 V-7〉 남북한 문화교류협력 현황: 사업 주체별(1948~2019)

분야	남한단체	북한단체	남북한단체	국제단체	남북한, 국제단체	합계
언어·문학	1	-	11	4	11	27
공연예술	17	7	18	6	3	51
시각예술	41	-	11	2	5	59
문화산업	74	6	16	4	2	102
종교	48	2	60	27	1	138
문화유산	15	-	20	3	8	46
합계	196	15	136	46	30	423

출처: 조현성 외,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 65.

〈표 V-7〉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역대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업 주체별로 구분지어 봤을 때 ① (남) 민간단체-(북)단체, ② (남) 민간단체-(제3국) 민간단체-(북)단체, ③ (남) 민간단체(사업추진)+정부(전문인력, 기술지원)-(북)단체, ④ (남) 정부-국제기구-(북)단체의 형태로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되었다.³³¹⁾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남한의 경우 다수의 민간단체들이 과도한 경쟁을 벌인 반면, 북한은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민족화해협의회로 창구를 일원화해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사업 운영 전반에서 북한이 남한에 비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였다.³³²⁾ 이와 더불어

331) 조은경, “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 사업 체계,” 『2020년 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2기)』, p. 34.

어 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 정부와의 정부 간 사업 진행 구조보다는 남한 민간단체와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호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문화교류협력 사업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다.³³²⁾ 결국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이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 간 공동의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여 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분단으로 인한 연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기존 문화유산 관련 교류사업은 대부분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와 관련되었거나 수도였던 평양 및 개성과 그 주변 유적 발굴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의 경우 한민족 역사 중 특정 왕조에 비중을 두지 않는 반면, 북한은 북쪽에 위치한 왕조에 정통성을 두고 이른바 ‘계승해야 할’ 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 연구 집단 간 학문적 교류의 장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의 기본 조건인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재를 신청하려는 문화유산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학술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등재 신청국가가 제공하는 학술적 연구 결과물은 세계유산위원회가 해당 유산의 등재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 참고자료가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 채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 간 문화재 관련 학술 교류의 장을 넓혀야 하는 것이다.³³⁴⁾

332) 하문식,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 『정신문화연구』, 제30권 1호 (2007), p. 302.

333)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p. 357.

334) 문화재청, 『세계유산협약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대전: 문화재청, 2018), pp. 39~40.

따라서 북한의 대표적인 문화재 연구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³³⁵⁾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³³⁶⁾ 민속학연구소,³³⁷⁾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민족고전학과³³⁸⁾ 조선민속박물관 등과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계승해야 할 문화유산을 논의하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 제도에 부합하는 유산을 함께 준비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은 북한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남한의 일방적인 지원 형식의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비록 남북관계의 특성에 따라 교류협력의 시작은 일방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더라도 최종 지향점은 남북한 사이의 균형 있는 교류와 협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균형적 역할에 남북 공동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는 분명 그 해답이 될 것이다.

나. 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사업 추진 방안

2021년 9월 현재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건수로 보면 남한은 52건, 북한은 6건이다. 남북 간 등재 건수의 차이를 떠나서 남북한 모두 2000년대 이후 세계유산 등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표 V-8> 참조).

335)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고고학연구성과,” 『로동신문』, 2020.9.8.

336) “문화유산들을 통해 본 우리 민족의 우수성,” 『로동신문』, 2017.11.5.

337)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과 관련한 연구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2016.10.25.

338) “당의 민족유산보호 정책관철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성과,” 『로동신문』, 2017.3.22.

〈표 V-8〉 남북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현황

구분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한국 (52건)	15건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95.12.9.) 창덕궁, 화성('97.12.6.)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00.12.2.)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07.7.2.) 조선왕릉('09.6.30.) 한국의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10.7.31.) 남한산성('14.6.25.) 백제역사유적지구('15.7.8.)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18.7.4.) 한국의 서원('19.7.10.) 한국의 갯벌('21.7.26.)	21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01.5.18.) 판소리('03.11.7.) 강릉단오제('05.11.2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09.9.30.) 가곡, 대목장, 매사냥 ('10.11.16.) 택견, 줄타기, 한산 모시짜기 ('11.11.29.) 아리랑('12.12.5.) 김장문화('13.12.5.) 농악('14.11.27.) 줄다리기('15.12.2.) 제주해녀문화('16.11.30.) 씨름('18.11.26.) 연등회('20.12.)	16건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97.10.1.)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01.9.24.)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07.6.14.) 동의보감('09.7.31.) 일성록, 5.18관련기록물 ('11.5.25.)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13.6.18.)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의 유교책판('15.10.9.)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통신사기록물('17.10.31.)
	북한 (6건)	2건 고구려 고분군('04) 개성 역사 기념물 및 유적지('13)	3건 북한의 아리랑('14.11.27.) 김치 만들기('15.12.2.) 씨름('18.11.26./남북공동)

출처: 문화재청, “2020년 유네스코유산 등재 및 등재현황(2020년 6월 30일 기준),”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77649&bbsId=BBSMSTR_1045&pageUnit=10&searchCnd=&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mn=NS_03_09_01&searchSiteCd=> (검색일: 2021.6.18.); 문화재청, “2020년 북한의 세계유산 현황(2019년 7월 31일 기준),”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77651&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 (검색일: 2021.6.18.); 문화재청,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79809&bbsId=BBSMSTR_1002&mn=NS_01_03> (검색일: 2021.8.17.)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통한 남북한 문화유산 협력 사업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 초기 준비 과정부터 남북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는 등재 신청 국가가 원하는 시점에 심사와 등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정하는 시기별 절차를 등재 신청국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등재 절차를 확인하고 남북한이 협력을 할 수 있는 항목과 시점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유산 신청 시 등재 신청 문화유산은 당사국 목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최소 1년 전에 잠정목록이 제출되어야 한다(〈표 V-9〉 참조). 따라서 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남북한 협력 사업은 유네스코 등재 규정을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표 V-9〉 세계유산 잠정목록 절차와 양식

절차	양식	
1단계	각 당사국이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대상 • 자국 영토에 위치한 유산 • 유산의 상세한 정보를 자국의 잠정 목록에 포함	신청 유산이 당사국의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계유산 목록 등재 신청서는 검토되지 않음.
2단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관리자의 참여 사전 인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대표 기관과 성실히 협의, 협력	신청서 최소 1년 전 잠정목록을 제출 10년에 한번 재검토해 다시 제출
3단계	표준양식을 사용해 명칭, 지리적 위치, 간략한 설명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근거를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	정식 서명한 완성된 잠정목록을 제출
4단계	세계유산센터는 해당 서류가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잠정목록의 요약본은 매년 위원회에 제출	세계유산센터는 잠정목록의 투명성, 정보접근성을 보장, 지역과 주체 차원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홈페이지 또는 실무문서에 공개

출처: 문화재청,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pp. 45~47.

(1) 미래지향적 과제 선별

(가) 한반도 월경유산 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금강산 역사유적지구’

남북한 문화유산의 공동등재는 유산의 문화적 공유와 더불어 지속적인 남북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등재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기 수월한 유산부터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남북한 문화 유산의 잠정목록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V-10>과 같다.

<표 V-10> 남북한 세계유산 잠정목록

구분	남한 잠정목록 (2020.12.31. 기준) ³³⁹⁾	북한 잠정목록 (2019.7.31. 기준) ³⁴⁰⁾
1	강진 도요지	묘향산과 역사유적지구
2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평양 역사유적지구
3	남해안일대 공릉 화석지	금강산 역사유적지구
4	염전	구장지역의 동굴
5	대곡전암각화군	칠보산
6	중부내륙산성군	
7	우포늪	
8	외암마을	
9	낙안읍성	
10	한양도성	
11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12	가야고분군	

출처: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20』 (대전: 문화재청, 2020), p. 16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8820&bbsId=BBSMSTR_1020&pageIndex=1&pageUnit=10&searchCnd=&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mn=NS_03_07_04> (검색일: 2021.9.23.); 문화재청, “2020 북한의 세계유산 현황,” <[> \(검색일: 2021.6.11.\).](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7651&bbsId=BBSMSTR_1045&pageUnit=10&searchCnd=&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mn=NS_03_09_01&searchSiteCd=)

339)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잠정목록에는 ‘서남해안 갯벌’이 포함되어 모두 13건으로 되었으나, 2021년 7월 ‘한국의 갯벌’로 등재되어 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20』, p. 16,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8820&bbsId=BBSMSTR_1020&pageIndex=1&pageUnit=10&searchCnd=&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mn=NS_03_07_04> (검색일: 2021.9.23.).

340) 문화재청, “2020 북한의 세계유산 현황,” <[> \(검색일: 2021.6.11.\).](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7651&bbsId=BBSMSTR_1045&pageUnit=10&searchCnd=&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mn=NS_03_09_01&searchSiteCd=)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는 등재 유산에 대해 “한 국가의 영토 내에, 혹은 관련된 모든 국가의 영토 내에 존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 영토에 걸쳐있는 유산을 월경유산, 혹은 접경 지역유산(transboundary properties)으로 명명하고 있다.”³⁴¹⁾

남한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북한의 ‘금강산 역사유적지구’는 한반도 내 대표적인 ‘월경유산’으로 현재 남북한의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공동유산 신청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다.

〈그림 V-1〉 월경유산: 금강산 국립공원과 설악산 국립공원



출처: 강원연구원, “금강산·설악산의 세계복합유산화와 남북 강원도, 제711호” (남북 교류협력 시리즈X, 2018.9.28), p. 6.

설악산과 금강산은 남북한 경계에 위치하여 그 소유가 남북한 한 곳으로 단정 짓기에도 어려우며, 과거 금강산 관광을 통해 남북한이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루어낸 경험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여러

34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Q. 세계유산은 꼭 한 나라에만 속하는 것인가요?” <<https://heritage.unesco.or.kr/%EB%A3%A3%B8%EC%84%9C%EC%9E%90%EB%A3%8C/?mod=document&uid=15>> (검색일: 2021.9.30.).

국가 간 공유된 유산이 각 국가 내 보존 수준이나 보호 조치 외에도 국가 간 문화적 교류에 기여해야한다는 점에서 해당 목록은 남북한의 공동유산으로 등재하기에 적합하며,³⁴²⁾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가지고 오는 경제적 이익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유산 등재 추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과 금강산이 남북한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월경유산’ 신청을 위해서는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관련 국가들의 공동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체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³⁴³⁾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 등재 추진을 위한 남북한 문화재 기관 및 학자 간의 교류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남북 공동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앞서 언급된 북한의 대표적인 문화재 연구기관들과 잠정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수준, 다양한 관련 정보 공유, 공식명칭 지정 등 등재를 위한 서류 작성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설악산과 금강산을 매개로 한 문화교류협력의 확대와 상호 방문 및 다양한 인적 교류를 위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설악산과 금강산의 유네스코 월경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설악산과 금강산이 가지는 문화유산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유산 등재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의 협력과 유산 등재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남북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

342) 권재범,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의의와 성패요인에 대한 연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화교류의 역할 공동학술회의』 (학술회의 자료집, 2021.9.10.), p. 117.

34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Q. 세계유산은 꼭 한 나라에만 속하는 것인가요?” <<https://heritage.unesco.or.kr/%EB%AC%B8%EC%84%9C%EC%9E%90%EB%A3%8C/?mod=document&uid=15>> (검색일: 2021.9.30.).

를 실질적으로 장악·지도하는 북한 내각 산하의 ‘국토환경보호성’과 ‘문화성’,³⁴⁴⁾ 문화재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조선역사학회, 김일성종합대학의 고고학강좌, 문화유적관리소 그리고 남한과의 문화재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민화협 등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나) 한반도 월경유산 2: ‘한반도 DMZ’

설악산 및 금강산과 더불어 남북한의 또 다른 ‘월경유산’으로는 ‘한반도 DMZ’가 있다.

남한은 DMZ의 공동등재가 남북 간 소통의 확대와 교류협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는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킬로미터, 남북으로 4킬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GP, 철책선 등 분단의 상징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역사적 공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해 DMZ가 가지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강조했다.³⁴⁵⁾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DMZ를 세계가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정의하고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³⁴⁶⁾

344) U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53,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345) 대통령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상)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20), p. 360.

346) 위의 책.

이후 문화재청은 2019년과 2020년 십여 차례에 걸쳐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국내외 연구네트워크를 구축, 비무장지대의 보존 방안과 활용 방안, 나아가 남북 문화유산 전반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³⁴⁷⁾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2021년 문화재청 주요 업무계획에서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고 세계유산으로의 가치 홍보에 유네스코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³⁴⁸⁾ 실제로 문화재청은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를 위해 파주 대성동 고고탐사 및 시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DMZ 일원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지정·등록 현황 검토 및 보호 체계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³⁴⁹⁾

결국 남한이 인식하는 DMZ의 가치는 전쟁의 참상과 분단의 현실적 아픔을 전달하고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포괄하는 것이다. 물론 DMZ의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의 실현을 위해서는 DMZ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관련 회의 및 워크숍, 결의안 채택 등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이보다 먼저 북한이 DMZ에 대한 과거의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가능하다.

북한이 인식하는 DMZ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민족-분단/통일-분열과 같은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남한이 분단을 고착화하고 민족간 증오심을 조성하기 세운 대표적 상징물이다. 즉 DMZ는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해 동서를 가로지르는 분단선, 거기에서도 일명

347) 심승구, “DMZ 세계유산 등재 논의 성과와 과제: 남북 문화유산 정책포럼을 중심으로,” 『국제문화예술』, 제1권 1호 (2020) p. 8.

348) 문화재청, “2021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p. 11,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9885&b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 (검색일: 2021.8.20.).

349)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구체화,” 『인천일보』, 2021.3.2.,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1984>> (검색일: 2021.10.7.).

하지만 DMZ가 설악산 및 금강산과 같은 유형의 ‘월경유산’이라고 하더라도, DMZ의 현황과 유산적 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단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DMZ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사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유산의 공동등재와는 다른 수준의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

(다) 한민족 연속유산: ‘한반도 역사지구’

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연속유산(serial properties)’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연속유산’이란 “지리적으로 서로 접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유산지를 포함한 문화/자연 유산을 말하는 것으로, 연속유산으로 묶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들이 같은 역사·문화적 집단에 속하거나, 지리적 구역의 특성을 공유하거나, 같은 지질학·지형학적 구조를 지니거나, 같은 생물지리학적 지역 혹은 생태계 종류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⁵¹⁾ 이는 시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는 문화유산이 하나의 흐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에게는 문화유산 교류협력 중 가장 유망한 분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을 ‘(가칭)한반도역사지구’로 하여 남한 지역의 ‘백제역사유적지구’, ‘경주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에 대해 북한이 공동유산 신청을 하고, 북한 지역의 ‘고구려역사유적지구’, ‘개성역사유적지구’에 대해 남한이 공동유산 신청을 하면서 우리민족의 유적지를 ‘공동유산화’시키는 작업은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임을 세계에 알리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틀을 만들

35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상식,”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45/550/page/0> (검색일: 2021.9.30.).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동유산화’ 사업은 남북한 공동유산을 축으로 한 남북한 국제기구 공조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한반도 ‘전승유산’

남한의 「무형문화재법」 제3조 기본원칙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³⁵²⁾ 이는 무형유산이 유형유산에 비해 공동체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가변적인 특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무형유산의 기원과 원형이 갖는 가치와 원형에서 파생된 변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³⁵³⁾

무형유산의 경우 남북한이 공유하는 사례와 범위가 매우 넓고, 남북한 모두가 법제를 통해 무형유산의 원형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적극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교류협력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³⁵⁴⁾ 향후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할만한 것은 북한에서 만들어져 남한으로 전승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것이다(〈표 V-11〉 참조).

35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문화재법)」(시행 2021.6.23. 법률 제17708호, 2020.12.22., 일부개정), 제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23&lsiSeq=224585>> (검색일: 2021.10.1.).

353) 전진성,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검토,”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9.17.).

354) 신현욱·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국민요학』 제41호, (2014), p. 139.

〈표 V-11〉 남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북한 무형문화유산

무형유산 명	지정 현황	원천 지역	남한 전승지	남한 관리단체
봉산탈춤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	서울	봉산탈춤보존회
강령탈춤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	서울	강령탈춤보존회
은율탈춤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	인천	은율탈춤보존회
북청사자놀음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	서울	북청사자놀음보존회
꼭두각시놀음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장연	서울	남사당놀이보존회
서도소리 배뱅이굿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황주	서울	배뱅이굿보존회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중요무형문화재 제82-2호	해주, 웅진	인천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
황해도 꽃맞이굿	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제24호	황해도	인천	황해도굿보존회
돈돌날이	이북5도 함경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신포, 북청	서울	북청민속예술보존회

출처: 신현옥·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국민요학』 제41호, (2014), p. 141.

북한 해서지방(현재 황해도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가면극을 총칭하여 ‘해서탈춤’이라 하는데, 해서탈춤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위축되면서 1930년대 쇠퇴하더니 6·25전쟁을 기점으로 맥이 끊기게 되었다. 해서탈춤은 6·25전쟁 이후 황해도 사리원에서 월남한 김진옥과 민천식 등에 의해 서울에서 복원이 이루어지고 ‘봉산탈춤(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강령탈춤(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은율탈춤(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등으로 세분화 되어 보존 및 전승되어 오고 있다.³⁵⁵⁾

355)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해서탈춤,”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6459>> (검색일: 2021.10.2.).

‘북청사자놀이’은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정월 대보름에 하는 탈놀이인데 6·25전쟁 당시 월남한 놀이꾼들이 1960년 ‘북청사자놀이 보존회’를 만들어 북청사자놀이를 보존 및 전승하게 되었고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³⁵⁶⁾ 이외에도 북한 황해도 지역의 ‘꼭두각시놀이’, ‘서해안 배연신굿과 대동굿’, ‘황해도 꽃맞이 굿’ 등은 각각 중요무형문화재와 인천시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및 전승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만들어져 남한으로 전승되어 온 무형문화재는 남한에서 중요무형문화재와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각각 전해져 오고 있다.”³⁵⁷⁾

남한은 2020년 2월 ‘한국의 탈춤’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³⁵⁸⁾ 제출 당시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 북청사자놀이 4가지와 탈춤 9가지를 포함하여 총 13가지에 한하여 2022년 등재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³⁵⁹⁾ 탈춤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서둘러 유네스코 유산으로 인정받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등재 신청을 한 탈춤 중 상당수는 북한에 기원을 둔 탈춤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력 하에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역에서 만들어져 남한에서 보존 및 전승된 무형유산을 함께 유네스코 유산에 공동등재하는 사업은 “남한 전승 북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사업이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원 창조자인 북한으로 재전승한다

356)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북청사자놀이,”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4079>> (검색일: 2021.10.2.).

357) 신현욱·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적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방안,” p. 140.

358)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20』, p. 21,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8820&bbsId=BBSMSTR_1020&pageIndex=1&pageUnit=10&searchCnd=&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mn=NS_03_07_04> (검색일: 2021.9.23.).

359) 심승구,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검토,”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9.10.).

는 의의뿐만 아니라 남북한 협력을 통해 이들 무형유산을 공동 보존·활용하여 후대에 전해줄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³⁶⁰⁾

하지만 북한의 경우 무형문화유산은 실제로 전승실태와 여건, 전승자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남한의 무형유산처럼 유산이 목록화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³⁶¹⁾ 따라서 각각의 무형유산을 남북한이 유네스코에 공동등재하는 과정과 병행하여 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에 관련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및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남북 공동학술토론회, 장관급 회담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협의서 채택 등으로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2) 대내외적 추진 체계 구축³⁶²⁾

(가) 국내 협력 체계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를 통한 문화재 협력 사업이 추동력을 갖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국내 협력 체계 구축은 중장기적으로 문화재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관리와 협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전담기구 설립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협력 체계의 기본방향은 정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남북 문화유산 협력 여건을 조성하는 협업적 체계 구축이다.

360) 신현욱·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p. 139.

361) 심승구,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검토,”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9.10.),

362) 위의 글.

협업 체계 구축 초기,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 사업의 구상을 추진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은 정부(국책연구원 포함)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이후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에는 민간의 역량이 발휘되도록 민관협업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유산 관련 사업 추진협의체 내에는 유관부처,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을 포괄하여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안을 수렴·보완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에 의하여³⁶³⁾ 2019년 3월 8일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이하 사업단)’을 문화재청 산하에 신설하였으며 ‘남북 문화유산 정책포럼’도 출범하였다. 사업단은 민족 공동유산인 북한 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남북 간 협력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남북 문화재 교류를 위해 문화재청 차장을 단장으로 출범하였고, 구체적으로 사업단은 “남북 문화재 교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DMZ 내 역사유적 공동조사와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다양한 남북 문화재 교류와 체계적 추진을 위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³⁶⁴⁾

이에 해당 사업단을 관계부처·기관(연구기관 전문가 포함)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문화재청, 통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가칭)남북 문화유산협력 기획추진단’(이하

363)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① 국가는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64) 문화재청, “문화재청, 남북문화재 교류 및 협력사업 본격 시동: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신설 및 8일 남북 문화유산 정책포럼 출범,”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9.3.7.,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1268&sessionId=b_sec_1&mn=NS_01_02> (검색일: 2021.10.1.).

기획단)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남북 문화유산 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 기획단은 정부 부처 협의체, 국책연구기관협의체, 지자체협의체 등의 하부조직을 구성하여 ‘남북한 문화유산 공동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나) 남북 협력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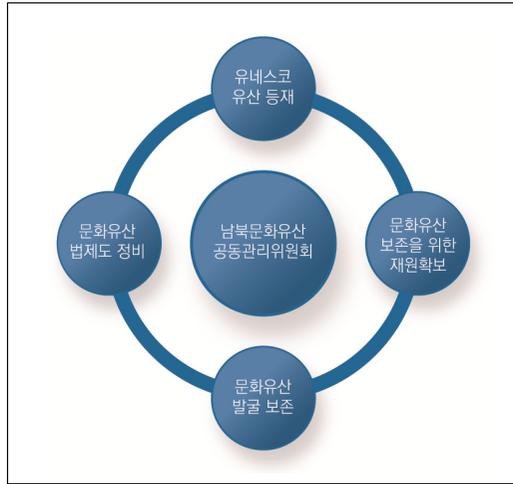
남북 협력 체계의 기본 방향은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 추진 등 남북문화유산협력 구상에 대한 총괄 및 포괄적 공동연구와 함께 분야별 협의를 병행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의하면 ‘관련 당사국에는 월경유산 전반의 관리를 감독할 공동 관리위원회나 유사 기구 설치가 권고된다’고 명기하고 있다.³⁶⁵⁾ 따라서 남한 내 거버넌스 형태로 구축된 기획단을 확대하여 북한과 ‘(가칭)남북 문화유산 공동 관리위원회’(이하 공동 관리위)로 합의·신설하는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공동 관리위 단장은 국책연구기관장으로 하고, 남북 양측이 각각 연구·조사에 필요한 정부·민간(전문가) 인원으로 구성한다.³⁶⁶⁾ 공동 관리위는 우선 남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함께 발굴·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추진한다. 아울러 남북 문화유산을 함께 발굴·보존하기 위한 법제도를 함께 정비하여 문화유산 관련 공동 협의서 또는 협정을 맺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남북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금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365) 문화재청,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2019.7.10.)』, p. 77.

366)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해 분야별 실무 연구그룹 별도 운영, 동 연구그룹은 해당 과제 담당부처 실무자,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 인원은 양측 협의하 구성할 수 있다. 이점호,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검토.” (통일연구원 최종보고회 자료, 2021.10.14.).

〈그림 V-3〉 남북 문화유산 공동 관리위원회 기능



출처: 저자 작성

공동 관리위 설립을 위해서 첫째,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를 통한 인프라 구축, 유관부처와 정책 공유 및 회담을 통한 대책 수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관련 공동연구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남북관계 재개 시 추진될 남북고위급 회담과 분야별 실무회담에서 공동 관리위의 기능 및 역할 그리고 문화유산 협력 체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공동 관리위에서는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와 문화유산 협력 관련 주요 의제(분야)별로 분과협의·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를 고위급회담에서 총괄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남북 간 합의하도록 한다.

공동 관리위와 같은 남북 협력 체계 구축은 ‘공동연구 및 현지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착수’의 단계적 방식을 제도화시켜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협력과 문화유산 전반에 걸친 협력을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 국제 협력 체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사업의 진행은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의 활용을 통해 간접적인 협력의 공간을 만들고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가는 노력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 추진 사업 자체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제에 해당, 남북 문화유산 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유네스코라는 국제적 다자의 틀을 활용할 경우 남북 간 정치적 상황 변화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인 사업을 계획·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를 적극 증재할 정도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심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 남북 간 교류의 도구로 유네스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남북 문화유산 협력 등 한반도 평화문화 확산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및 주변국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로 신규 신청하는 다자 간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³⁶⁷⁾ 그 예로 각궁과 옷칠이 있다.

각궁은 나무와 뿔을 합성한 합성궁(composite bow) 종류의 활로 씨 제식무기 혹은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³⁶⁸⁾ 한국과 북한, 몽골, 그리고 더 나아가 터키 등 주로 북방 민족 및 국가 등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산이다. 옷칠은 옷나무의 진을 그릇이나 가구 등에 바르는 일을 말하며 물건에 바르면 검붉은

367) 김덕순,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 사례,” p. 265.

368) 나무위키, “각궁.” <<https://namu.wiki/w/%EA%B0%81%EA%B8%81>> (검색일: 2021.10.2.).

색을 띠고 윤기가 나는 특징이 있다.³⁶⁹⁾ 옷칠은 한국, 북한,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공유하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각공과 옷칠과 같이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공유하는 문화유산의 발굴 및 공동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ICOMOS, 세계유산센터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그림 V-4〉 각공 & 옷칠장



출처: “‘쇠힘줄 파동’ 전통활 보급 중단되나,” 『연합뉴스』, 2012.10.9., <<https://www.yna.co.kr/view/AKR20121009154400007>> (검색일: 2021.8.23.); 문화재청 국가유산포털, “옷칠장,” <http://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_kdcd=&s_ctcd=35&ccbaKdcd=22&ccbaAsno=00130000&ccbaCtcd=35&ccbaCpno=2223500130000&ccbaLcto=ZZ&culPageNo=1&header=region&pageNo=1_1_2_0&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RegionList.do&assetname=>> (검색일: 2021.8.23.).

또한,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중국의 문화역사 왜곡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당시 북한과 중국,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잠정목록에 올라있는 백두산 유산, 홍산 문화유산, 그리고 중국이 주요 유적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발해 유산의 경우 향후 중국이 등재 신청을 한다면 유산의 귀속과 정체성을 둘러싸고 국가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 시스템을 고려할 때 중국 영토 내에 있는

369) 위키백과, “옷칠,” <<https://ko.wikipedia.org/wiki/%EC%98%BB%EC%B9%A0>> (검색일: 2021.10.2.).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을 막고 협력을 강조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보편적 차원에서 ‘관련국 간의 협력 필요성’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북한이 중국의 세계유산 등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백두산 유산의 경우 ‘월경유산’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월경유산’ 등재를 위한 관련국 간의 협력 필요성이라는 논리는 유산의 귀속을 둘러싼 갈등을 다자 간 협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실무자 간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또한 발해유산의 경우에도 일국의 범위를 넘어서 존재하는 ‘초국적 유산(transnational heritage)’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국인 북한(청해토성 및 함북 청진), 러시아(크라스키노성) 등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동북아 고대사 논의의 틀을 만들고 북한 내 발해 유적 발굴 및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여러 국가에 걸쳐있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문가,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의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한반도(남북) 문화유산 국제협력포럼’을 설립하고, 포럼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북한에서 실시된 고대사 연구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남북 문화유산 협력의 비전을 주변국들과 공유하여 향후 문화유산 협력을 한반도 범위에서 지역적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럼에서 ‘(한반도)남북 문화유산 협력구상’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위한 물질·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협력의 틀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단계별 추진 방안

가. 단계별 추진 필요성

최근 들어 남북한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공동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는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유력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남북 간 발전적인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문화유산교류 관련 단계별 추진 방안이 언급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① 제한적 복원단계, ② 활성화 단계, ③ 안정화 단계로 구분하거나,³⁷⁰⁾ ① 기반조성단계, ② 교류협력단계, ③ 사업다각화 모색단계, ④ 정책 및 대안 모색단계 등으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⁷¹⁾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교류를 포함한 사회문화 교류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 교류협력 분야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의 정세변화에 따른 시기 구분을 하지 않고 초기, 중기, 장기 등 3단계의 단계별 문화유산 교류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협력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경험을 가진 상태에서 재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남북한 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협력 사업추진을 통한 상호 신뢰의 회복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남북한 문화유산 공동등재라는 협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라는 원칙 아래 범정부차원에서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370) 조은경, “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 사업 체계,” 『2020년 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2기)』, p. 38.

371)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문화재』, 제50권 2호 (2017), p. 104.

나. 단계별 추진 방안

(1) 1단계(초기)

1단계(초기)는 남북 간의 신뢰와 회복, 대북제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문화유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남북 협력 사업의 기반을 재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공동등재라는 협력 필요성에 부합되는 사업과 남북한이 각기 단독등제한 문화유산 중에서 선별된 미래지향적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시기 가능한 사업은 <표 V-12>와 같다.

<표 V-12> 1단계 협력 내용

구분	사업	내용
1단계	과제 협력	낮은 수준의 정보 교류
		학계 학자, 전문 인력 방문 및 교류
		한반도 역사지구 등재를 위한 남한 내 준비
	감독 관리기구	문화유산 전문 기관 방문
국제 협력	문화유산 분야 국제 협력 체계 구축	

출처: 저자 작성

1단계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기대효과는 첫째, 분단 이후 70여 년의 사회문화적 단절 상황에서 문화유산 관련 교류의 시작을 통해 남북 주민 간 화해와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 둘째, 우리 민족 고유의 정체성 회복을 통해 중국의 ‘문화 예속화’ 작업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가능하다. 셋째,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에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2) 2단계(중기)

협력의 2단계(중기)는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 단계이다. 앞서 소개한 기존의 유산을 매개로 한 협력과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는 기획단 설립을 토대로 유엔사의 협조를 얻어 DMZ 현황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남한의 재원을 투입한 문화유산 분야 대북 지원 사업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일방적 지원보다는 남북 상생의 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시기 가능한 사업은 <표 V-13>과 같다.

<표 V-13> 2단계 협력 내용

구분	사업	내용
2단계	과제 협력	신청서 작성을 위한 방향 명칭 등의 높은 수준의 대화
		문화유산 관련 학자 및 전문 인력 간 학술회의 워크숍을 남북한 지역에서 개최
		DMZ 논의를 위한 준비위원회 창설
		한반도 역사지구 등재를 위한 준비
관리기구	전담 기관(공동 관리위) 설립 논의 활성화	
국제협력	문화유산 분야 국제 협력 체계 가속화	

출처: 저자 작성

2단계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기대효과는 첫째, 북한이 수용 가능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협력이 가능해지면서 남북한의 소프트파워를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공동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 역시 자연스럽게 조성되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관리체계 부족으로 인해 북한 지역 유적지의 파괴 및 최근 연이은 홍수위기에 따른 유적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물질적 지원이 이루어져 북한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3) 3단계(장기)

협력의 3단계(장기)는 남북 문화유산 협력이 성숙하여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해 유네스코 공동등재 절차를 밟아 나가고 이후 보존과 운용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위한 틀을 정하고 보존 및 운용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등재 과정이 제도적으로 운용되고 문화유산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표 V-14〉 3단계 협력 내용

구분	사업	내용
3단계	과제 협력	공동등재 신청
		법제도적 안정화 추구
		DMZ 논의를 위한 양국 전문가 답사
		한반도 역사지구 등재 신청
	관리기구	전담 기관 공동 관리위 운용
국제협력	문화유산 분야 공동등재 범위 확대	

출처: 저자 작성

또한 3단계에서는 남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의 축적과 협력이 진전되어 남북 간 합의가 도출되는 동시에 실제로 이행되고, 문화유산 관련 자문기구는 발굴된 유산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 남북 공동의 전문기구로 전환 운영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 문화재의 유네스코 공동등재가 가져올 성과는 남북 모두의 이익으로 교류와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서술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남북한 문화재에 대한 교류협력이 지속되려면 법체계 및 제도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북한 당국이 문화유산 관련 법체계의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의

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련한 법체계 정비 사업을 통한 질적 고도화 제안 등을 장기적 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표 V-1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 협력 방안

비전	지속가능한 남북 문화유산 교류와 민족공동체 회복		
목표	남북한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공동등재 제도를 활용한 새로운 교류시도		
기본방향	1.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의 정세변화에 따른 추진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고려 2. 단절된 경험을 가진 상태에서 재추진되는 사업으로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분야에 우선 집중		
단계별 원칙	1단계: 초기 미래지향적 과제 중심 협력 성과 확대	2단계: 중기 남북 상생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3단계: 장기 교류협력 사업 정례화 및 제도화
1단계 실행방안	과제 협력 관리기구 국제협력	• 낮은 수준의 정보 교류 • 학계 학자, 전문 인력 방문 및 교류 • 한반도 역사지구 등재를 위한 남한 내 준비 • 문화유산 전문 기관 방문 • 문화유산 분야 국제 협력 체계 구축	
2단계 실행방안	과제 협력 관리기구 국제협력	• 신청서 작성을 위한 방향 명칭 등의 높은 수준의 대화 • 학자/전문 인력 간 학술회의 워크숍을 한반도 내 개최 • DMZ 논의를 위한 준비위원회 창설 • 한반도 역사지구 등재를 위한 준비 • 전담 기관(공동 관리위) 설립 논의 활성화 • 문화유산 분야 국제 협력 체계 가속화	
3단계 실행방안	과제 협력 관리기구 국제협력	• 공동등재 신청 • 법제도적 안정화 추구 • DMZ 논의를 위한 양국 전문가 답사 • 한반도 역사지구 등재 신청 • 전담 기관 공동 관리위 운용 • 문화유산 분야 공동등재 범위 확대	
추진 체계	• 정부-민간 협력 체계 • 남-북 협력 체계 • 국제사회 협력 체계		

3단계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기대효과는 첫째, 문화유산의 공동등재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가 같은 토대 위에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다. 둘째,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남북한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셋째, 남북 문화유산 공동등재가 국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관광객 증가 및 관광 수입 등 직간접적으로 남북 지역 경제에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VI. 결론



한 국가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은 해당 국가 및 민족의 문화적 우수성과 국력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의 공동등재의 경우, 지역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기도 하다.

2018년 씨름의 유네스코 유산 남북 공동등재는 남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의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북 공동등재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최근 김치나 한복 등과 관련해 중국과의 문화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남북 간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울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문화재 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 가능한 교류협력 분야가 유네스코 제도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 협력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이와 관련한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유네스코 유산 등재 과정과 의미, 남북 유네스코 유산 등재 관련 협력 사례, 그리고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협력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첫째, 북한은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문화유산’ 혹은 ‘민족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족유산을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그리고 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문화유산이 역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질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유물’과 ‘유적’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보호 및 관리해왔으며, ‘고구려 중심주의’, ‘평양 중심주의’, 그리고 ‘계급적 관점’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에서 문화유산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93년 김 일성의 교시 이후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이 채택되면서부터이다. 당시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적 체계가 이루어졌기는 했지만 여전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는 ‘물질유산’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체계는 김정은 집권 이후 본격화 되는데,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의 채택을 통해 보호 대상을 기존 ‘물질유산’에서 ‘비물질유산’까지 확대하였고 2015년에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유산 등록 관련 조항이 명기되었다.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체계는 문화성 산하 ‘민족유산보존위원회’에서 문화유산 관리 및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문화유산의 수집, 평가, 등록, 관리, 이용 등의 계획 수립, 심사, 허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문화유산 조사, 발굴, 복원 등과 관련한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민족유산 보호지도국’과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기능과 편제는 우리의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체계와 유사하다.

둘째, 국제사회는 1972년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며 유·무형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였고, 유네스코는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주를 크게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으로 구분 짓고 있다. 유네스코 유산의 등재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접수,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결정 순으로 이루어지며 세계유산의 경우 약 16~17개월,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약 15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가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해당 국가에게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

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이후 관광객 증가로 인해 문화유산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유산 등재가 파생시키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한다.

한편 유네스코는 하나의 문화유산을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경우 문화유산의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월경유산’에 대한 공동등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신청서 작성 이전부터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해당 유산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관점을 조율하기 때문에 단독등재의 경우보다 다양하고 깊은 협력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는 등재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고 협력의 당위성을 강화시키며 공동등재 추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협력의 제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과 함께 국가별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 현재 남한은 세계유산 15건, 무형문화유산 21건, 기록유산 16건 등 총 52건의 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북한은 세계유산 2건, 무형문화유산 3건, 기록유산 1건 등 총 6건의 유네스코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한 합쳐 총 58건의 유네스코 등재유산 중 남북한이 유네스코 등재 과정 속에 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북한이 단독등재한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 사례와 남북한이 공동등재한 ‘씨름’ 등 총 3건이 있다.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에서의 남북 협력 사업은 북한에 위치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발굴과 보존에 있어 남북한 문화재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성과를 이루어낸 사례이고, 씨름의 경우는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

와는 달리 남북한이 단독등재 신청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과 유네스코의 협력을 통해 공동등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례는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문화를 통한 통일의식 제고, 이질성 극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의 하나”이자 긴장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문화유산을 통한 남북 간 교류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문화유산 교류가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³⁷²⁾ 다만 과거 사례들은 전문가의 제한적 참여, 남북 간 정보 교환의 미비,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 미비 등으로 인해 지속성이 부족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넷째, 남북한이 유네스코의 공동등재 제도를 활용하여 문화유산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과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우선 남북 간에는 문화재에 대한 정의와 인식, 문화재 관련 법률에서 문화재 분류, 문화재의 활용 목적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김정은 집권 이후 법률 개정에 의해 남북한 모두 문화유산의 해외교류 활성화 측면에서는 모두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한 문화재 관련 법률을 비교해보면 북한은 국가 통제 성격이 강한 반면, 남한은 최소한의 통제를 법률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남북한 문화재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및 체계성 확보와, 남북한 문화재 지정 체계의 통일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별 추진 방안으로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금강산 역사유적지구’를 한반도 월경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방안과 남북한이 공유하는 DMZ를

372)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p. 81.

월경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DMZ의 경우 해당 유산을 바라보는 남북한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의 ‘백제역사유적지구’, ‘경주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과 북한의 ‘고구려역사유적지구’, ‘개성역사유적지구’를 하나로 묶어 ‘(가칭)한반도 역사지구’를 유네스코 ‘연속유산’으로 남북한이 공동등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에서 만들어져 남한으로 전승된 무형문화유산을 ‘한반도 전승유산’이라는 의미로 남북한이 함께 공동등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남북한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협력 체계, 남북한 협력 체계, 국제 체계로 세분화하여 대내외 추진 체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남북한 협력 사업을 초기, 중기, 장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향후 남북한이 공유하는 문화유산에 대해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남북 간 시각의 차이, 해당 유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등에 대한 조정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는 분단 이후 문화유산에 접근하는 시각이 양측의 정치 체제와 연계되어 차이가 존재하지만, 남북한은 민족적 문화와 역사적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고 양측 모두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가지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유산을 둘러싸고 독점이나 배타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공동등재 과정을 누가 주도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남북한은 여전히 정치·군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놓여 있으며, 오랜 경쟁의 역사를 감안하면 한 측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남한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바,³⁷³⁾ 공동등재 과정이 남한이 주도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공동등재 과정에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남한의 역할에 편승한다거나 남한의 리더십을 수용한다는 인식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남북한이 특정 유산에 대한 공동등재를 신청할 경우 원활한 협력과 등재 성공을 위해서는 두 국가 사이의 역할분담과 분담 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한과 북한은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경쟁자보다는 협력자로서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과거 두 국가는 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2000년대 남한이 18개 종목의 문화유산을 대표목록에 올리자 이를 의식한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부분에 있어 남한에 대한 경쟁을 시작했고, 남한이 이미 등재한 아리랑, 김치를 북한의 대표목록으로 신청하기도 했다.³⁷⁴⁾

남한과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체제경쟁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은 결국 소모적인 경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여러 문화 자원들이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임과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묶어주는 가치 있는 자산이므로 남한과 북한 모두 한민족의 유산을 경쟁의 수단이 아닌, 협력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문화유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측 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매사냥

373) 함한희, “아리랑, 김치 그리고 국가주의,” 『비교민속학』, 제59호 (2016), p. 432.

374) 위의 글.

공동등재 성공 사례 및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실패 사례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당사국 간의 협력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유된 문화유산이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마다 전승 방법이나 현황, 관리제도, 규정 및 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동등재 신청 시 참여 국가들 간의 협력 및 공조는 필수적이다.

특히 지속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해 참여 국가들과 관련 부서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가들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다른 규정 등에 대해 이해하며, 공동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도 공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에 대한 중요성은 남북 간의 공동등재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던져준다. 특히 남북한의 경우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군, 개성역사문화지구, 씨름 등 여러 문화유산 관련 협력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일부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상황과 안보 환경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협력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유산의 공동등재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양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동등재 추진 노력도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남북한이 중요한 민족문화를 공동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문화유산과 관련한 협력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 간의 협력을 제도화시키고, 외부 요인에 대한 민감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 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 서울: 한울, 2006.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민족공동 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 방안』. 서울: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3.
- 국가정보원. 『北漢法令集』 下. 서울: 국가정보원, 2020.
-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대전: 예송미디어, 2018.
- _____.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5(1949.1-1950.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학웅. 『김학웅의 씨름 이야기』. 서울: 민속원, 2009.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5 남북공동학술회의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 9년의 성과와 전망』. 서울: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5.
- 대통령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상).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20.
- 대한씨름협회. 『씨름교본』. 서울: 대한씨름협회, 2018.
- 문화재청.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대전: 문화재청, 2018.
- _____.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20』. 대전: 문화재청, 2021.
-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문헌자료편)』. 서울: 문화체육부, 1995.
- 박대남. 『북한의 문화재 실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 박상철·김창규.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5.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 안병우. 『내일을 여는 역사』 54권.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 세계유산을 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해녀문화를 중심으로』.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8.
- 전영선. 『북한 민족문화정책의 이론과 현장』. 서울: 역락, 2005.
-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 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 서울: 통일부, 2020.

ICOMOS International Secretariat. *2013 Evaluations of Nominations of Cultural and Mixed Properties to the World Heritage List*. Paris: UNESCO, 2013.

Nye,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2004.

_____. *The Future of Power*. New York: PublicAffairs, 2011.

2. 논문

고태우. “북한의 불교문화재 현상과 관리 정책.” 『북한학보』. 제13호, 1989.

김덕순.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 사례.” 『문화재』. 제52권 3호, 2019.

- 김동현.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와 다국적유산의 과제.” 『무형유산』. 제3호, 2017.
- 김응환·전영선.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연구.” 『민족학연구』. 제2집, 1997.
- 김창경. “중국 무형문화유산과 국가적 정체성 고찰 - 소수민족 무형문화유산 등재 문제점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1권 42호, 2015.
- 김현우·이선복.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 지방의 유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재』. 제52권 4호, 2019.
- 나현성. “한국 각저고 韓國角觝放.” 『경희사학』. 제3집, 1972.
- 남궁승태. “북한 문화유물보호법에 관한 고찰.” 『大佛大學校大學院研究論文集』. 2권 1호, 2004.
- 남보라. “북한 문화재 보호 정책의 변화와 최신 동향.” 『2020년 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2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2020.
- 남보라·서순복.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법학논총』. 제21권 3호, 2014.
- 노선영·최은봉. “인권 정치와 기록레짐화: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세계 기록유산.” 『문화와 정치』. 제7권 2호, 2020.
- 동범준. “남·북한 문화재 법·제도 비교 분석 및 통일한국 시대에서의 문화콘텐츠 활용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문화콘텐츠연구』. 제11호, 2017.
- 리원희. “5세기초이전 고구려-신라관계에 대하여.” 『역사과학』. 3호, 2004.
- 박대남. “북한의 세계문화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 『월간 북한』. 5월호 통권 533호, 2016.
- 박선희. “문화다양성의 역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국가주의.” 『문화와 정치』. 제6권 4호, 2019.

- 박성진.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 『환경논총』. 제54권, 2014.
- 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 『무형유산』. 제7호, 2019.
- 박정수. “중화(中華) 민족주의와 동아시아 문화갈등: 역사와 문화의 경계 짓기.” 『국제정치논총』 제52권 2호, 2012.
- 서 권. “세계문화유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및 개선 방안 연구: 경주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손신욱·박상훈·이나현.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경영연구』. 제22권 4호, 2018.
-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문화재』. 제50권 2호, 2017.
- 신 진.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한류의 확산의 영향력과 공공외교.” 『대한정치학회보』. 제21권 1호, 2013.
- 신현욱·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국민속학』. 제41호, 2014.
- 심승구. “씨름의 정체성과 유산 가치.” 『비교민속학』. 제67권, 2018.
- _____. “인류무형유산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의미와 과제.” 『비교민속학』. 제69권, 2019.
- _____. “DMZ 세계유산 등재 논의 성과와 과제: 남북 문화유산 정책 포럼을 중심으로.” 『국제문화예술』. 제1권 1호, 2020.
- 안미정. “문화의 세계화와 민족주의 담론: 제주해녀(잡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제117호, 2020.
- 윤혜진.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과 정책 대응방안 연구: 북촌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32권 5호, 2020.
- 이규창. “북한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0 남북법제연구보고서』 (I). 서울: 법제처, 2010.

- 장상렬. “평양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역사의 도시.” 『천리마』. 11호, 1989.
-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의미.” 『한국문화연구』. 34권, 2018.
- _____. “북한 소재 고구려 벽화고분의 보존과 관리-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5권, 2002.
-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77호, 2019.
- _____.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통일인문학』. 53권, 2012.
- 조우찬. “북한 김정은 시대 문화재정책의 특징: 무형문화유산의 부각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2019 통일부 신진연구자논문집』. 통일부, 2019.
- 조은경. “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교류협력 사업 체계.” 『2020년 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2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2020.
- 최은봉·이민주. “동아시아 기억의 정치와 탈냉전기 기억의 민주화: 제주, 오키나와, 난징의 기억은 경합하는가?” 『담론201』. 제20권 3호, 2017.
- 최은석.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한국공법학회』. 제39권 4호, 2011.
- 하문식.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 『정신문화연구』, 제30권 1호, 2007.
- 함한희. “아리랑, 김치 그리고 국가주의.” 『비교민속학』. 제59호, 2016.
- 황경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매사냥’ 공동등재의 특성과 의의.” 『문화재』. 제51권 4호, 2018.
- Perrin, Ariane. “북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지명 과정.” 『고구려 발해연구』. 16권, 2003.

- Bertacchini, Enrico, Claudia Liuzza, and Lynn Meskell. "Shifting the Balance of Power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An Empirical Assess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23, no. 3, 2017.
- Caust, Josephine and Marilena Vecco. "Is UNESCO World Heritage Recognition a Blessing or Burden? Evidence from Developing Asian Countries."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vol. 27, 2017.
- Frey, Bruno S. and Lasse Steiner. "World Heritage List: Does It Make Sens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17, no. 5, 2011.
- Hall, C. Michael and Rachel Piggin. "Tourism and World Heritage in OECD Countr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vol. 26, no. 1, 2001.
- Meskell, Lynn, Caludia Liuzza, Enrico Bertacchini, and Donatella Saccone. "Multilateralism and UNESCO World Heritage: Decision-making, States Parties and Political Process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21, no. 5, 2015.
- Nye, Joseph S.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6, no. 1, 2008.
- Shin, Heisoo. "Voices of the 'Comfort Women: The Power Politics Surrounding the UNESCO Documentary Heritage'." *The Asia-Pacific Journal*. vol. 19, no. 5, 2021.
- Thorsell, Jim and Todd Sigaty. "Human Use in World Heritage Natural Sites: A Global Inventory." *Tourism Recreation Research*. vol. 26, no. 1, 2001.

- VanBlarcom, Brian Logan and Cevat Kayahan.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 of a UNESCO World Heritage Designation," *Journal of Heritage Tourism*, vol. 6, no. 2, 2011.
- Yang, Chih-Hai, Hui-Lin Lin, and Chia-Chun Ha. "Analysis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in China: The Role of World Heritage Sites," *Tourism Management*, vol. 31, no. 6, 2010.

3. 기타 자료

〈언론·인터넷〉

- 『경향신문』.
- 『기호일보』.
- 『뉴시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동아일보』.
- 『로동신문』.
- 『매일경제』.
- 『민족 21』.
- 『민주조선』.
- 『세계일보』.
- 『아시아경제』.
- 『연합뉴스』.
- 『월간조선』.
- 『유네스코뉴스』.
- 『이데일리』.
- 『인천일보』.
- 『중앙일보』.
- 『한국경제』.

『한국일보』.

『News Wire』.

France24.

Global Times.

The Nation Thailand.

The Strait Times.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기록관 <<https://manwoldae.org>>.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www.sillok.history.go.kr>>.

나무위키 <<https://namu.wiki>>.

네이버 국어사전 <<https://www.ko.dict.naver.com>>.

대한씨름협회 <<http://ssireum.sports.or.kr>>.

문화재청 <<https://www.cha.go.kr>>.

문화재청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https://kcrc.or.kr>>.

여주시 <<https://yeosu.go.kr>>.

외교부 <<https://www.mofa.go.kr>>.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heritage.unesco.or.kr>>.

ICOMOS Korea <<https://www.icomos-korea.or.kr>>.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https://www.voicecw.org>>.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uniedu>>.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Pixabay <<https://pixabay.com>>.
RICS isurv <<https://www.isurv.com>>.
UNESCO ICH <<https://ich.unesco.org>>.
UNESCO WHC <<https://whc.unesco.org>>.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

〈법령·법규〉

남한 법령·법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씨름 진흥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북한 법령·법규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 법·협약

-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법」.

〈보고서·자료집〉

- 강원연구원. “금강산·설악산의 세계복합유산화와 남북 강원도, 제711호.”
남북 교류협력 시리즈 X. 2018.9.28.
- 권재범.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의의와 성패요인에 대한 연구.”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문화교류의 역할 공동학술회의』. 학술회의
자료집. 2021.9.10.
- 김현우. “북한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 『북한 민족유산의 현황과 보호
관리체계 이해』. 2020년 제2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자료집.
2020.6.24.
- 김혜정. “북한 민족유산 정책 변화와 물질유산(역사유적) 연구 현황.”
『북한 정책변화에 따른 민족유산의 현황과 이해』. 2020년 제1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자료집. 2020.5.14.
- 로돌포 루잔 런스포드. “북한 수산리 고분벽화 보존지원과 성과.”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의 소중한 세계문화유산』. 2018년 북한미술 국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8.7.6.

- 박영정.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와 협력.” 2020년 제1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자료집. 2020.5.14.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북한 「민족유산보호법」의 특징-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월호, 2021.
- 심광주. “개성공단 건설부지 내 문화유산 공동조사의 성과와 과제.” 『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 2018년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특별위원회 학술회의. 2018.
- 심승구. “인류무형문화유산 씨름의 남북한 등재 검토와 전망.” 2018 무형유산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5.12.
- 이 선. “북한 자연유산의 현황과 과제.” 『북한 민족유산의 현황과 보호관리체계 이해』. 2020년 제1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자료집. 2020.7.23.
- 이혜은. “개성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과정.” 2013 제주 세계유산포럼 자료집. 2013.7.2.
- _____. “북한의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과정과 현황.” 고구려발해학회 발표. 2008.9.11.
- 전호태. “세계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의 가치와 의미.”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의 소중한 세계문화유산』. 2018 북한미술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 2018.7.6.
- 조민재. “현대 한국 문화유산 관리: 국보에서 유네스코까지.” 제4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19.
- 조현성·이성우·성문정·전영선.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2020.
- 최오주.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비교.”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
- 통일교육원.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지.” 2021년 제7기 사이버 통일교육 공공과정 교육자료. 2021.8.3.

Portland. “The Soft Power 30: A Global Ranking of Soft Power 2019” 2019.

UN.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2021.” 2021.

〈자문회의〉

김명신. “왜 유네스코(UNESCO)인가?”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결과. 2021.9.9.

심승구.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검토.”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결과. 2021.09.10.

이점호.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검토.” 통일연구원 최종보고회 토론자료. 2021.10.14.

전영선. “북한의 문화재 정책 특징.”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결과, 2021.6.16.

_____. “북한의 문화재 정책의 시대별 특징 비교.”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결과. 2021.6.15.

전진성.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검토.”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결과. 2021.09.17.

조은경. “북한의 문화재 관리기구.”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결과. 2021.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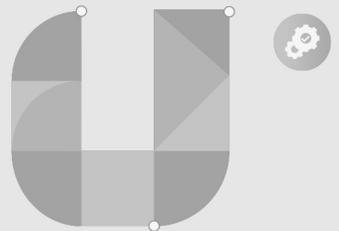
한승대. “북한의 문화유산(민족유산) 현황.” 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결과. 2021.4.19.

〈기타〉

문화재청. “2015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2015.1.

_____. “2021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2021.8.

부록



북한의 민족유산 목록

1. 역사유적: 국보유적

번호	유적명	소재지	번호	유적명	소재지	번호	유적명	소재지
1호	평양성	평양특별시	66호	강계 아사	자강도 강계시	131호	첨성대	개성직할시
2호	안학궁터	평양특별시	67호	안악제3호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132호	흥국사탑	개성직할시
3호	보통문	평양특별시	68호	부용당	황해남도 해주시	133호	령통사 5층석탑	개성직할시
4호	대동문	평양특별시	69호	해주 석빙고	황해남도 해주시	134호	화장사 부도	개성직할시
5호	송인전	평양특별시	70호	해주 9층석탑	황해남도 해주시	135호	불일사 5층석탑	개성직할시
6호	승령전	평양특별시	71호	해주 5층석탑	황해남도 해주시	136호	연복사종	개성직할시
7호	보현사9층석탑	평안북도 향산군	72호	순명문터	황해남도 해주시	137호	적조사 쇠부처	개성직할시
8호	대성산성	평양특별시	73호	안악제1호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138호	표총비	개성직할시
9호	청암리산성	평양특별시	74호	안악제2호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139호	현화사 7층석탑	개성직할시
10호	대성산성 남문	평양특별시	75호	안악 월정사	황해남도 안악군	140호	평양성 글자세간성돌	평양특별시
11호	대성산 련못떼	평양특별시	76호	로암리 고인돌	황해남도 안악군	141호	령산전	평안북도 향산군
12호	대성산 고구려무덤떼	평양특별시	77호	강서사	황해남도 배천군	142호	김응서집	남포직할시
13호	법운암	평양특별시	78호	룡동리 고인돌	황해남도 배천군	143호	수충사	평안북도 향산군

번호	유적명	소재지	번호	유적명	소재지	번호	유적명	소재지
14호	룡곡서원	평양특별시	79호	소현서원	황해남도 벽성군	144호	보현사 8각13층석탑	평안북도 향산군
15호	룡산리 고구려무덤떼	평양특별시	80호	자혜사	황해남도 신천군	145호	경암루	황해북도 사리원시
16호	련광정	평양특별시	81호	묘음사 현암	황해남도 재령군	146호	칠렬사터	평안남도 안주시
17호	부벽루	평양특별시	82호	(해주)다라니석당	황해남도 해주시	147호	종흥사 당간지주	평양특별시
18호	철성문	평양특별시	83호	학림사 5층석탑	황해남도 장연군	148호	영명사 8각석불감	평양특별시
19호	을밀대	평양특별시	84호	관산리 고인돌	황해남도 은률군	149호	묘향산 보현사비	평안북도 향산군
20호	청류정	평양특별시	85호	광조사 진철대사탑비	황해남도 해주시	150호	광제사 대웅전	함경남도 북청군
21호	최승대	평양특별시	86호	연안읍성	황해남도 연안군	151호	현화사비	개성직할시
22호	전금문	평양특별시	87호	성불사	황해북도 사리원시	152호	광통보제선사비	개성직할시
23호	평양중	평양특별시	88호	정방루	황해북도 사리원시	153호	오룡사 법경대사비	개성직할시
24호	홍복사6각7층석탑	평양특별시	89호	정방산성	황해북도 사리원시	154호	관음사 대리석관음상	개성직할시
25호	금강사터	평양특별시	90호	성장 김성업비	황해북도 사리원시	155호	령통사 대각국사비	개성직할시
26호	호남리사신무덤	평양특별시	91호	연탄 심원사	황해북도 연탄군	156호	덕흥리벽화무덤	남포직할시
27호	상원검은모루유적	평양특별시	92호	귀진사	황해북도 서흥군	157호	진복루	양강도 갑산군
28호	강서세무덤	남포특급시	93호	태백산성	황해북도 평산군	158호	안주성	평안남도 안주시
29호	약수리벽화무덤	남포특급시	94호	석왕사	강원도 고산군	159호	선죽교	개성직할시
30호	수산리벽화무덤	남포특급시	95호	신계사터	강원도 고산군	160호	고구려나무다리터	평양특별시
31호	백상루	평안남도 안주시	96호	장안사터	강원도 금강군	161호	덕화리무덤	평안남도 대동군

번호	유적명	소재지	번호	유적명	소재지	번호	유적명	소재지
32호	강선루터	평안남도 성천군	97호	표훈사	강원도 금강군	162호	유점시종	평안북도 향산군
33호	훈련정	평안남도 평원군	98호	표훈사 보덕암	강원도 금강군	163호	룡화사	평양특별시
34호	안국사	평안남도 평성시	99호	정양사	강원도 금강군	164호	광법사	평양특별시
35호	방선문	평안남도 성천군	100호	금강암 사자석탑	강원도 금강군	165호	원산리청자가마터1호	황해남도 배천군
36호	동명왕릉	평양특별시	101호	금강산 장연사3층석탑	강원도 금강군	166호	원산리청자가마터2호	황해남도 배천군
37호	황룡산성	남포직할시	102호	묘길상	강원도 금강군	167호	원산리청자가마터3호	황해남도 배천군
38호	자모산성	평안남도 평성시	103호	가학루	강원도 인변군	168호	원산리청자가마터4호	황해남도 배천군
39호	쌍기둥무덤	남포직할시	104호	인변 보현사	강원도 인변군	169호	자혜사 5층석탑	황해남도 신천군
40호	묘향산 보현사	평안북도 향산군	105호	명적사	강원도 원산시	170호	자혜사 석등	황해남도 신천군
41호	보현사 상원암	평안북도 향산군	106호	주둔리 무지개다리	강원도 고성군	171호	패엽사터	황해남도 안악군
42호	보현사 축성전	평안북도 향산군	107호	함흥 본궁	함경남도 함흥시	172호	고산동우물	평양특별시
43호	보현사 불영대	평안북도 향산군	108호	구천각	함경남도 함흥시	173호	정릉사	평양특별시
44호	구성읍성 남문	평안북도 구성시	109호	선화당	함경남도 함흥시	174호	단군릉	평양특별시
45호	창성향교	평안북도 창성군	110호	황초령진흥왕순수비	함경남도 함흥시	175호	룡산리 순장무덤	평안남도 성천군
46호	천주사	평안북도 녕변군	111호	마운령진흥왕순수비	함경남도 함흥시	176호	석왕사 호지문	강원도 고산군
47호	륙승정	평안북도 녕변군	112호	정광사	함경남도 리원군	177호	인양암 마애삼존불상	강원도 고성군
48호	고려장성	평안북도 창성군	113호	량천사	함경남도 고원군	178호	고성온정리 마애불입상	강원도 고성군
49호	철웅성 남문	평안북도 녕변군	114호	군자루	함경남도 금야군	179호	왕건왕릉	개성직할시

번호	유적명	소재지	번호	유적명	소재지	번호	유적명	소재지
50호	서운사	평안북도 녕변군	115호	룡흥사	함경남도 영광군	180호	진파리제4호무덤	평양특별시
51호	통군정	평안북도 의주군	116호	동덕사	함경남도 단천시	181호	진파리제1호무덤	평양특별시
52호	의주남문	평안북도 의주군	117호	공민루	함경남도 단천시	182호	향단리 돌관무덤	평양특별시
53호	금광사	평안북도 의주군	118호	경성읍성	함경남도 경성군	183호	황대성과 고인돌	평양특별시
54호	박천 심원사	평안북도 박천군	119호	경성읍성 남문	함경남도 경성군	184호	정릉사 8각7층석탑	평양특별시
55호	양화사	평안북도 태천군	120호	개심사	함경북도 명천군	185호	광법사 8각5층석탑	평양특별시
56호	룡오리산성	평안북도 태천군	121호	쌍계사	함경북도 화성군	186호	정양사 3층석탑	강원도 금강군
57호	보현사 관음전	평안북도 향산군	122호	만월대	개성직할시	187호	청해토성	함경남도 북청군
58호	백마산성	평안북도 피현군	123호	공민왕릉	개성직할시	188호	화성 동제단	평양특별시
59호	(성동리)다라니석당	평안북도 향산군	124호	개성남문	개성직할시	189호	삼성사	황해남도 안악군
60호	구주성	평안북도 구성시	125호	관음사	개성직할시	190호	룡강 큰무덤	남포직할시
61호	룡한산성	평안북도 곡산군	126호	대흥산성	개성직할시	191호	신계사	강원도 고산군
62호	룡골산성	평안북도 염주군	127호	개성 성군관	개성직할시	192호	령통사	개성직할시
63호	녕변 철옹성	평안북도 녕변군	128호	송양서원	개성직할시	193호	북관대침비	함경북도 김책시
64호	인풍루	자강도 강계시	129호	발아참성	개성직할시			
65호	강계 망미정	자강도 강계시	130호	개성옛성	개성직할시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 pp. 254~337을 참고해 저자 정리

2. 역사유물: 국보유물

가학루, 감신총, 강서대묘, 강서사, 강서소묘, 개성 남대문, 개심사 범종, 검은모루 동굴, 경성남문, 수강루, 고성 온정리 마애불입상, 공민왕릉, 관산리고인돌, 관음사 대리석 관음보살좌상, 광동보제선사비, 광법사 오층석탑, 광법사, 광조사 진철대사탑비, 금강산 표현사, 금광사, 금동 구층탑, 금동 오층탑, 금동관음보살상, 금동구층탑,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아미타삼존불상, 금동아미타여래좌상, 금동오층탑, 금동지장보살상, 금동지장보살좌상, 금동투조신장상, 금강암사지탑, 금강암지 사사자석탑, 금제관음보살좌상, 금제미륵보살좌상, 대동문, 대안리 제1호 벽화고분, 동명왕릉, 묘길상 마애불좌상, 묘길상, 묘길상석등, 박천심원사, 백동향로, 보통문, 보현사 구층석탑, 보현사 사적비, 보현사 팔각십삼층탑, 보현사, 불일사 오층석탑, 삼성사의 삼성전, 삼존불좌상, 석왕사, 선죽교, 성동리 다라니석당, 성불사, 성불사5층탑, 성총, 수렵총, 신계사 삼층석탑, 신계사 청동은입사향완, 신계사, 쌍영총, 아미타여래도아미타여래도(후불탱화), 안악제1호고분, 안악제2호고분, 안악제3호고분, 안양암 마애삼존불상, 약수리벽화고분, 연복사 범종, 연탄심원사, 연화총, 영명사 팔각석불감, 영산선, 영통사 대각국사비, 영통사 서삼층탑, 영통사 오층석탑, 오룡사 법경대사비, 요동성총, 용강대총, 용화사, 원오리사지출토 소조보살상, 유점사 범종, 자혜사 석등, 자혜사 오층석탑, 자혜사, 장연사 삼층석탑, 적조사 철불좌상, 접제비, 정릉사 8각7층석탑, 정릉사, 정양사, 정양상 삼층석탑, 중흥사 당간지주, 진파리 고구려고분, 진흥왕순수비, 천왕지신총, 청동금고, 태성리 제1호고분, 태성리 제2호고분, 평양 범종, 학립사5층탑, 학립사지 오층석탑, 해주 5층석탑, 해주 9층석탑, 해주 다라니석당, 현화사 사적비, 현화사 칠층석탑, 현화사비, 화장사 지공선사 부도, 흥국사 석탑, 흥복하지 육각칠층석탑

출처: 한승호, “북한의 문화유산(민족유산) 현황,”(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4.19).

3. 역사유물: 준국보유물

관산리고인돌, 관음사, 구엽사, 길주향교, 보현사9층탑, 복흥사7층탑, 삼불암, 서산대사비, 선화당, 소현서원, 승인전, 신광사5층탑, 신광사무자비, 안국사, 여진문자비, 연복사종, 영명사 영변남문, 영통사당간지주, 영통사대각국사비, 영통사동3층탑, 오순정, 용천구읍리석수, 용천다라니석당, 용천서문박석당, 월정사, 의주남문, 자복사5층탑, 자혜사5층탑, 자혜사석등, 장경사5층석탑, 장안사터, 정복사, 정양사석등, 중흥사, 중흥사당간지주, 천주사, 첩운사, 칠성문, 탑동3층탑, 통군정, 팔각석불감, 패궁정, 평양종, 함흥본궁, 함흥향교, 해주9층탑, 해주석빙고, 현화사당간지주, 흥복사 6각7층탑, 화장사사리탑, 회령향교, 흥국사석등, 흥국사탑 등

출처: 한승호, “북한의 문화유산(민족유산) 현황.”(통일연구원 서면자문회의 자료, 2021.4.19.).

4. 비물질유산

가야금산조, 강령탈춤, 거문고산조, 농악, 농요, 돈돌라리, 용강기나리, 배뱅이굿, 법고춤, 봉산탈춤, 북청사자탈놀이, 사승무, 서도소리, 줄타기, 칼춤, 통소정악, 판소리, 팔목춤, 해금산조, 각자쟁이, 기와쟁이, 낫쇠쟁이, 누비쟁이, 단청쟁이, 대나무쟁이, 나전칠기, 망건쟁이, 명주까지, 목조각쟁이, 바느질쟁이, 배첩쟁이, 사기쟁이, 소반쟁이, 염색쟁이, 옥쟁이, 옹기쟁이, 인두화쟁이, 자수쟁이, 작은목쟁이, 전통신발, 전통악기쟁이, 철쟁이, 초물쟁이, 큰목쟁이, 평양냉면, 함흥냉면, 향토술, 활쟁이

출처: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민족공동 문화유산 교류협력 추진 방안』(서울: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3), p. 115.

5.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평양시	중구역 화석림, 만경대 백양나무, 무진리 소나무 무리, 능라도 수양버들, 옥류 능수버들, 대성산 두충나무, 대성산 수삼나무, 대성산 향오동나무, 대성산 목란, 문수봉 이깔나무, 고려산 평탄면
남포시	강선 포플러나무, 대안 회화나무, 수산리 약밤나무, 우산장 느티나무, 용강 느티나무
개성시	송악산 크낙새, 개성 백송, 개성 학, 개성 산당화, 개성 모과나무, 삼거리 느티나무, 개풍 은행나무, 만월대 느티나무, 장풍 느티나무, 개성 회화나무, 판문 탕자나무, 성균관 은행나무, 개성 자목련, 성균관 느티나무, 판문 흰두루미 살이터, 박연폭포
평안남도	평안남도 너화, 환송리 청서, 자모산 동물보호구, 맹산 맞추 흑송림, 용강 떡갈나무, 함종 약밤나무, 승백루 갈새, 금성리 검은황새, 북창 느삼나무 군락, 숙천 주염나무, 안국사 은행나무, 율화 소나무, 자산 은행나무, 평원훈련전 은행나무, 은정 배나무, 용포리 가는잎소나무림, 대흥 수달, 따오기, 덕도 바다새 번식지, 용운리 백로왜가리 번식지, 용원 동굴, 월포리 하성단구
평안북도	선천 남도 바다새보호구, 철산 책도 바다새보호구, 동림 들메나무, 삭섬 검은낮저어새, 요하리 나도박달, 묘향산 청조, 상원암 은행나무, 보산 배나무, 향산 비술나무, 묘향산 산뽕나무, 학당 옷나무 무리, 묘향산 소나무, 정주 은행나무, 좌리 전나무, 장송소나무 바람막이숲, 철산 조갯살이터, 비단섬 코끼리바위, 막대바위, 동림폭포, 거북바위, 상초동굴, 백령대굴, 삭주폭포, 용연폭포, 천주석, 천산폭포, 철산군의 검은죽합과 녹조개의 서식지
자강도	창덕리 나도박달, 전천 전나무, 오가산 식물보호구, 향토 비술나무, 시중 긴방울 가문비나무 무리, 오가산 신갈나무, 오가산 피나무, 오가산 주목, 전천 돌부채 군락, 강계 은행나무, 용대 만지송, 성하 왕짚깡나무, 성간 포플러나무, 가산령 잣나무, 오가산 쉼터 피나무, 오수덕 잣나무림, 용림 큰곰, 노랑 홍모시범나비, 오가산 원앙새 살이터, 홍주 닭, 외갈봉 조선범, 용수폭포, 성하 김입사행(굽은강)
황해남도	황해남도 학, 황해남도 황새, 방현리 백로, 장산곶 식물보호구, 강호 염주나무, 배천 은행나무, 해주 낙우송, 신원 은행나무, 해주 벽오동나무, 송화삼광향나무, 은울 황목련, 평천 느티나무, 신원 쌍둥이느티나무, 연안 은행나무, 안악 느티나무, 석담 느티나무, 웅진 쪽가래나무, 웅진 이팝나무, 과일군 은행나무, 웅진 참김, 해주 설송, 강호 능소화, 장연 조선소, 배천 재두루미 살이터, 사현리 왜가리 번식지, 강령 흰두루미 살이터, 흥현리 백로 살이터, 몽금포 코끼리바위, 장수산 열두굽이, 몽금포 사구, 오차바위

황해북도	답동산 식물보호구, 평산 엄나무, 황주 연꽃, 삼전 향나무, 평산 대추나무, 답동산 가침박달나무, 신계 황목련 무리, 입문 소나무, 서흥 가래나무, 봉진 느티나무, 동산리 소나무, 신계 은행나무, 구락리 자라살이더, 구락리 어름치 췌리 알쓸이더, 남강 쌍절벽, 달해산성 절벽
강원도	삼방 왕제비꽃, 석현 엄나무, 통천 알섬 바다새보호구, 금강산 금강국수나무, 금강산 금강초롱, 문수리 소나무, 원산 구상나무, 성북느티나무, 원산 칠엽나무, 금수리 소나무, 금강 전나무, 안변 느티나무, 이천 영웅은행나무, 원산 튜립프나무, 가재울 은행나무, 두문동 은행나무, 위남리 소나무, 원산금술, 건자리소나무, 판교 전나무, 대도 백로 왜가리 번식지, 명사십리, 시중호, 국도, 총석정, 금란굴, 천선대, 삼일포, 상팔담, 삼선암, 조양포, 비봉포, 십이포, 귀면암, 구룡폭포, 해금상 솔섬, 해금강문, 명경대, 삼방협곡
함경남도	함흥 분공반송, 조상 사과나무, 곡구리 백리향군락, 이원 팽나무, 두연못 연꽃, 단천 만지송, 용전 사과나무, 동흥산 은행나무, 함흥 반송, 흥남 팽나무, 호남 향나무, 속후 희화나무, 신흥 엄나무, 정평 박태기잎나무, 호남 향나무, 속후 희화나무, 신흥 엄나무, 사철오리, 속사리 강명태 알쓸이더, 장진 정강어 알쓸이더, 서목리 왜가리 번식지, 천불산 사향노루, 단천 산양, 백악폭포, 광포, 흥원솔섬, 청도 해식들, 운포동굴, 이원구석, 이원 학사대
함경북도	운만대 신의대 군락, 양정리 제3기 동물화석층, 개심사 약밤나무, 함진리 제3기 동물화석층, 동관리 흥적기 동물 화석층, 나진 산벚나무, 웅기군 알섬 바다새보호구, 왕재산 참나무, 명천 곱향나무 무리, 함진소나무, 학동 소나무, 우암 산벚나무 무리, 관모봉 큰곰, 우암 물개, 신양 수달, 해칠보 무지개바위, 해칠보 솔섬, 금강봉과 금강굴, 무계호, 장연호, 천상수 아흔이흙굴이, 금강산 자연공원, 명천군 북조개, 금강산 온천
량강도	보천보 검은돈, 풍산개, 차일봉 복수백산식물보호구, 백두산 식물보호구, 백암리 부채붓꽃 군락, 후창 조릿대 군락, 후창 느티나무, 갑산 비술나무, 연지봉 소나무, 북포태산 장군풀, 백임 좁쌀담초군락, 남포 태산 장군풀, 이명수 패양버들, 누른 돈, 백암 우는토끼, 삼지연 메달, 연지 노랑나비, 신무성 세가닥 딱따구리, 합수 노룡롱 살이더, 남사 사루기 알쓸이더, 누령이, 삼지연 사슴, 연암산 분화구, 이명수 폭포, 삼지연, 백두산 천지, 간장늪

기타	<p>산벚나무와 전나무, 장자산 잣나무, 모란봉 전나무와 잣나무, 금강초롱, 대성산 미선나무, 금강 국수나무, 왕대항, 염주나무, 3·1밤나무, 회화나무, 황목련, 백목련, 들메나무, 칠엽수, 백합나무, 큰 부채붓꽃, 돌부채, 오가산 원시림, 웅진 참김, 내금강 전나무림, 화성 전나무림, 광명 소나무림, 오수덕 잣나무림, 낙우삼, 웅진 왕삼나무, 시중 긴방울가문비림, 신계항 목련군락, 삭주 황목련 군락, 백두산 조선범, 백두산 들쭉, 임명벌 황새, 묘향산의 청조, 정장어 산란지, 남생이, 세포 조선소, 장연 조선소, 신파닭, 향교골규화목, 강령골뱅이화석, 용궁리 공룡 발자국 화석, 배천온천, 웅진온천, 식덕수, 묘향산 자연공원, 칠보산 자연공원</p>
----	--

출처: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민족공동 문화유산 교류협력 추진 방안』 (서울: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3), pp. 115~117

6. 자연유산: 명승지

<p>모란봉, 약산동대, 묘향산, 동룡굴, 백령대굴, 구월산, 장수산, 석담구곡, 몽금포, 박연폭포, 삼방협, 금강산, 총석정, 시중호, 칠보산, 주을온천,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대성산, 용악산, 정방산, 백운산, 관모봉, 오가산, 부전고원, 동흥산, 약산동대, 경암산, 수양산, 자남산, 송악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속리산, 가야산, 한나산, 송도원, 명사십리, 마전, 속후, 청단, 기암, 학사대, 와우도, 몽금포, 구미포, 보통강, 석담구곡, 능라도, 수풍호, 연풍호, 서흥호, 건룡저수지, 태성호, 백령대굴, 용문대굴, 성류굴, 금강굴, 금녕굴, 백두산혁명사적지, 만경대혁명사적지</p>

출처: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민족공동 문화유산 교류협력 추진 방안』 (서울: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3), p. 115.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중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변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 · 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 · Park, Juhwa

2020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혜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변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변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합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옥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창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Study Series〉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8,000원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9,000원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9,000원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9,500원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11,000원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10,000원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14,500원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11,500원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윤 10,500원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10,500원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10,500원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18,000원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10,000원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9,500원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2,500원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16,000원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16,500원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9,500원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13,500원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11,000원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11,000원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500원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13,000원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11,000원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19,000원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3,000원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 정착	장철운 외 14,000원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16,500원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12,000원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12,000원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10,000원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1,500원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14,000원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14,000원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	--------------------------------	-------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KINU Insight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北성공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21,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27,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10,000원

기타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디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현·옹혜민 엮음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값 11,000원
93340



9 791165 890551
ISBN 979-11-6589-055-1